

2019

정책연구 2019-17

만경강유역 공동발전을 위한 연계협력 전략 기본구상

연구진 임승현 · 황영모 · 김수용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19-17

만경강유역 공동발전을 위한 연계협력 전략 기본구상



연구진

연구책임	임승현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황영모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수용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자문위원	채병선 • 전북대학교 교수
	장병권 • 호원대학교 교수
	이창현 • 익산시 정책기획단 단장

연구관리 코드 : 19JU04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 차 | Contents

제 1 장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제 2 장 만경강유역 주요현황	9
1. 자연환경	9
2. 사회경제	18
3. 역사·문화·관광	27
제 3 장 만경강 하천환경 및 주민의식조사	43
1. 만경강 하천환경 및 시설	43
2. 만경강유역 주민의식	53
3. 주요 추진사업	64
4. 정책적 시사점	76
제 4 장 연계협력 제도 및 사례분석	81
1. 관련 법제도 분석	81
2. 만경강유역협의회 운영현황	92
3. 지자체간 연계협력 운영사례 분석	95
4. 지자체간 연계협력 해외사례	111
5. 정책적 시사점	115
제 5 장 만경강유역 연계협력 전략구상	119
1. 연계협력 기본방향	119
2. 만경강유역 연계협력 기본구상	125
3. 연계협력 추진조직 구성 및 운영 방향	131
4. 연계협력 선도사업	141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51
1. 주요내용 요약	151
2. 만경강유역 연계협력 기본구상	154
3. 결 론	157

표목차 | Contents

[표 2-1] 만경강유역 행정구역 구성비	18
[표 2-2] 만경강유역 연령별 인구현황(2016년 기준)	19
[표 2-3] 만경강유역 산업별 사업체수 현황	20
[표 2-4] 만경강유역 산업별 종사자수 현황	21
[표 2-5] 만경강유역 지역총생산 및 1인당 GRDP	22
[표 2-6] 만경강유역 재정자립도	23
[표 2-7] 도내 철도 현황	26
[표 2-8] 만경강 유역 근대적 농업용 저수지 현황	36
[표 2-9]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37
[표 2-10] 2019년 시·군 축제 현황	38
[표 2-11] 2017 관광지 현황	39
[표 2-12] 2016 전라북도 관광객 현황	40
[표 3-1] 만경강 하천환경과 시설 조사 대상	44
[표 3-2] 전주천합류부~회포대교 구간 세부조사결과	46
[표 3-3] 회포대교-봉동교구간 세부조사결과	47
[표 3-4] 하천 친수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향	51
[표 3-5] ‘만경강에 대한 생각’ 설문응답 결과	54
[표 3-6] ‘만경강 접촉 방법’ 설문응답 결과	55
[표 3-7] ‘수변활동 빈도’ 설문응답 결과	56
[표 3-8] ‘지역주민생활 관련성’ 설문응답 결과	57
[표 3-9] ‘만경강 유역의 동질감 또는 유대감’ 설문응답 결과	58
[표 3-10] ‘하드웨어 측면 필요 사업’ 설문응답 결과	59
[표 3-11] ‘소프트웨어 측면 필요 사업’ 설문응답 결과	60
[표 3-12] ‘수변 이용 시 불편사항’ 설문응답 결과	61
[표 3-13] ‘사업대상 지역범위’ 설문응답 결과	62

[표 4-1] 현행 지방자치법상 광역행정 관련 협력제도	90
[표 4-2] 법인설립이 필요한 연계협력 제도 비교	91
[표 4-3] 시군별 주요 제안사업	97
[표 4-4] 금강권 관광협의회 2018년 사업추진 성과	101
[표 4-5] 시군별 주요 제안사업	105
[표 4-6] 제2회 만경강포럼 아이디어 제안 목록 27건	108
 [표 5-1] 만경강 유역 연계·협력 추진기구 단계별 구상(안)	138
 [표 6-1] 만경강 친수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향	151
[표 6-2] 만경강 유역 연계·협력 추진기구 단계별 구상(안)	156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2-1] 만경강 수계현황	9
[그림 2-2] 연평균 BOD농도 변화 추세	11
[그림 2-3] 연평균 COD농도 변화 추세	12
[그림 2-4] 연평균 T-N농도 변화 추세	13
[그림 2-5] 연평균 T-P농도 변화 추세	14
[그림 2-6] 만경강유역 수질 측정 지점 현황	15
[그림 2-7] 만경강 수질측정망 및 수질현황 (관개기하천수질등급,BOD)	15
[그림 2-8] 만경강 유역도	18
[그림 2-9] 만경강유역 인구현황	19
[그림 2-10] 만경강유역 산업별 사업체 현황 및 점유율	20
[그림 2-11] 만경강유역 산업별 종사자수 현황 및 점유율	21
[그림 2-12] 만경강유역 연도별 재정자립도	23
[그림 2-13] 만경강유역 도로망 현황	25
[그림 2-14] 철도노선도	26
[그림 2-15] 1872년 전주부도에 나타난 삼례지역모습	28
[그림 2-16] 만경 평야(만해사 전망대)	29
[그림 2-17] 김제 벽골제	29
[그림 2-18] 1872년 익산군 지도	30
[그림 2-19] 익산 대장촌 대장교 개통식	32
[그림 2-20] 대아댐에서 옥수 저수지까지의 인공 도수로	33
[그림 2-21] 대아댐 공사현장	34
[그림 2-22] 대아저수지 댐	34
[그림 2-23] 대간선수로 공사 모습	35
[그림 2-24] 양수기 설치 기초공사	35
[그림 2-25] 1960년대 경천저수지	35
[그림 2-26] 2000년대 경천저수지	35

[그림 3-1] 주요 조사 지점 현황	49
[그림 3-2] 주요 하천경관 및 친수시설 현황	50
[그림 3-3] 좌우안 연결 교량확장 인도교 설치 공법	52
[그림 3-4] 지천 합류부 T-TYPE 교량형 인도교 설치 공법	52
[그림 3-5] '만경강에 대한 생각' 설문응답 결과	54
[그림 3-6] '만경강 접촉 방법' 설문응답 결과	55
[그림 3-7] '수변활동 빈도' 설문응답 결과	56
[그림 3-8] '지역주민생활 관련성' 설문응답 결과	57
[그림 3-9] '만경강 유역의 동질감 또는 유대감' 설문응답 결과	58
[그림 3-10] '하드웨어 측면 필요 사업' 설문응답 결과	59
[그림 3-11] '소프트웨어 측면 필요 사업' 설문응답 결과	60
[그림 3-12] '수변 이용 시 불편사항' 설문응답 결과	61
[그림 3-13] '사업대상 지역범위' 설문응답 결과	62
[그림 3-14]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 현황	64
[그림 3-15] 만경강 주변 주요사업 추진 현황	75
[그림 5-1] 대동여지도충도의 사수강	121
[그림 5-2] 전북의 행복생활권 권역 구분	122
[그림 5-3] 비전목표-발전구상-발전방향 체계도	127
[그림 5-4] 공간발전 구상	128
[그림 5-5] (가칭)만경강 해피스테이션 구축 이미지	145
[그림 6-1] 비전목표-발전구상-발전방향 체계도	156

1

장

연구개요

Jeonbuk Institute

-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유사 이래로 만경강유역은 역사와 문화 활동의 중심지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전라북도의 중추지역이며 만경강의 수원은 만경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식량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만경강은 기본적인 이수·치수를 담당하는 수로공간으로서 기능과 더불어 지역 특유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뿐만 아닌 다양한 수변활동이 가능한 휴양레저 공간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도맡아 왔으며 이에 많은 주민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전라북도의 대표 하천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음
- 이런 만경강은 지금까지 아·치수기능에 집중하여 관리된 반면에 유역권에 속한 5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의 공동자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과 경제·사회적인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되어온 측면이 있음
-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¹⁾은 치수능력보강, 수질개선, 친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유역주민들에게 안전한 삶을 제공하고 경제 및 여가활동을 촉진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나 이것이 지속가능하려면 여러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공동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만경강 유역의 5개 시·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만경강유역을 환경과 이용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만경강유역 협의회’를 2018년 구성하였음²⁾
 - 협의회는 주요 협의사항으로 만경강 유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 하천기본계획 등을 고려한 유역관리 방안, 친수공간의 합리적 조정과 공동관리·운영 방안 등을 설정함
- 만경강유역협의회는 지역의 대표적 자연자원인 ‘하천’을 매개로 하여 만경강을

1) 2012년부터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일환으로 2020년까지 준공할 예정임

2) 만경강을 역사화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고 지역주민 및 이용객을 고려한 유역으로 개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이용과 활용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간다는데
의의가 있음

- 동일 유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좋지만 만경강을 어떻게 이용·활용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미흡한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이 법률³⁾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다수의 지역에서
지자체간 공동협력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퍼포먼스에
그쳐 실효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광역행정을 위한 연계협력제도의 일반적인 형태인 행정협
의회의뿐만 아닌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발전 가능성을 감안하여
만경강유역 공동발전의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만경강을 매개로 공동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만경강유역협의회’가 실행해 나갈 실효적인 연계협력의 방향과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만경강유역의 지자체가 광역행정을 통해 연계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만경강유역
하천자원 및 시설에 대해 개략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계협력의 주요 아이템 제안
 - 둘째, 현행 법제도와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연계협력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적합한 추진체계와 협력내용을 지역 내외의 여건변화와 전망을
통해 향후 발전 방향을 단계별로 제시
 - 셋째, 연계협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유역의 공동자원으로서의 만경강유역
의 정체성을 역사문화, 생활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하여 연계협력의 당위성 확보
하고 공동체의식 형성을 유도
 - 마지막으로 만경강유역 공동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의 기본방향과 비전 및 목표, 추진
전략 및 계획과제 등 연계협력의 기본구상을 제안하고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선도사업 발굴

3)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등

2. 연구내용 및 방법

- 이 연구는 만경강 유역권 5개 지자체와 하천관리 기관이 참여하는 만경강유역협의체의 운영 방안 및 공동발전을 위한 연계협력 전략을 구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통해 지역의 대표 향토·공간자원을 매개로 한 지자체간의 상생 및 연계 협력의 가능성을 높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 수 있을 것임
-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 추진절차 등은 다음과 같음

1) 연구내용

(1) 현황분석 : 만경강 유역 개황과 역사·문화·장소적 자산 현황

- 만경강 유역의 일반현황
 - 자연환경, 수질환경 및 교통여건, 인문사회, 농업 및 산업경제 등 일반현황
 - 만경강의 형성과 지리적 특성, 만경강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간 연결교통망, 수질 및 하천생태계, 인구 및 주요관광자원, 농업, 관광 등 부문별 산업경제 현황 등
- 만경강과 연관된 역사문화장소적 자산 현황
 - 만경강의 변천과 역사적·문화적 유산과 지명유래 등
 - 만경강을 매개로한 인접 지역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역사적·문화적 유산과 지명 유래 등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정리

(2) 사례·제도분석 : 고유 공간자원을 활용한 연계협력 사례와 제도적 기반 분석

- 지역간의 공유 공간자원 또는 자연자원을 매개로한 지역발전 사례
 - 지역의 고유 자연자원을 매개로 인접지역 간 연대를 통해 공동발전모색 사례
 - 국내·외적으로 산과 강, 갯벌 등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지역간의 연대와 협력 사례
- 지역 주요하천을 중심으로 지역 간 연계협력 성공사례 발굴
 - 국내 주요하천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지역공동체 조직과 운영 성과 등
 - 금강수상관광협의회,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의 등
- 지역간 연대 및 연계협력 지원제도 분석
 -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과 관련법 제도상의 지역간 연계협력촉진 지원제도 분석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의 구성), 제159조(지방지치단체조합의 설립) 등 관련

법에 대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동향 분석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3) 만경강유역 연계협력 전략구상

- 만경강 유역권 연계협력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 현행법에 근거한 '행정협의회' 조직 및 운영 방안 제시
 - 기존 행정협의회 조직구성 및 운영, 예산확보 및 지출 등 세부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실효성이 있는 여러 대안 제시
- 부문별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방안
 - 인접지역과 연계한 교통SOC, 문화관광, 농식품 등 주요 부문별 연계협력사업 아이템 발굴
 - 만경강 대표 랜드마크 및 친수시설, 생태환경복원, 역사문화관광연계사업, 농식품 6차산업거점 등

2) 연구방법

(1)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만경강 관련 향토사학 문헌조사, 만경강 주변 지명 및 문화유산 등 탐방조사
- 향토사학자와 지역 원로 등 만경강 관련 민간설화 스토리텔링 관련 자료 수집

(2) 지형공간정보 분석

- 만경강과 주변 지형과 교통연계망 조사분석
- 만경강 주변 지역간 연결교통망 구조 및 수변 접근성, 주요 경관포인트 등 연계성 분석

(3) 주민의 의식 및 수요분석

- 만경강에 대한 지역주민의 선호도 및 요구조사
- 조사내용 : 지역주민의 만경강에 대해 갖고 있는 현재의 이미지와 향후 만경강에 대한 바람직한 미래상 등
- 조사대상 : 만경강에 인접한 주변 마을 이장, 만경강관련 지역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3) 연구구성

1장	연구개요	•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내용 및 방법
	↓	
2장	만경강유역 주요현황	• 자연환경 • 사회경제 • 역사·문화·관광
	↓	
3장	만경강 하천환경 및 주민의식조사	• 만경강 하천환경 및 시설 • 만경강유역 주민의식 • 주요 추진사업 • 정책적 시사점
	↓	
4장	연계협력 제도 및 사례분석	• 관련 법제도 분석 • 만경강유역협의회 운영현황 • 지자체간 연계협력 운영사례 분석 • 정책적 시사점
	↓	
5장	만경강 유역 연계협력 전략구상	• 연계협력 기본방향 • 만경강유역 연계협력 기본구상 • 연계협력 추진조직 구성 및 운영방향 • 연계협력 선도사업
	↓	
6장	요약 및 결론	• 주요내용 요약 • 만경강유역 연계협력 기본구상 • 결 론

2

장

만경강유역 주요현황

Jeonbuk Institute

-
1. 자연환경
 2. 사회경제
 3. 역사·문화·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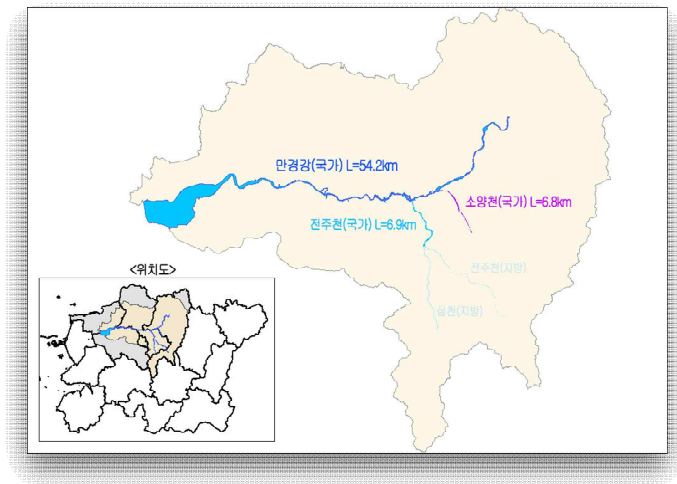
제 2 장 만경강유역 주요현황

1. 자연환경

1) 만경강 수계

- 만경강은 전북 익산의 북동쪽인 완주군 원정산에 발원하여, 고산천·전주천 등의 지류와 합쳐지면서 삼례를 거치고, 익산의 남쪽을 지나 서해(새만금)로 흘러가는 큰 강줄기임
- 만경강 전체 연장은 586.6km이며, 국가하천구간은 만경강, 전주천, 소양천 등 3 구간이며 각각의 연장은 만경강 54.2km, 소양천 6.8km, 전주천 6.9km⁴⁾로서 본류의 총 연장은 67.9km
- 만경강의 유역계는 북측과 동측에 원정산, 옥녀봉, 운장산, 만덕산을 분수령으로 하여 금강유역과 접해 있으며, 남측으로는 박이피산, 오봉산, 모악산, 매봉산을 분수령으로 하여 섬진강 및 동진강 유역과 접하고 있음⁵⁾

[그림 2-1] 만경강 수계현황



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관내 하천현황

5) 익산지방국토관리청(2012), 만경강 하천기본계획(보완), 유역의 일반현황

2) 하천수질⁶⁾

- 만경강 본류 구간의 하천 수질은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최근 8년간의 수질항목인 BOD, COD, T-N, T-P 등 4개 항목에 대해서 4개 대표 측점을 대상으로 분석함

(1) BOD

① 고산

- 고산지점의 지난 8년간('11년~'18년) 하천수질은 연평균 BOD농도 기준으로 0.6~1.3mg/L으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였음
- '15년에 1.3mg/L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된 반면 '17년에 0.6mg/L로 가장 낮게 나타남

② 전주

- 전주시점의 하천수질은 '11년~'18년 동안 연평균 BOD농도가 1.3~2.8mg/L의 범위를 보이고 있음
- 최근 3년간('16~'18) 연평균 BOD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8년 BOD농도가 2.8mg/L로 가장 높게 나타남

③ 삼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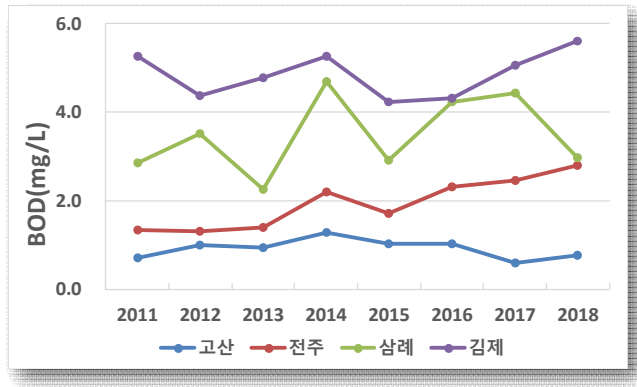
- 삼례지점의 연평균 BOD농도는 2.2~4.7mg/L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다소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큰 변화는 보이지 않음
- '15년~'17년 동안 연평균 BOD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18년에 소폭 감소하였음

④ 김제

- 김제지점의 연평균 BOD농도는 4.2~5.6mg/L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8년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함
- '15년~'18년 동안 연평균 BOD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18년 BOD농도가 5.6mg/L로 가장 높게 나타남

6)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publicMain/mainContent.do>), 물환경측정 자료_하천

[그림 2-2] 연평균 BOD농도 변화 추세



(2) COD

① 고산

- 고산지점의 지난 8년간('11년~'18년) 연평균 COD농도는 2.8~3.7mg/L을 기록하며, 증가추세를 보임
- '18년에 2.7mg/L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② 전주

- 전주시점의 연평균 COD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5년~'18년 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연평균 COD농도의 범위는 4.3~6.2mg/L 범위를 기록하였고, '18년에 6.2mg/L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③ 삼례

- 삼례지점의 연평균 COD농도는 6.6~11.4mg/L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14년에 11.4mg/L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최근 3년간 연평균 COD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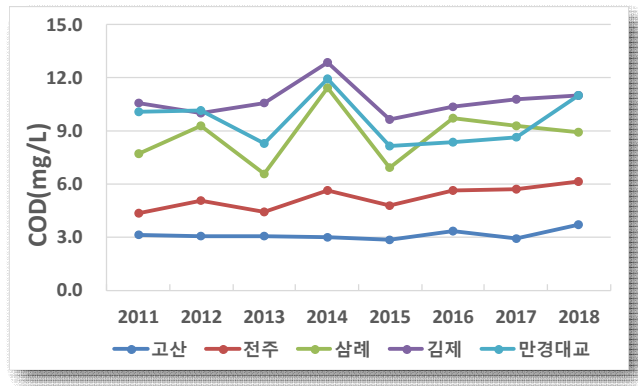
④ 김제

- 김제지점의 연평균 COD농도는 10.0~12.9mg/L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8년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함
- 삼례지점과 동일하게 '14년에 12.9mg/L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15년부터 '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⑤ 만경대교

- 만경대교지점의 하천수질은 '11년~'18년 동안 연평균 COD농도가 8.1~11.9mg/L의 범위를 보이고 있음
- 최근 4년간('15~'18) 연평균 COD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3] 연평균 COD농도 변화 추세



(3) T-N

① 고산

- 고산지점의 지난 8년간('11년~'18년) 하천수질 연평균 T-N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8년에 2.6mg/L로 최고치를 기록함
- 연평균 T-N농도 기준으로 1.9~2.6mg/L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였음

② 전주

- 전주시점의 하천수질은 '11년~'18년 동안 연평균 T-N농도가 1.7~2.7mg/L의 범위를 보이고 있음
- 지난 8년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16년에 2.7mg/L로 최고치를 기록함

③ 삼례

- 삼례지점의 연평균 T-N농도는 '14년부터 '18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18년에 10.7mg/L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평균 T-N농도는 3.8~10.7mg/L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타 측정지점에 비해 최저치와 최고치의 변동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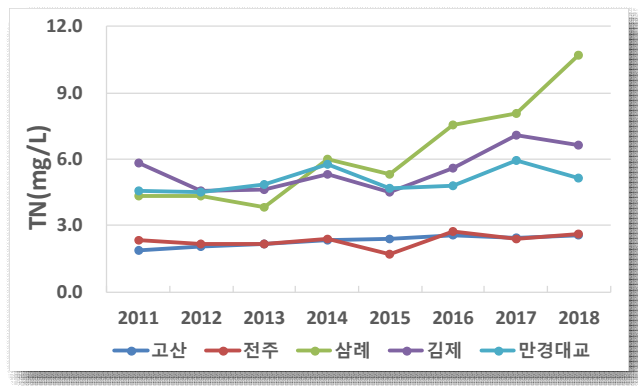
④ 김제

- 김제지점의 연평균 T-N농도는 4.5~7.1mg/L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8년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함
- '12년~'14년까지 서서히 증가한 후 '15년에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⑤ 만경대교

- 만경대교지점의 하천수질은 '11년~'18년 동안 연평균 T-N농도가 4.5~5.9mg/L의 범위를 보이고 있음
- 최근 3년간('15~'17) 연평균 T-N농도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18년에 잠시 감소세를 기록하였고, 최고치 기록은 '17년에 7.1mg/L로 나타남

[그림 2-4] 연평균 T-N농도 변화 추세



(4) T-P

① 고산

- 고산지점의 지난 8년간('11년~'18년) 하천수질 연평균 T-P는 0.010 ~ 0.073mg/L 범위로 나타났으며 큰 변화를 기록하지 않았음
- '12년에 0.073mg/L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② 전주

- 전주지점의 연평균 T-P농도는 최근 4년간('15~'18)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11년부터 '14년까지 서서히 증가한 후 '15년에 잠시 감소세를 보였으나 '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③ 삼례

- 삼례지점의 연평균 T-P농도는 전주지점과 동일하게 '11년부터 '14년까지 서서히 증가한 후 '15년에 잠시 감소세를 보였으나 '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 '14년에 0.387mg/L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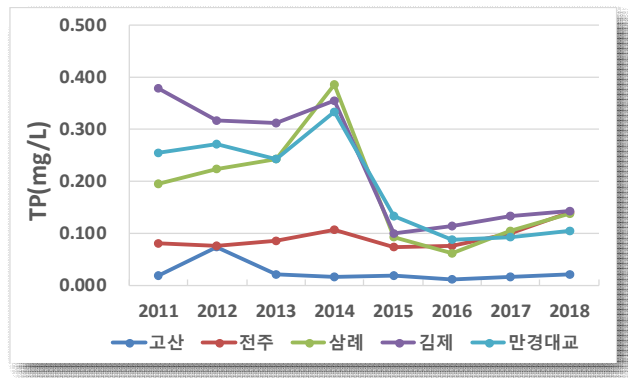
④ 김제

- 김제지점의 하천수질은 '11년~'18년 동안 연평균 T-P농도가 0.099~0.378mg/L의 범위를 보이고 있음
- '11년부터 '13년 까지 서서히 증가한 후 잠시 감소세를 보이다가 '15년부터 '18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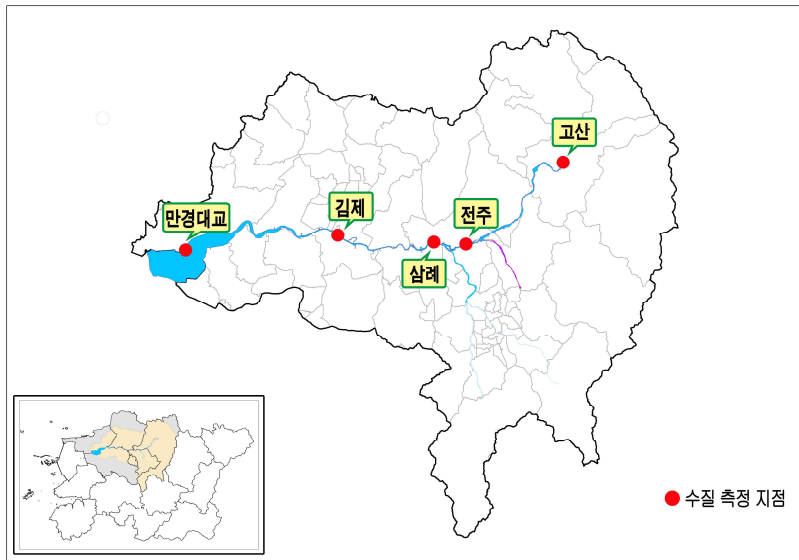
⑤ 만경대교

- 만경대교지점의 연평균 T-P농도는 '14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5년 이후 0.088~0.104mg/L 범위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였음

[그림 2-5] 연평균 T-P농도 변화 추세



[그림 2-6] 만경강유역 수질 측정 지점 현황



[그림 2-7] 만경강 수질측정망 및 수질현황 (관개기하천수질등급,BOD)



3) 하천생태기

- 국립수산물연구원 중부내수면연구소 2006년 조사에 의하면 만경강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는 총 14과 63종으로 보고됨
 - 수변과 수중 생태계가 안정적인 상류 구간의 고산천에는 11과 44종, 소양천에는 9과 38종이 확인됨
 - 수질이 좋지 않은 도심하천인 삼천에는 5과 13종, 자연하천형으로 성공적으로 복원된 전주천에는 19과 26종, 만경강 본류에는 11과 38종이 서식한다고 조사됨
- 지역별 우점종은 고산천과 소양천에서는 피라미, 삼천에서는 민물점정망둑, 전주천에서는 참갈겨니, 만경강 본류에서는 붕어가 우점종으로 나타남
- 만경강에 서식하는 물고기중 우리나라 고유종은 6과22종으로 전체 서식어종의 35%로 나타남
 - 그 중 잉어과가 각시붕어, 칼납자루, 줄납자루, 가시납자리, 감돌고기, 쉬리, 참중고기, 중고기 등 15종으로 가장 많았음
 -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급 어류로는 감돌고기, 통사리 2종이 살고 있음



통사리



달뿌리풀

- 만경강이 아름다운 이유는 크고 작은 하중도(河中島)가 점점이 펼쳐져 있고 주변에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기 때문임
 - 특히, 소양천과 고산천이 만나는 완주군 삼례읍 구와리 회포교에서 하리교까지 이어지는 신천습지 일대는 수증보와 하중도의 영향으로 하천식생은 물론 호소(湖沼)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
-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부터 시작된 하천 직강화 제방공사와 저수지 축조, 농업용 보설치는 하도습지와 배후습지를 형성함

7)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만경강 생태포럼 활성화 방안(2016) 발제자료

- 유속이 느려지면서 퇴적작용으로 많은 하중도가 만들어졌고, 옛 물길인 구하도(舊河道)는 습지를 형성함
- 주요 지류인 원평천, 정읍천, 고산천, 소양천, 전주천 등 유역에서 34개의 습지가 확인 됨
 - 이 중 하도습지는 만경강 본류인 고산~삼례 구간에 16개가 집중되어 있음
 - 고산천과 소양천이 만나는 지점의 신천 1,2습지는 가시연꽃, 흑삼릉 등 약 28개의 식물군락이 확인되어 환경부 습지보전등급이 '상'으로 평가됨
- 인공적 우각호라 할 수 있는 배후습지는 익산시 춘포면의 화신습지를 비롯해 익산시 석탄동, 춘포면 춘포리, 전주시 조촌동, 강흥동, 김제시 백구면에 8개가 있음
 - 이중 식생이 가장 양호하고 물새를 비롯한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은 전주시 덕진구 강흥동 구담배후습지임



만경강 신천습지

자료 : 완주군 공식 블로그(2017), 「신천습지, 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꼭 지키자'에 선정」

2. 사회경제

1) 행정구역 및 인구

(1) 행정구역

- 만경강유역 행정구역은 총 5개 시군(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6개 읍, 38개 면, 99개 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시군별 유역내 점유비율은 완주군이 49.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만경강유역 전체면적은 1,489.4km²으로, 전라북도 전체 면적의 약 18.5%에 해당 하며 시군별 편입비율은 전주시 98.8%, 완주 89.3%, 익산 55.0%, 군산 29.6%, 김제 28.8% 순으로 나타남

[표 2-1] 만경강유역 행정구역 구성비

(단위 : km², %)

구분	전체면적	구성비	유역내 면적	구성비	유역내 편입비율
전라북도	8066.8	100.0	1489.4	100.0	18.5
전주시	205.5	2.5	203.0	13.6	98.8
군산시	396.2	4.9	117.4	7.9	29.6
익산시	507.0	6.3	278.8	18.7	55.0
김제시	545.9	6.8	157.2	10.6	28.8
완주군	821.0	10.2	733.0	49.2	89.3

자료 : 각 시군구별 2017년 통계연보(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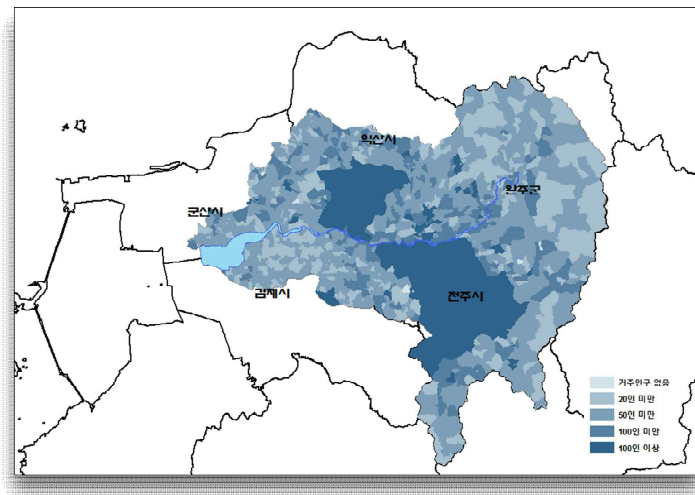
[그림 2-8] 만경강 유역도



(2) 인구

- 2016년 기준 만경강유역 인구는 총 1,044,026명이며, 상주가구는 294,176가구로 가구당 약 3.5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
- 연령별 인구 점유 비율은 유소년 12.7%, 경제활동인구 72.3%, 고령인구 15.0%를 차지하고 있음
 - 유소년:15세미만 인구,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 65세미만 인구, 고령인구:65세이상 인구
- 유역내 시군별 인구는 전주시가 638,013명으로 59.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면 군산시는 18,170명으로 1.7%에 불과함
 - 군산시의 경우 군산시 전체 면적(396.2km²) 대비 유역 편입비율이 29.6%에 불과함

[그림 2-9] 만경강유역 인구현황



[표 2-2] 만경강유역 연령별 인구현황(2016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15세 미만	15세이상 65세미만	65세이상 75세미만	75세이상	합계
전라북도	132,569	754,395	88,834	68,228	1,044,026
전주시	80,527	463,115	48,349	32,955	624,946
군산시	1,099	11,354	2,728	2,989	18,170
익산시	33,319	193,167	22,828	17,865	267,179
김제시	4,447	24,564	5,414	5,533	39,958
완주군	13,177	62,195	9,515	8,886	93,773

자료 : 전북연구원(2018) 전라북도 농촌과소화정책지도제작 연구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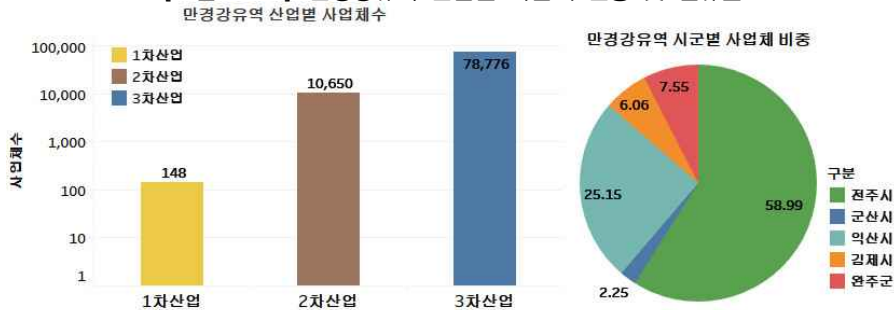
2) 산업경제

(1) 산업구조

① 산업별 사업체 현황

- 2017년 기준 만경강유역의 총 사업체수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전체(148,269개) 대비 60.4%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경강 유역 산업별 비중은 전라북도 전체대비 1차산업 비율이 34.3%, 2차산업 54.7%, 3차산업이 60.4%를 차지하고 있음
- 만경강유역 총사업체수 비율은 전주시가 59.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익산시 25.2%, 완주군 7.6%, 김제시 6.1%, 군산시 2.3% 순으로 나타남
- 만경강 유역 1차산업 사업체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김제시가 10.4%이며, 2차 및 3차산업 사업체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주시로 각각 23.9%, 37.5%로 나타남

[그림 2-10] 만경강유역 산업별 사업체 현황 및 점유율



[표 2-3] 만경강유역 산업별 사업체수 현황

(단위 : 개, %)

구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합계	비율
전라북도	432(100)	19,468(100)	128,369(100)	148,269(100)	
만경강유역	148(34.3)	10,650(54.7)	78,776(61.4)	89,574(60.4)	100.00
전주시	20(4.6)	4,653(23.9)	48,166(37.5)	52,839(35.6)	59.99
군산시	20(4.6)	502(2.6)	1,493(1.2)	2,015(1.4)	2.25
익산시	44(10.2)	3,200(16.4)	19,282(15.0)	22,526(15.2)	25.15
김제시	45(10.4)	1,099(5.6)	4,287(3.3)	5,431(3.7)	6.06
완주군	19(4.4)	1,196(6.1)	5,548(4.3)	6,763(4.6)	7.55

자료 : 통계청(MDIS) 전국사업체조사(2017년 기준)

② 산업별 종사자 현황

- 2017년 기준 만경강유역의 산업별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전체(670,391명) 대비 6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경강 유역 1차산업 종사자 비율이 전라북도 전체 대비 37.7%, 2차산업 61.3%, 3차산업 64.7%를 차지하고 있음
- 만경강유역 내 지자체별 산업종사자수 비율은 전주시가 55.4%, 익산시 24.4%, 완주군 11.6%, 김제시 6.0% 순으로 나타났으며, 군산시가 2.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1차산업 종사자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익산시가 13.9%이며 2차, 3차산업 종사자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주시로 각각 22.5%, 39.8%로 나타남
- 만경강유역 내 산업별 종사자 비중은 3차산업 종사자수가 75.4%, 2차산업 종사자수는 2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1차산업 종사자수는 0.2%에 불과함
 - 지방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해 1차, 2차산업의 종사자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2-11] 만경강유역 산업별 종사자수 현황 및 점유율



[표 2-4] 만경강유역 산업별 종사자수 현황

(단위 : 명, %)

구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합계	비율
전라북도	2,304(100)	170,003(100)	498,084(100)	670,391(100)	
만경강유역	869(37.7)	104,183(61.3)	322,277(64.7)	427,329(63.7)	100.00
전주시	120(5.2)	38,287(22.5)	198,468(39.8)	236,875(35.3)	55.43
군산시	90(3.9)	4,389(2.6)	6,683(1.3)	11,162(1.7)	2.61
익산시	320(13.9)	29,625(17.4)	74,138(14.9)	104,083(15.5)	24.36
김제시	246(10.7)	9,876(5.8)	15,578(3.1)	25,700(3.8)	6.01
완주군	93(4.0)	22,006(12.9)	27,410(5.5)	49,509(7.4)	11.59

자료 : 통계청(MDIS) 전국사업체조사(2017년 기준)

(2) 지역경제

① 지역 내 총생산

- 만경강유역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2016년 36,335,901백만원으로 전라북도 지역 내 총생산액의 77.4%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GRDP는 25,714,774원으로 전라북도 1인당 GRDP 25,147,376원 보다 높게 나타남
- 만경강유역 내 시군별 지역 내 총생산액 구성비는 전주시 25.8%, 군산시 21.2%, 익산시 14.8%, 완주군 9.9%에 이어 김제시가 5.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만경강유역의 2016년 기준 지역 내 총생산액은 2015년 대비 약 2.89% 증가함

[표 2-5] 만경강유역 지역총생산 및 1인당 GRDP

(단위 : 백만원, 원)

구분		2015년	2016년
전라북도	지역총생산	45,641,149	46,894,601
	1인당 GRDP	24,410,804	25,147,376
만경강유역	지역총생산	35,407,301	36,335,901
	1인당 GRDP	24,991,654	25,714,774
전주시	지역총생산	11,633,260	12,082,387
	1인당 GRDP	17,834,710	18,538,547
군산시	지역총생산	9,797,474	9,949,215
	1인당 GRDP	35,192,329	35,846,439
익산시	지역총생산	6,800,261	6,954,851
	1인당 GRDP	22,512,873	23,145,880
김제시	지역총생산	2,625,237	2,691,070
	1인당 GRDP	29,589,804	30,656,285
완주군	지역총생산	4,551,069	4,658,378
	1인당 GRDP	47,753,680	48,789,045

자료 : 전라북도 통계시스템 지역내총생산(2016년 기준)

주) 1인당 GRDP :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으로 추정

② 재정자립도

- 2018년 만경강유역 재정자립도는 22.6%로 전라북도 재정자립도의 27.9%대비 약 5.3%p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만경강유역의 2000년부터 5년단위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증감 폭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만경강유역 내 시군 중에서는 전주시가 30.7%로 가장 높고, 김제

시가 14.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2015년 대비 재정자립도 증가지역은 전주시(0.3%p), 김제시(2.9%p),이며 감소지역은 군산시(-1.0%p), 익산시(-2.0%p), 완주군(-5.6%p)로 나타남
- 완주군의 경우 5개 시·군 중 가장 크게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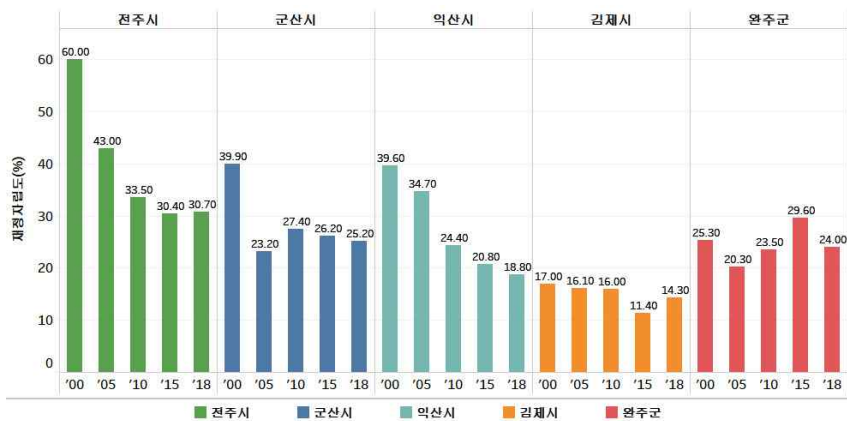
[표 2-6] 만경강유역 재정자립도

(단위 : %, %p)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전라북도	재정자립도	22.8	25.1	24.6	27.6	27.9
	증감률	-	2.3	-0.5	3.0	0.3
만경강유역	재정자립도	36.36	27.46	24.96	23.68	22.6
	증감률	-	-8.9	-2.5	-1.3	-1.1
전주시	재정자립도	60.0	43.0	33.5	30.4	30.7
	증감률	-	-17.0	-9.5	-3.1	0.3
군산시	재정자립도	39.9	23.2	27.4	26.2	25.2
	증감률	-	-16.7	4.2	-1.2	-1.0
익산시	재정자립도	39.6	34.7	24.4	20.8	18.8
	증감률	-	-4.9	-10.3	-3.6	-2.0
김제시	재정자립도	17.0	16.1	16.0	11.4	14.3
	증감률	-	-0.9	-0.1	-4.6	2.9
완주군	재정자립도	25.3	20.3	23.5	29.6	24.0
	증감률	-	-5.0	3.2	6.1	-5.6

자료 :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재정자립도

[그림 2-12] 만경강유역 연도별 재정자립도



3) 교통망

(1) 도로 현황

① 고속국도

- 유역 내 고속국도 총 연장길이는 약 260.33km
- 유역 중앙으로 호남고속도로, 서측으로 서해안고속도로, 동측으로 익산포항고속도로, 전주광양고속도로가 위치함

② 일반국도

- 유역 내 일반국도 총 연장길이는 약 683.11km
- 동서측으로 군산새만금로, 군익로, 새만금북로, 전진로, 일반국도(26호선, 21호선, 26호선, 27호선)가 형성되어 있음
- 남북측으로 모악로, 완주로, 하공로, 호남로, 일반국도(17호선, 1호선, 23호선, 29호선)가 형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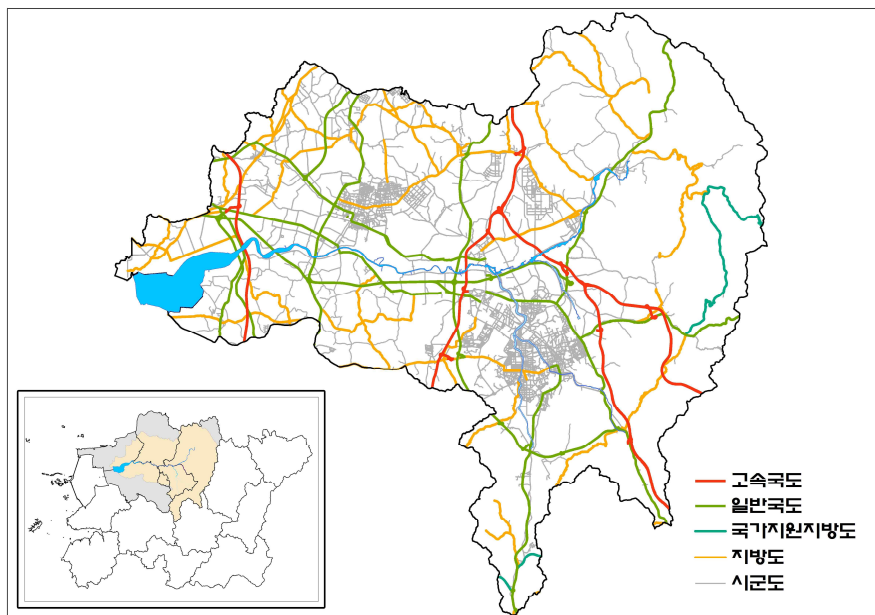
③ 지방도

- 유역 내 지방도 총 연장길이는 736.26km
- 동서측으로 남군산로, 능제로, 대야관통로, 삼봉로, 소양로, 콩쥐팍쥐로, 진북로, 탑천로, 지방도(702호선, 716호선, 718호선, 720호선, 740호선, 744호선, 745호선) 등이 형성되어 있음
- 남북측으로 고산천로, 구이로, 동군산로, 백산로, 백제로, 봉도로, 상관소양로, 지방도(711호선, 643호선, 709호선, 711호선, 712호선, 713호선, 714호선, 722호선, 723호선, 732호선, 735호선, 741호선, 749호선, 799호선) 등이 형성되어 있음

④ 시군도

- 유역 내 시군도 총 연장길이는 약 2,195.10km
- 동서측으로 2공단로, 고봉로, 공동로, 기지로, 농생명로, 동군산로, 만경강로, 배산로, 이서로 등이 형성되어 있음
- 남북측으로 1공단로, 강변로, 거마평길, 견훤로, 고산천로, 과학로, 구이로, 궁성로, 남북로, 반교로, 삼례로, 왕궁로 등이 형성되어 있음

[그림 2-13] 만경강유역 도로망 현황



(2) 철도 현황

- 도내 철도현황으로는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호남고속철도 등이 있으며, 특히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용산에서 익산까지 운행시간이 45분 단축되어 66분 소요되고, 운행횟수 증가로 도민들의 철도이용이 편리해지고 시간적, 경제적 이익을 창출함⁸⁾
- 또한, 익산~대야 및 군장 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으로 군산·새만금 산업단지, 군산항 연계 물류수송 체계 구축으로 군상항 활성화 및 새만금 지역 기업유치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8) 전라북도(2014), 전북도, 철도망 대폭 확장 추진 보도자료

[표 2-7] 도내 철도 현황

노선명	노선길이(km)	비고
호남선(복선)	81.6	
전라선(복선)	92.9	
장항선(복선)	25.4	
군산화물선(단선)	8.9	
옥구선(단선)	11.6	
북전주선(단선)	1.7	
호남고속철도	74.4	
군장산단인입철도	29.9	

자료 : 전라북도(2014), 전북도, 철도망 대폭 확장 추진 보도자료

[그림 2-14] 철도노선도



3. 역사·문화·관광

1) 역사자원⁹⁾

(1) 만경강의 역사

- 만경강은 크게 전주천, 익산천, 고산천이 삼례지역에서 합류하여 본류를 이루는 강으로 이들 지천 지역의 역사가 만경강의 역사를 형성함
- 만경강이란 표현은 우리의 전통 역사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명칭임
 - 일제시기 만경현과의 인접성 때문에 일본인들이 임의로 설정한 명칭으로 확인됨
 - 1870년대 제작된 「대동여지도총도」에 현재의 만경강을 ‘사수(泗水)’라 표현함
- 익산천은 고조선의 준왕이 바다를 통해 현재의 익산(금마)일대로 피난하여 우리 역사에서 마한이 역사정통성의 근간으로 자리 잡는 근거가 됨
 - 백제시대의 경우 만경강줄기가 백제의 마지막 수도로 논의되고 있는 금마지역을 흘러 백제 무왕(서동)과 선화공주의 국경을 뛰어넘은 사랑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서동이 백제의 무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 부를 제공한 터전으로 자리 잡음
- 고산천의 상류지역은 백제의 수도 부여지역으로 연결되는 고대 유상교통로로서 수많은 백제 산성이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임
- 전주천이 흐르는 전주일대는 후백제 견훤의 도읍이자 조선왕조의 관향으로서 그 역사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곳임
 - 해양교류의 통로로서 만경강을 활용하였고, 이는 동북아 해상왕국을 이루었던 장보고가 해상왕국 백제의 전통을 계승 하였던 것을 다시금 부활시키고자 한 것으로 그 중심에 만경강이 위치하였음
- 만경강 일대는 일제강점기에 집중적인 수탈의 대상이 되었으며, 만경강 또한 양곡을 실어 나르는 통로가 되었음

(2) 만경강유역 역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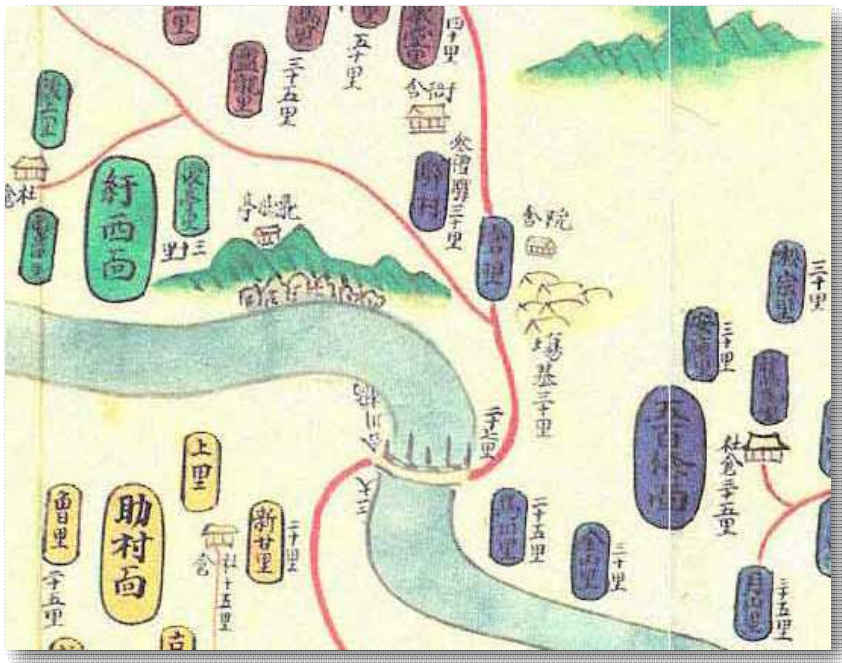
- 본류의 원줄기인 고산천 상류지역은 백제시대 군사적인 교통로 방어 체계가 정비되어 물길을 따라 산성들이 요소요소에 세워졌고, 현재까지 백제산성의 위용을

9) 만경강 포럼(2017), 전(고대)·근대의 만경강 역사자원_조범중

나타내고 있음

- 백제시대 난등랑(難等良)으로도 불린 고산읍일대에 소량리산성, 관동리산성, 이천리산성, 백현리산성, 종리산성, 고성산성 등으로 주변까지 확대하면 10여곳 이상의 산성이 포진되어있음
- 상류지역에는 화암사, 안심사, 봉림사터 등 현재는 접근키 어려운 사찰들이 교통로 옆에 위치하여 나름의 기능을 수행하였음
- 중류지역인 봉동-삼례지역은 전통적인 수자원을 이용한 농경문화의 양상이 전개된 지역으로 특히, 제언과 보 등 수리관개시설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삼례는 고려시대이래 호남최대의 역참으로 고려현종이 거란의 침입을 피해 나주로 갈 때 거쳐 갔던 역이며, 동학교도들의 1892년 교조신원을 위한 삼례집회가 진행되었음
- 만경강 삼례 근처에 형성된 모래사장은 완산8경중의 '비비낙안'(비비정 앞 백사장에 내려앉는 기러기 모습)이 펼쳐졌고, '동포귀범'(저녁노을을 받으며 만경강의 동쪽 포구로 돌아가는 황포돛배의 모습)이 펼쳐진 공간으로 매우 아름다운 강변이었음

[그림 2-15] 1872년 전주부도에 나타난 삼례지역모습



2) 만경강유역 농경문화유산

- 만경강유역은 조선시대 농업생산 거점 및 내륙수로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만경강이 관류하는 완주군과 김제·만경을 중심으로 한 호남평야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철원·평강 평야와 함께 지평선이 보이는 단 두 곳 중의 하나로 삼한시대부터 벼농사가 진행된 곳이며 최대의 곡창지대였음¹⁰⁾
- 삼국시대에 축조된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저수지는 김제의 벽골제, 정읍의 늘제와 더불어 익산의 황등제가 알려져 있으며 이들을 삼호(三湖)라 하고 호남이라는 명칭이 이들 3호에서 유래되었다¹¹⁾는 학설이 있으며 만경강과 동진강 수계에 위치한 호남평야의 젖줄로 이용되고 있음
 - 이후 벼와 보리를 경작하는 이모작이 조선시대 도입되면서 이양에 필요한 물 확보를 위해 더욱 많은 저수지와 보가 만경강 유역에 만들어짐
- 만경강유역권의 토지는 대부분 왕실 및 관청 토지로서 일반농민의 경작권이 소유권처럼 보장되었던 토지였는데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으로 총독부에 토지소유권이 넘어갔고 다시 이를 일본인 지주에게 불하하여 대규모 일본농장이 집중 육성되었던 지역임
- 만경강 중류지역인 봉동~삼례지역은 전통적인 수자원을 이용한 농경문화의 양상이 전개된 지역으로 특히, 제언과 보 등 수리관개 시설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음

[그림 2-16] 만경 평야(만해사 전망대)



자료: 한국일보(2019), 새창이다리에서 만해사까지, 새만금바람길

[그림 2-17] 김제 벽골제



자료: 네이버블로그(2014), [직행#14]풍경편

-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 일환으로 만경강 하천의 직강화를 위한 제

10) 만경강포럼 3차(2016), 전(고대)·근대의 만경강 역사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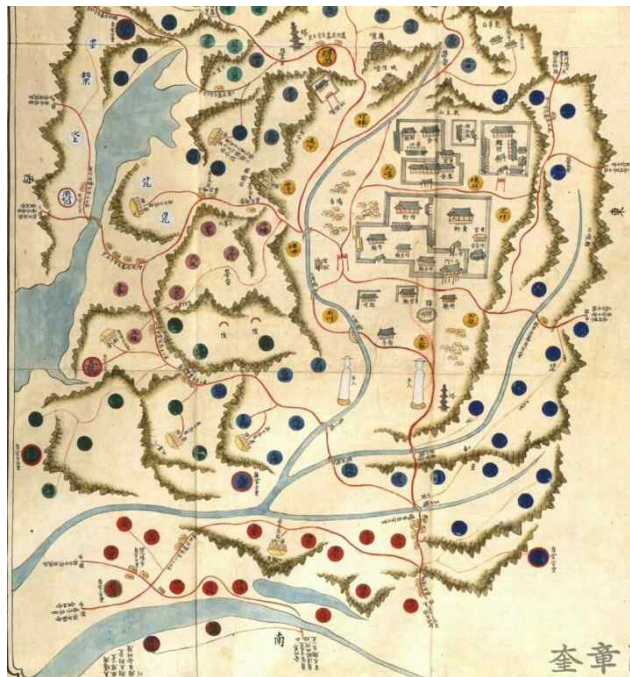
11) 박노석(2011), 익산황등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건지인문학 제6집

방공사와 함께 농업용수개발을 위하여 대아, 옥구, 섬진, 능제, 왕궁 등이 대규모 저수지들이 일제에 의해 축조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중요 수리시설로 이용되고 있음

① 황등제

- 황등제 관련 문헌에 의하면¹²⁾ 황등제는 현재 익산시 황등면의 황등산과 신용동의 도치산 줄기 사이를 연결한 약 1300m의 제방으로 형성된 저수지임
- 황등제는 미륵산과 용화산에서 발원하는 기양천유역과 탑천 상류유역을 수원으로 하고 있으나 유역면적이 좁아 조금만 가물어도 수량이 부족하여 인근의 만경강 본류의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 아래쪽에서 탑천에 이르는 인공수로를 운영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음
- 황등제의 축조 시기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삼국시대 백제 때로 알려지고 있으며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사용하거나 정비한 기록이 남아 있고 명칭은 상시제, 하시제, 상시연 등으로 불렸음

[그림 2-18] 1872년 익산군 지도



12) 박노석(2011), 익산황등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건지인문학 제6집

- 황등제에 대한 지명은 조선후기 유형원의 반계수록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황등제 연결수로는 광해군일기에 40여리를 5일 만에 쌓인 찌꺼기를 제거하고 수로를 개통시킨 기록이 남아 있음
 - 즉, 원주군 삼례읍 비비정 아래쪽에서 황등제에 이르는 40여리의 물길을 정비한 기록이 이후 여러 문헌에 등장하고 있어 일제가 건설한 현재의 대간선 수로의 일부가 이미 우리 조상들이 만든 황등제 연결수로에서 기원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농경역사에 매우 중요한 시설로서 향후 이를 고증할 심층연구가 필요함
- 1800년대 제작된 많은 지도에 황등제가 표시되어 있고 조선 후기 철종 재위기간에 김정호가 제작한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에도 황등제에 대한 표기가 있으며 고종 9년(1872)에 제작된 전국 군현지도에 황등제의 수면이 뚜렷하게 그려져 있음
- 1914년 일제의 기록에 의하면 황등제의 규모는 둘레가 40km, 면적은 9,917,400㎡, 관개면적은 3,343ha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일제는 산미증산계획의 일환으로 황등제를 증축하였으나 1922년 대아저수지가 완공되고 대간선수로를 통해 농업용수를 대체하면서 황등제를 경작지로 조성하여 제 기능이 상실됨

② 대장촌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는 원래 익산군 춘포면 대장촌리였지만, 대장촌(大場村)이라는 지명이 일제의 잔재라는 이유로 1996년 춘포리로 바뀌게 됨¹³⁾
- ‘큰 농장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대장촌은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인 지주들이 이 마을에서 대규모 농장을 경영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임
- 역사적으로 대장촌의 영역은 전라선 철도와 만경강 사이에 있는 춘포면 남측 지역을 말함
- 장연(長淵)의 널따랗고 긴 방죽과 봉개 오관산 수로가 꾸불텡 거리고 대장촌 주변 일대는 갈대밭으로 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이었으나 일본인들의 의해 대간선수로, 대아리 저수지를 만들면서 농경지 개간 사업을 시작함¹⁴⁾
 - 일본의 침략 이후 일본 지주들을 끌어 드리기 위한 ‘모범촌’을 만들어 홍보용으로 활용했으며 금강, 만경강, 동진강 주변의 농경지가 개간, 확대되고 생산된 쌀이 군산항을 통해 오사가 등지로 반출됨

13) 윤춘호(2017), 대장촌의 일본인 지주와 조선 농민 봉인된 역사

14) 네이버블로그(2019), 숨리4.4만세운동과 대장촌 박도현 열사 재조명_G스마일

[그림 2-19] 익산 대장촌 대장교 개통식



자료 : <https://blog.naver.com/bj2188/221485579136>

③ 대간선수로¹⁵⁾

- 대간선수로는 만경강 상류권의 지류 고산천 어우보에서 시작해 군산의 옥구저수지까지 흐르는 긴 수로임
 -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에서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까지 약 65km이며, 논 사이에 있는 지선까지 전부 합하면 2,200km로 전주에서 서울까지 다섯 번 왔다갔다할만한 거리임
 - 벼와 보리를 경작하는 이모작이 조선시대 도입되면서 이양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많은 저수지와 보가 만경강 유역에 만들어짐
 - 일제강점기에 호남평야의 많은 쌀을 수탈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동시에 지금도 농업용, 식수용으로 물을 끌어다 쓰고 있어 활용가치가 있음
- 일제가 쌀 수탈을 위해 대대적인 쌀 증산활동을 벌였고, 그 일환으로 만경강에 대한 대규모 수리 사업을 벌였고, 1924년 첫 삽을 떠 16년간 진행된 수리사업을 통해 만경강은 일제 식량기지 중심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됨
 - 직강공사와 인공제방의 축조로 만경강 유로는 크게 변했고, 당시 쌓았던 제방이 대부분 오늘날까지 그대로 역할을 하고 있음
- 만경강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공급 역할 이외에도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는 수로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15) 만경강포럼 3차(2016), 전(고대)·근대의 만경강 역사자원

- 대동여지도에 나타나 있는 대구포 포구나 나루터만도 고사포, 동자포, 회포, 목천포, 춘포, 사천진 등 12개나 있어 만경강 수로가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2-20] 대아댐에서 옥수 저수지까지의 인공 도수로



자료 : <https://blog.naver.com/bj2188/221485579136>

④ 대아저수지(대아댐)¹⁶⁾

- 구 대아댐은 1920년 익옥수리조합이 설립되면서 1920년 7월에 착공, 1922년 12월에 준공한 농업용수 전용 저수지였음
-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에 위치한 이 댐은 전주 일부와 익산, 옥구에 걸쳐 800ha의 농지를 관개하기 위해 축조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콘크리트 아치댐으로 그 규모는 길이 254.11m, 높이 32.72m이며, 독일기술진에 의해서 설계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식 댐이기도 함
- 구 대아댐은 준공 후 60여 년이 경과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이 다 되고, 노후화되어 보수효과가 작을 뿐만 아니라 절대용수량도 부족하였으므로, 이 댐으로부터 300m의 하류지점인 고산면 소향리에 새로운 댐을 건설하게됨
- 이 댐의 준공으로 기존 구 대아댐은 물에 잠기게 되고, 만수면적이 234ha, 저수량 5,831만 톤의 새로운 저수지가 조성되었으며 이는 기존 대아저수지 저수량의 2.5배로서 수혜면적이 8,382ha에 달하여 전남 나주호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큰 농업용 저수지로 기록됨
- 만경강 상류에 당시 동양 최대의 농업용 댐인 대아댐을 만들고 직강화 및 농로·수리관개 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여 근대농업 시스템을 설치함

16) 만경강포럼 3차(2016), 전(고대)·근대의 만경강 역사자원

-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 농업경영의 중심지로서 대아댐을 건설하고 만경강을 직강화 하였으며 농수로 개발 등을 통해 관개 효율을 극대화하였음
- 광복 이후 만경강 유역권은 동진강 유역권과 함께 개간과 간척사업이 진행되었고 제하도 간척과 새만금 간척을 통한 국토변혁의 역사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음

[그림 2-21] 대아댐 공사현장



자료: 전북일보(2010), 아름다운 전북의 호수들

[그림 2-22] 대아저수지 댐



자료:전북일보(2016), 창간60주년 대아댐(구댐)

⑤ 옥구저수지

-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에 위치하며, 1920년대 일제 강점기에 순수 인력만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물을 담수하기 위해 건립된 대규모 저수지임¹⁷⁾
 - 이전 명칭은 마산 방죽이라 불리었으며, 토언제(제방을 흙으로 축조해 만든 저수지)로 저수지의 제방 높이는 4m, 길이는 6.1km임
 - 인가면적 2,260ha, 총저수량 12,857천m³, 유효저수량 12,588천m³, 유역면적·홍수면적 322ha
- 대아리 저수지 건설과 함께 간척사업은 동시에 시행 되어, 관개용수가 확보됨에 따라 군산 서쪽에 방조제 길이 14km, 매립면적 2,500ha를 간척하여 평평한 간척지 바닥에 둘러쌓아 만든 관개용 저수지임¹⁸⁾
 - 이 곳에 대아리 저수지의 물을 대간선 수로를 통해 끌어와 양수기로 퍼 담았음
 - 이로써 만경강 상류의 대아리 저수지와 하류의 옥구저수지는 한 라인으로 단일 수리 체계가 됨
- 만경평야의 농경지 대부분 일본인 지주의 것이었고, 옥구저수지 북쪽에는 북이농촌(현재 군산시 미성동)이라는 일본인 농업이민 촌락도 생겨나게 됨

17) 네이버 지식백과, 옥구저수지(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18) 만경강포럼 3차(2016), 전(고대)·근대의 만경강 역사자원

[그림 2-23] 대간선수로 공사 모습



자료:네이버블로그,대간선수로 종착지 옥구저수지

[그림 2-24] 양수기 설치 기초공사



자료: 우리역사넷, 1920년대 사회상(옥구저수지)

⑥ 경천저수지

- 경천저수지는 완주 경천에 위치해 현재까지도 이 일대의 항구적인 관개를 담당하고 있는 저수지로 1933년 당시 임익수리조합이 추진해 5월4일자로 저수지 신설을 인가 받은 뒤 6월20일 첫 삽을 떠 1937년 12월에 댐을 막아 대아리 부근까지 터널을 뚫어 발전소를 세움¹⁹⁾
- 호남지방에서 동림지(115만평) 다음으로 큰 저수지이며 군내 저수지 규모로는 다섯 번째 크기임²⁰⁾
 - 저수지의 폭이 1km, 길이가 직선거리로 3~4km이며, 높지 않은 산맥으로 둘러싸인 계곡형으로 전주 시민들의 낚시터이자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음
 - 저수지 형태가 인삼을 거꾸로 세워 놓은 듯이 두갈래로 나누어져 있으며, 하류쪽은 들쭉날쭉하게 생겨 굴곡이 심함

[그림 2-25] 1960년대 경천저수지



자료: 만경강포럼(2016), 만경강의 역사자원

[그림 2-26] 2000년대 경천저수지



자료:미디어로그(지역로그), 완주군의 소소한 일상

19) 만경강포럼 3차(2016), 전(고대)·근대의 만경강 역사자원

20) 미디어로그(지역로그), 완주군에 살고있는 완주군의 소소한 일상이야기(경천저수지)

[표 2-8] 만경강 유역 근대적 농업용 저수지 현황

구분	건립시기 · 연도	수혜면적(ha)	소재지
대아저수지	1922년	8,382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옥구저수지	1923년	2,260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능제저수지	1930년	178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왕궁저수지	1931년	540.6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경천저수지	1937년	7,738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자료 : 네이버지식백과,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포털서비스, 농어촌알리미)

3) 문화관광

(1) 문화자원

① 문화재

- 전라북도는 국가지정문화재 204점, 지방지정문화재 482점, 등록문화재 60점으로 총 881점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음
 - 만경강유역 5개 시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74점, 지방지정문화재 196점, 등록문화재 35점으로 총 345점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으며, 전라북도 전체 대비 39.2%를 차지함
 - 특히 국가지정문화재중 국보는 전라북도 전체 9점 중 만경강유역이 7점으로 약 77.8%로 전라북도 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만경강유역 시군별 국가지정문화재는 익산시 23점으로 가장 많고, 군산시가 5점으로 가장 적음
 - 군산시 23점, 김제시 19점, 전주시 16점, 완주군 11점, 군산시 5점 순으로 나타남

[표 2-9]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단위 : 점)

시군	계	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 문화재	중요무형 문화재
전라북도	204	9	98	41	32	13	11
전주시	16	2	6	4	1	1	2
군산시	5	0	3	0	2	0	0
익산시	23	3	10	7	1	0	2
김제시	19	1	13	3	2	0	0
완주군	11	1	8	1	-	-	1

자료 : 전라북도통계시스템, 문화재(2017년 기준)

(2) 대표축제²¹⁾

- 축제는 전주시가 9개로 제일 많고, 군산시, 익산시가 각 3개, 김제시, 완주군이 각 4개로 만경강유역 내 지자체에서 총 23개의 축제가 해마다 개최되고 있음

21) 전북연구원(2017), 완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2017~2026년)

[표 2-10] 2019년 사·군 축제 현황

구분	축제명	축제기간
전주시 (9개)	홍도	4.19 ~ 12.07
	전주국제영화제	5.02 ~ 5.11
	전주한지문화축제	5.04 ~ 5.06
	왕과의산책	5.04 ~ 10.26
	전주문화재야행	5.25 ~ 9.22
	전주단오제	6.07 ~ 6.08
	전주대사슴놀이 전국대회	6.07 ~ 6.10
	전주세계소리축제	10.02 ~ 10.06
	전주비빔밥축제	10.09 ~ 10.12
군산시 (3개)	군산콩당보리축제	5.03 ~ 5.06
	군산시간여행축제	9.14 ~ 9.16
	군산-서천 금강철새여행	11.16 ~ 11.18
익산시 (3개)	익산보석대축제	4.03 ~ 4.14
	익산서동축제	5.03 ~ 5.06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	10.25 ~ 11.04
김제시 (4개)	김제모악산축제	4.05 ~ 4.07
	김제추억의보리축제	5.04 ~ 5.06
	하소백련축제	7.13 ~ 7.22
	김제지평선축제	9.27 ~ 10.06
완주군(4개)	삼례딸기축제	3.29 ~ 3.31
	완주프리포즈축제	5.25 ~ 5.26
	완주와일드푸드축제	10.05 ~ 10.07
	완주꽃감축제	12.14 ~ 12.16

자료 : 전라북도도탈관광시스템(2019), 여행정보(문화·축제)

(3) 관광현황

① 관광지²²⁾

- 2018년 전라북도 관광지는 총 21개소이며, 이중 군산시 2개소, 익산시 4개소, 김제시 2개소, 완주군 1개소로 만경강유역 5개 시군의 관광지는 9개소임
- 주요자원으로는 금강하구둑, 미륵사지, 벽골민속촌, 모악산도립공원 등이 있음

[표 2-11] 2017 관광지 현황

(단위 : km²)

시군	이름	최초지정	최초계획승인	규모	주요자원
군산시	금강호	1992.7.16	1992.11.24	0.648	금강하구둑
	은파	1985.8.26	1985.12.7	1.764	저수지, 은적사, 패총
익산시	금마	1990.12.27	1990.12.27	0.209	미륵사지, 왕궁5층석탑
	미륵사지	2006.2.22	2007.12.4	0.109	미륵사지, 왕궁5층석탑
	왕궁보석테마	2001.7.2	2001.7.2	0.160	미륵사지, 왕궁5층석탑
	웅포	1999.10.11	1999.10.11	2.576	마리나, 피크닉장, 송림사
김제시	김제온천	1997.1.20	2014.8.29	0.533	온천, 김제평야, 벽골제
	벽골제	2009.2.26	2009.2.26	0.189	벽골민속촌
완주군	모악산	1994.12.12	1995.5.6	0.150	모악산도립공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2017년 기준)

② 관광객²³⁾

- 2016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전북연구원 2017)에 따르면 만경강유역 5개 시군의 관광객 평균 남녀성비는 여자가 52.5%, 남자 47.5%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인구로는 40대가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5개 시군의 연령별 관광객 중 30대~50대 관광객이 68.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22)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12월 31일 기준

23) 전북연구원(2017),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2016년 기준)

- 전주시의 경우 20대가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0대가 27.3%로 타 시군에 비해 청년층 관광객이 높게 나타남
- 만경강유역 5개 시군의 도외 거주 관광객은 62.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도내 거주 관광객은 37.2%에 불과함
- 전주시, 군산시는 도외 거주 관광객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김제시의 경우 도내 거주 관광객이 69.3%로 도외 거주 관광객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표 2-12] 2016 전라북도 관광객 현황

(단위 : %)

구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성별	남자	42.7	48.5	53.2	48.0	45.2
	여자	57.3	51.5	46.8	52.0	54.8
연령	10대	6.6	7.0	1.4	2.3	2.7
	20대	39.5	15.0	9.1	9.3	5.5
	30대	27.3	17.5	29.1	18.3	19.3
	40대	13.4	29.5	31.4	25.1	30.5
	50대	8.4	19.7	20.5	28.5	23.9
	60대 이상	4.8	11.3	8.6	16.5	18.2
거주지역	도내	17.7	18.6	31.8	69.3	48.4
	도외	82.3	81.4	68.2	30.7	51.6

자료 : 전북연구원(2017), 2016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

3

장

만경강 하천환경 및 주민의식조사

Jeonbuk Institute

-
1. 만경강 하천환경 및 시설
 2. 만경강유역 주민의식
 3. 주요 추진사업
 4. 정책적 시사점

제 3 장 만경강 하천환경 및 주민의식조사

1. 만경강 하천환경 및 시설

1)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 하천의 이용과 하천환경 및 생태계 보전뿐만 아닌 만경강 유역권의 공동발전을 이루기 위해 연계협력의 기본방향과 주요사업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만경강의 제외지와 제내지의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요구됨
- 본 조사는 만경강의 분류 구간 중 일부 구간을 선정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하여 하천의 이용실태와 환경 생태적 특성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2) 조사 내용

- 주요 현지조사 대상은 친수시설, 생태경관자원, 접근체계, 편의시설, 하천시설, 하천관련 역사문화자원 등으로 구분됨
- 친수시설에는 세부적으로 하천 내 산책로, 자전거도로, 제방도로, 수변공원 및 체육시설의 조성 실태와 이용객 현황 등을 들 수 있음
- 생태경관자원에는 하천자연습지, 식생자원, 경관자원 등으로 추후 하천의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바탕으로 하천 체험과 여행 등을 통한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사항을 조사함
- 접근체계의 경우에는 크게 하천접근체계와 수변접근체계로 구분되며 하천접근 체계는 하천과 인접한 농지와 주거지, 도로 등과 하천제방도로간의 접속로 유무와 형태에 대한 조사임
- 이와 달리 수변접근체계는 제방도로로부터 하천 고수부지에 조성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유수부까지의 접근로 유무와 형태에 대한 조사임

[표 3-1] 만경강 하천환경과 시설 조사 대상

구 분	조 사 대 상	비고
친수시설	산책로, 자전거도로, 제방도로, 공원, 체육시설	
생태경관자원	하천자연습지, 특이식생자원, 경관자원(포인트, 시설)	
접근체계	하천접근로, 수변접근로	
편의시설	화장실, 휴게실, 전망데크 등	
하천시설	배수시설, 취수시설, 보	
역사문화자원	하천주변지역 역사문화유적, 설화 등	
환경훼손실태	쓰레기투기, 불법낙시행위, 소각세차 등 불법행위	
이용실태	이용객수, 제방도로 교통량	주중주말

2) 조사 방법

(1) 조사 준비

○ 현장조사도면 제작

- 만경강 본류 전체 구간을 10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위성사진을 배경으로 현장조사도면 제작

○ 현장조사야장 제작

색인번호	시설유형	현황 조사 내용	시설코드번호
예시) 01	자전거길	단절 구간, 교통사고 위험 구간	B01 : Bike 01 R:도로, T:화장실 W:쓰레기, F:보도

(2) 조사 실시

- 만경강 본류 구간을 전주천 합류지점 기준으로 만경강 상류구간과 하류구간으로 하천 공간 구분하여 실시
 - 하천의 흐름방향을 기준으로 좌측을 좌안, 우측을 우안으로 구분하여 조사 진행
- 세부조사와 개략조사 구간을 구분하여 세부조사는 색인도 07과 08구간의 우안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개략조사를 실시

(3) 조사 방식

- 세부조사는 일부구간을 대상으로 [표 3-1]의 조사대상 및 내용에 대해서 위치 또는 구간을 도면에 표시하고 시설과 현황에 대해서 현장조사야장에 상세히 기입
- 개략조사는 하천환경에 대해서 특이사항만을 조사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구간별 설치 유무와 연결성 등에 한정하여 조사하되 시설이 단절구간이나 현재 상태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조사하여 야장에 기입

3) 조사 결과

(1) 세부조사 결과

- 세부조사 구간은 전주천합류부~회포대교구간과 회포대교~봉동교구간이며 아래 표와 같이 구간에 위치한 시설과 하천환경에 대한 현황과 특이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함
- [표 3-2]에 제시된 전주천합류부~회포대교구간과 구간의 세부조사결과, 산책로의 자전거와 보행 분리여부, 포장상태, 하천과 수변 접근체계, 시설상태 등으로 보아 비교적 하천시설과 접근체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천의 식생도 우수하여 경관자원으로 탐방객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표 3-3]에 제시된 회포대교~봉동교구간구간의 조사결과,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고 제방도로를 통해 도보와 자전거, 차량이 혼용하는 방식으로 탐방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농지와 마을로부터 하천제방까지 하천접근로가 대부분 비포장으로 농지와 마을로부터 하천접근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 구간에서 수변접근로가 미설치되어 수변접근체계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회포대교 난간에 연결계단을 설치하여 제방도로와 연결함으로써 탐방객을 상하류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자전거 이용객은 큰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임
 - 만경강 고수부지 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분절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전 구간을 상하류 방향으로 연속성 있게 연결함으로써 만경강 탐방에 있어 전 구간을 완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탐방의 성취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표 3-2] 전주천합류부~회포대교 구간 세부조사결과

시설유형	현황 조사 내용	유형+위치코드
자전거+산책로	보차(자전거+산책로) 분리 형식	BF01
교량	사장교,연속교 혼합형식, 경관교량	BR01
제방도로	전주시→만경강 제방도로 병목구간(2차선→1차선)	R01
미산배수펌프장	합류부 배수펌프장(기존) + 추가시설 공사중	F01
산책로	자전거+도로 혼합도로, 단순 콘크리트 포장(시점)	BF02
자연습지	전주천 합류부 만경강 유수부 자연습지 건강성 양호	D01
제방도로	1차선 아스콘 포장도로(시점)	R02
수변접근로	제방도로→고수부지 산책로(비포장)	A01
하천접근로	우회도로(국도)→제방도로 연결 램프	A02
수변접근로	제방도로→고수부지 산책로 연결(비포장)	A03
하리교언더패스	하리교 신설교량(연속교), 언더패스 2차선 포장 도로	BR02
제방도로 종점	1차선 제방도로 종점·시점(교행가능)	R03
하천접근로	교량과 제방도로 접속부(접근로 차단)	A04
하천접근로	마을 → 우회도로(언더패스) 제방도로 연결 램프(2차선 포장)	A05
하천접근로	마을 → 우회도로(지하박스 H=4.3m) → 제방도로 연결램프	A06
수변접근로	제방도로 → 산책로 → 수변(비포장)	A07
수변접근로	제방도로 → 산책로(폐쇄)	A08
하천접근로	마을 → 우회도로(지하박스 H=2.3m) → 제방도로(1차선 포장,제초필요)	A09
수변접근로	제방도로 → 산책로(폐쇄), 쓰레기 투기	A10, W01
하천접근로	마을 → 우회도로(지하박스 H=4.3m) → 제방도로, 차량통행가능	A11
제방도로 종점	교행가능	R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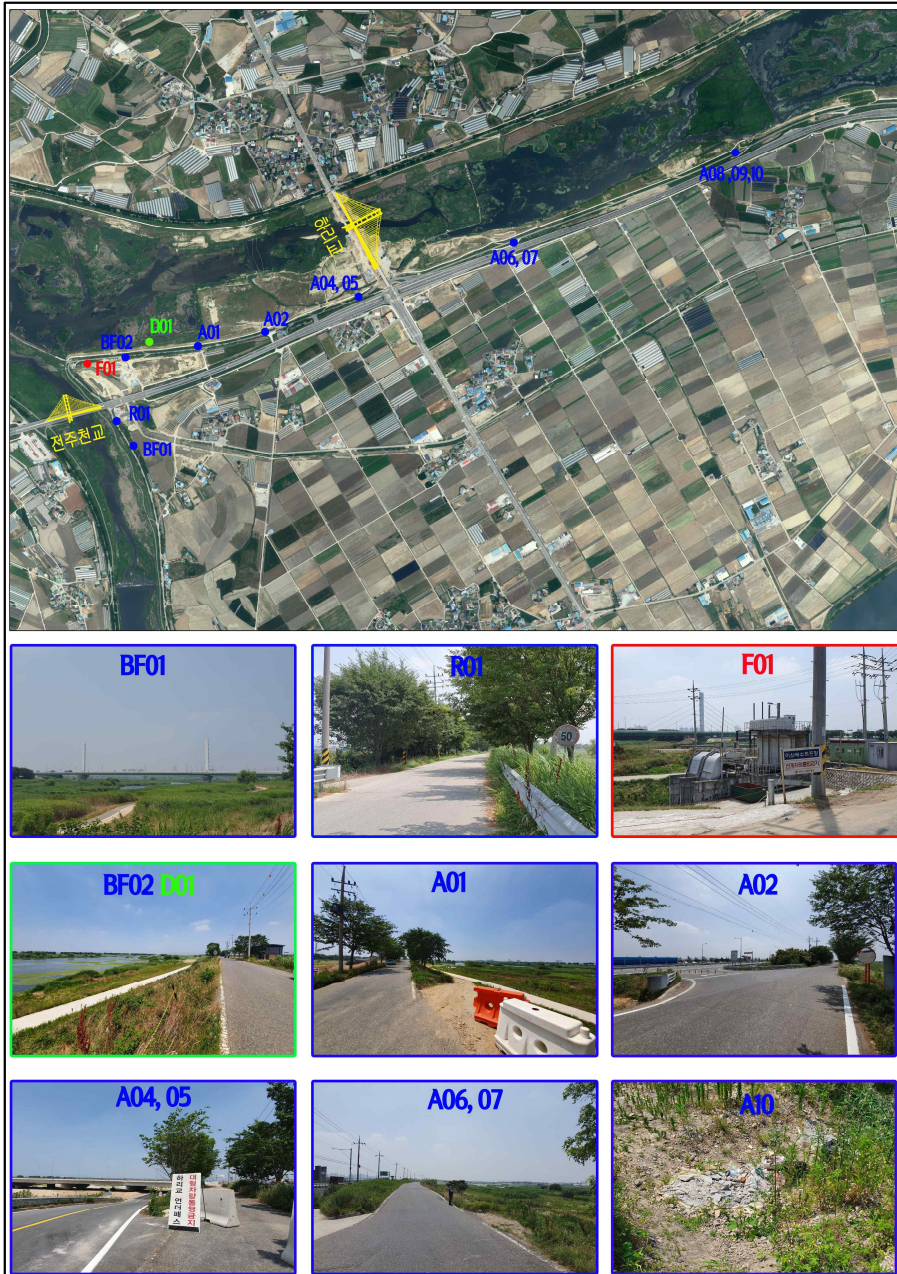
[표 3-3] 회포대교-봉동교구간 세부조사결과

시설유형	현황 조사 내용	유형+위치코드
수변접근로	제방도로 → 산책로(비포장)	A01
회포대교	연속교(4차선) + 보도(양편)	BR01
하천접근로(회포대교)	우회도로(국도) → 제방도로, 2차선 포장	A02
언더패스	2차선 포장도로, 차량교통로	R01
제방도로(종점)	1차선 포장도로(교통기능) → 본류 좌안 제방도로 종점(산책로 종점)	R00
소양천 합류부	제방도로 미접속구간(산책로 포함) → 회포대교 활용 / 산책로 연결사업 추진	P01
소양천 제방도로	2차선 포장도로(좌안)	R02
소양천 전망데크	(소양천 우안) "소양천을 따라 떠나는 판소리기행" 스토리텔링	F01
소양천 우회도로 교량	연속교 + 곡선교량 : 경관교량 사업 추진	BR02
본류좌안+소양천우안 접속부	제방도로 1차선 포장 (관리 양호)	P02
회포대교 연결계단	회포대교 중간지점 → 본류 제방도로 연결	F02
회포습지	자연하천습지, 경관자원화 및 전망 데크 설치사업 추진 필요	-
산책길 미연결 구간	하천 고수부지 산책길 미설치(고수부지 협소구간) : 제방도로 이용 법면형 인도교 설치 필요	P03
고산천교(익산-장수)	연속교 : 경관 교량사업 검토	BR03
고산천교 언더패스	1차로 비포장도로 (연장 50m)	-
야생화 군락	제방도로 따라 약 500m 구간 (고수부지 내) ※만경강 하천자원 및 시설 조사사업 추진	P04
하천접근로	마을 → 농지 → 제방도로 (비포장) 연결도로 비포장	A01, 02, 03
하천접근로	마을 → 제방도로(비포장)	A04
수변접근로	제방도로 → 고수부지(비포장)	A05 ~ 09
하천습지	자연하천습지 경관 양호, 건강성 우수 : 생태경관자원화	P05
하천접근로	마을 → 제방도로(비포장)	A10 ~ 12
하천접근로	마을 → 제방도로 포장도로(1차선)	A13 ~ 15
수변+하천접근로	수변 비포장, 하천접근로 포장(농지-제방도로)	A16 ~ 18
봉동교(마그네다리)	연속교 보도구간(양측) : 경관교량 추진	BR04
하천접근로	농지 → 제방도로(비포장)	A19
산책로 단절구간	회포대교 ↔ 봉동교 산책로 막싱구간, 제방도로 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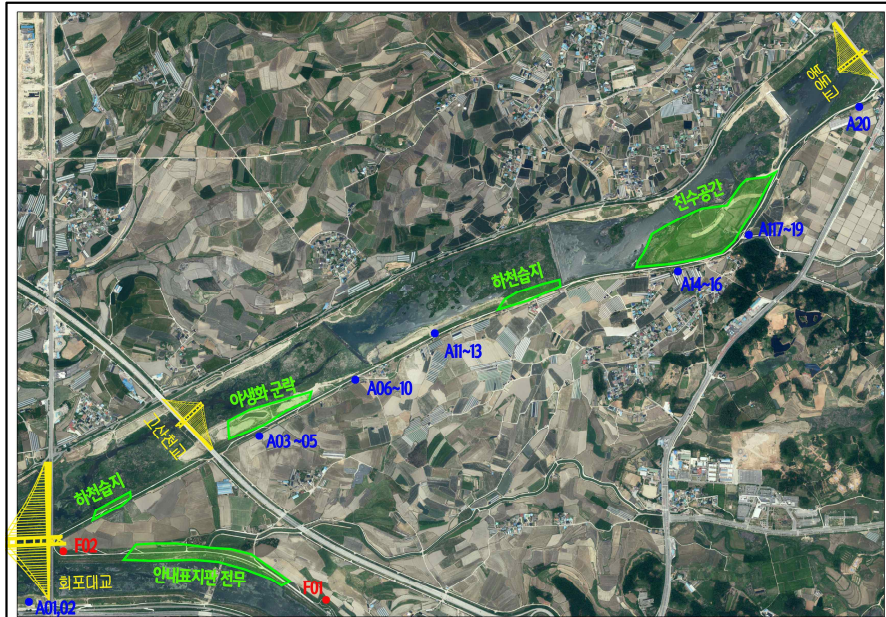
(2) 개략조사 결과

- 봉동교를 기점으로 고산 방향의 상류구간(우안) 전체와 본류 종점에서 삼례교까지 좌안부를 개략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
 - 상류부로 갈수록 산책로와 제방도로 미개설 및 단절구간이 많아지고 산책로와 제방도로가 분리되지 않아 탐방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음
 - 마찬가지로 상류구간으로 갈수록 하천접근로와 수변접근로가 정비되지 않아 주민의 하천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친수활동을 저감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 상류구간의 우안은 산비탈과 연결된 구간이 많아 좌안에 비해 산책로와 제방도로 단절구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지형적 특성을 보여 이런 단절구간을 대상으로 법면 확장형 인도교 등을 설치사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만경강 중상류 구간은 우안에 비해서 좌안에 마을간 교통로로 활용되는 제방도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도보와 자전거 탐방로는 우안을 중심으로 상하류구간을 연결하고 교량을 활용하여 연결 인도교를 설치하여 좌우안의 시설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림 3-1] 주요 조사 지점 현황



[그림 3-2] 주요 하천경관 및 친수시설 현황



만경강 유역 친수공간



만경강 유역 수변접근로 및 관련시설



4)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친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으로 [표3-4]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산책로와 자전거길의 경우에 보차 미분리, 포장재질, 단절구간, 좌우안 미연결 등이 문제로 도출됨
 - 자치단체의 경계부와 지류하천의 합류부 등에서 하천시설이 단절 또는 미연결되어 있어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만경강 전 구간을 완주하고자하는 탐방수요 미충족
 - 개선방향으로는 산책로와 혼용가능한 2차선 자전거도로 조성, 단절구간의 확장 인도교 설치, 좌우안 미연결구간 교량확장, 인도교 설치 등의 개선방향 도출
- 제방도로의 경우 산책로와 차도 혼용구간, 교행불가능 차량통행 제방도로, 비포장, 일반도로 접속지점 교통사고 위험 문제가 도출됨
 - 개선방안으로 차량통행구간 제방도로 확장, 일반도로 접속지점 진출입부 확보, 언더 패스 구간 보차분리 시공 등이 필요
- 수변공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접근로 부족, 이용률 저조, 체육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 도출
 - 개선방안으로 접근로 추가확보, 이용 홍보 강화, 체육시설 확충 등이 요구됨

[표 3-4] 하천 친수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산책로와 자전거길	• 산책로와 자전거길 미 분리 • 전 구간에 걸쳐 대부분 단순 콘크리트 포장면으로 구성 • 하천 횡단 주요도로의 교량 구간에서 미연결구간과 단절구간 발생 • 지천 합류구간에서 대부분 산책로와 자전거길 단절 상태 • 좌안과 우안의 산책로와 자전거길 연결 상태 미흡	• 산책로와 혼용 가능한 2차선 자전거길 조성 • 소프트한 재질로 포장 재질 변경 • 횡단교량구간 좌우안 연결 교량 확장 인도교 설치 • 단절구간(산비탈면 및 고수부지협소 구간)의 확장 인도교 설치 • 지천 합류부 징검다리 또는 교량형 인도교 설치
제방도로	• 산책로와 차도로 혼용구간 발생 • 교행 불가능 제방도로 • 비포장 제방도로 • 제방도로와 일반도로의 접속지점 교통사고 위험	• 차량교통구간 제방도로 확포장 • 일반도로 접속지점 진출입부 안전시설 설치 • 비포장 제방도로 포장사업 • 교량 언더패스 차로구간 보차분리 시공
수변공원 및 체육시설	• 수변공원에 대한 접근로 부족 • 수변공원 이용률 저조 • 강변 체육시설 부족	• 수변공원 접근로 추가 확보 • 강변체육시설 확충 • 수변공원 이용 홍보 및 편의시설 확충

○ 친수시설의 확충 및 시설개선 사업 추진 시 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관련 사업을 만경강유역협의회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하천환경정비 사업은 지역의 인구규모나 인구구성에 따른 적절한 시설규모와 생활 동선에 적합한 시설을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이گی 주의를 개입될 소지가 있어 협의회를 통해 지역 간의 마찰을 최소화해야 함

[그림 3-3] 좌우안 연결 교량확장 인도교 설치 공법

구분	비교1안 강재 캔틸레버 확장 공법 (신승이앤씨)	비교2안 알루미늄 캔틸레버 확장 공법 (K 시)	비교3안 강재 캔틸레버 확장 공법 (A 시)
단면도			
주요구성	- 고강도 용접구조물 압연강재 사용 (SM490) - 주거터 허용응력 : 190MPa - 충분한 횡강성(탄성계수 210,000MPa)을 갖는 부재를 사용함으로써 진동 및 처짐에 유리 - 용접구조용 강재(SM490)를 사용하여 용접부 안전성 확보 - 도로교 설계기준 만족	- 고강도 알루미늄합금 사용 (AC7A) - 주거터 허용응력 : 30.3MPa - 구조물 경량화를 위해 횡강성이 적은 얇은 부재(탄성계수 70,000MPa)를 사용함으로써 처짐 및 진동에 불리 - 알루미늄 브래킷과 알루미늄 필링을 다수의 볼트로 연결하여 안전성 확보 - 도로교 설계기준 허용응력 기준치 없음 - AC7A 허용응력 산정 기준 지적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사용 (SS400) - 주거터 허용응력 : 140MPa - 충분한 횡강성(탄성계수 210,000MPa)을 갖는 부재를 사용함으로써 진동 및 처짐에 유리 - 압연구조용 강재(SS400)를 사용하여 용접부 안전성 불리
바닥면	- 합성목재 사용 (KS계열) - 배타판 인장응력 : 21MPa - KS기준 적용으로 안전성 확보	- 합성목재 사용 (KS계열) - 배타판 인장응력 : 21MPa - KS기준 적용으로 안전성 확보	- 마사토 포장 (BK계열) - 배타판 인장응력 : 4.5MPa - 배타판의 강성이 약해 진동 및 처짐에 불리하고 동결 융해에 따른 마사토 포장 표면파괴 현상 발생 우려
마감면	- EGI 절판 + 분체도장 - 신축이음 설치	- 알루미늄 판재 - 신축이음 없음	- 없음 - 신축이음 없음
조달 규격	캔틸레버확장 B=2.250m (내폭 B=2.000m)	캔틸레버확장 B=2.500m (내폭 B=1.800m)	캔틸레버확장 B=2.500m (내폭 B=2.250m)
조달 단가	144 만원/m	156 만원/m	134 만원/m

[그림 3-4] 지천 합류부 T-TYPE 교량형 인도교 설치 공법

구분	비교 1안 (T-type 거더 공법)	비교 2안 (TPS 바이크웨이 공법)	비교 3안 (바이크로드 공법)
단면도			
포장	합성목재 포장	합성목재 포장	세라믹 포장
공법상부	단일강관으로 종방향 보를 구성하고 공강제거된 브래킷과 강선설치	상부주형 받침 거치한 후 슬래브 타설 및 강선설치	활방한 강제거터 거치한 후 종방향 빔설치
공법하부	- 단일 강관말단 전중, 삽입 후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로 교각부 형성, 파일간격 12m - 단일 말목기조로 유수흐름원활	- 강관말단 2열 전중, 삽입 후 활방을 설치하여 교각부 형성, 파일간격 10m - 강관말단 2열 배치로 유수감속의 결함 등에 따른 유수입이 증가하여 활방한 거둬의 불안정성 증가 2열말단 시공 및 슬래브 현장타설 등으로 공기저연	- 단일 PHC 말목 전중, 삽입 후 활방한 브래킷 설치로 교각부 형성, 파일간격 7m - 단일 말목기조로 유수흐름원활
장단점	- 단일말단 시공 및 부재 공강제거적으로 공기단축 및 시공성 용이 - 강관파일 및 거더, 브래킷 사용으로 소형장비 사용 - 구성부재별 신축장치 설치로 장기안정성 확보 - 강재 재질의 파일 및 거더 적용으로 미관 우수 - 용융연도금 처리로 부식방지 및 유지관리비용 감소	- 강관말단 및 강제거터 사용으로 소형장비 사용 - 구성부재별 신축장치 미설치로 장기안정성 불리 - 강관파일 2열 및 콘크리트 슬래브 노출로 미관 불리 - 부식방지 추가 도장 필요 및 유지관리비용 증가	- 단일말단 시공 및 부재 공강제거적으로 공기단축 및 시공성 용이 - PHC 파일 시공시 및 거더 처짐 대항장비 사용필요 - 구성부재별 신축장치 미설치로 장기안정성 불리 - 콘크리트 재질의 파일 및 거더 적용으로 미관 불리 - 부식방지 시설 필요 및 유지관리비용 증가
작공비	B=3.0m, 120만원/m ² (난간별도)	B=3.0m, 155만원/m ² (난간별도)	B=3.0m, 165만원/인원/m ² (난간별도)

2. 만경강유역 주민의식

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만경강유역 주민 및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만경강유역 현안 및 정책수요 파악
 - 만경강에 대한 애착심, 주민생활과 연관성, 유역권내 동질성 등 주민 인식조사
 - 지역주민 숙원사업, 사업유형 및 범위, 만경강 수변이용의 불편사항 등 만경강을 활용한 연계협력 방향 파악

(2) 조사대상

- 조사지역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일원
- 조사단위 : 지역주민(인근주민), 일반시민(공무원 포함)

(3) 조사기간 및 방법

- 본 조사
 - 2019. 4. 22 ~ 4. 26 : 지역주민, 일반시민 (조사원 투입)
 - 2019. 4. 22 ~ 5. 3 : 지자체 공무원 (우편조사)
- 조사방법
 - 임의표집에 의한 자기 기입조사 또는 임의표집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우편조사)

(4)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

- 표본배분

조사대상	모집단수	표본추출	표본수	비고
만경강유역 지역주민	5개 지자체 19세이상 주민	인근주민(국가하천과 1km내외 마을이장)	100	단체 면접조사
		일반시민(공무원포함)	100	일대일 면접조사

- 총 10문항 : 응답자 및 지역주민 특성 제외

조사분야 및 항목수	조사 항목	비고
만경강 관련 인식조사 (5)	·만경강에 대한 애착심, ·만경강 이용 빈도, 접촉방법 ·생활관련성, 유역주민간 유대 또는 동질감	
연계협력관련 의견조사 (5)	·추진사업(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용불편사항, 사업범위설정, 숙원사업 등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만경강에 대한 생각

○ 전체 응답 분석

- 만경강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아한다” 29.5%, “좋아한다” 44.5%로 설문응답자 중 약 74%가 만경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싫어한다” 2.0%, “매우 싫어한다” 0.5%로 부정적인 응답은 2.5%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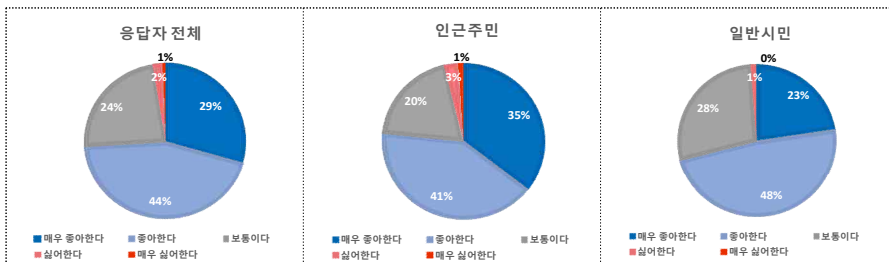
○ 그룹별 응답

- (인근주민) “매우 좋아한다” 35.5%, “좋아한다” 31.1%, “보통이다” 19.6%, “싫어한다” 2.8%, “매우 싫어한다” 0.9%
- (일반시민) “매우 좋아한다” 22.6%, “좋아한다” 48.4%, “보통이다” 28.0%, “싫어한다” 1.1%, “매우 싫어한다” 0.0%

[표 3-5] ‘만경강에 대한 생각’ 설문응답 결과

구분	전체		인근주민		일반시민	
	응답(명)	비중(%)	응답(명)	비중(%)	응답(명)	비중(%)
매우 좋아한다	59	29.5	38	35.5	21	22.6
좋아한다	89	44.5	44	31.1	45	48.4
보통이다	47	23.5	21	19.6	26	28.0
싫어한다	4	2.0	3	2.8	1	1.1
매우 싫어한다	1	0.5	1	0.9	0	0.0
합계	200	100.0	107	100.0	93	100.0

[그림 3-5] ‘만경강에 대한 생각’ 설문응답 결과



(2) 만경강 접촉 방법(2개 이내 중복응답)

○ 전체 응답 분석

- 만경강 접촉 방법에 대한 응답은 “산책 및 수변 체험활동” 49.0% “무심코 지나감” 41.5%, “체육시설 이용” 20.5%, “접할 기회 없음” 11.5%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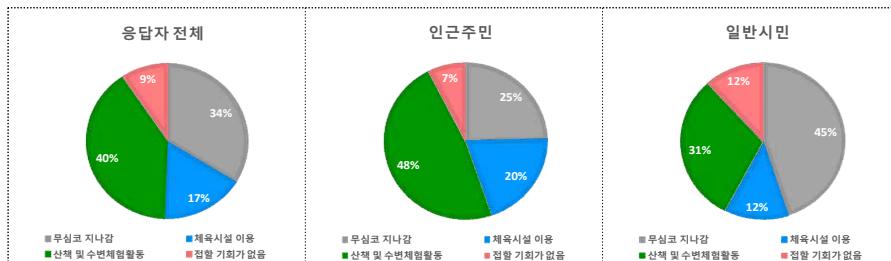
○ 그룹별 응답

- (인근주민) “무심코 지나감” 30.8%, “체육시설 이용” 25.2%, “산책 및 수변 체험활동” 59.8% “접할 기회 없음” 9.3%
- (일반시민) “무심코 지나감” 53.8%, “체육시설 이용” 15.1%, “산책 및 수변 체험활동” 36.6% “접할 기회 없음” 14.0%

[표 3-6] ‘만경강 접촉 방법’ 설문응답 결과

구분	전체		인근주민		일반시민	
	응답(명)	비중(%)	응답(명)	비중(%)	응답(명)	비중(%)
무심코 지나감	83	41.5	33	30.8	50	53.8
체육시설 이용	41	20.5	27	25.2	14	15.1
산책 및 수변 체험활동	98	49.0	64	59.8	34	36.6
접할 기회 없음	23	11.5	10	9.3	13	14.0
합계	245(200)	122.5	134(107)	125.2	111(93)	119.4

[그림 3-6] ‘만경강 접촉 방법’ 설문응답 결과



(3) 산책 및 수변활동, 친수공간 이용과 같은 활동 빈도

○ 전체 응답 분석

- 활동 빈도 설문 결과 “년 1~2회” 21.5%, “월 1~2회” 25.5%, “주 1~2회” 22.5%, “매일” 8.5%, “활동 없음” 22.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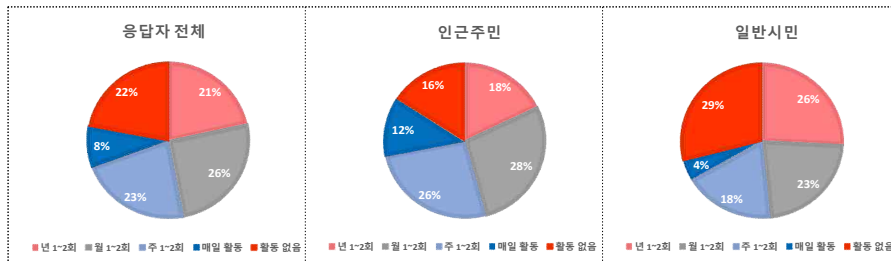
○ 그룹별 응답

- (인근주민) “년 1~2회” 17.8%, “월 1~2회” 28.0%, “주 1~2회” 26.2%, “매일” 12.1%, “활동 없음” 15.9%
- (일반시민) “년 1~2회” 25.8%, “월 1~2회” 22.6%, “주 1~2회” 18.3%, “매일” 4.3%, “활동 없음” 29.0%

[표 3-7] ‘수변활동 빈도’ 설문응답 결과

구분	전체		인근주민		일반시민	
	응답(명)	비중(%)	응답(명)	비중(%)	응답(명)	비중(%)
년 1~2회	43	21.5	19	17.8	24	25.8
월 1~2회	51	25.5	30	22.6	21	22.6
주 1~2회	45	22.5	28	18.3	17	18.3
매일 활동	17	8.5	13	4.3	4	4.3
활동 없음	44	22.0	17	29.0	27	29.0
합계	200	100.0	107	100.0	93	100.0

[그림 3-7] ‘수변활동 빈도’ 설문응답 결과



(4) 지역주민생활 관련성

○ 전체 응답 분석

- 생활관련성 응답에서는 “생태·환경적 측면” 42.7%, “각종 용수공급 측면” 21.1%, “정서 및 심리적 측면” 18.1%, “활동공간 제공 측면” 10.1%, “주민생활과 관계없음” 8.0% 순으로 나타남

○ 그룹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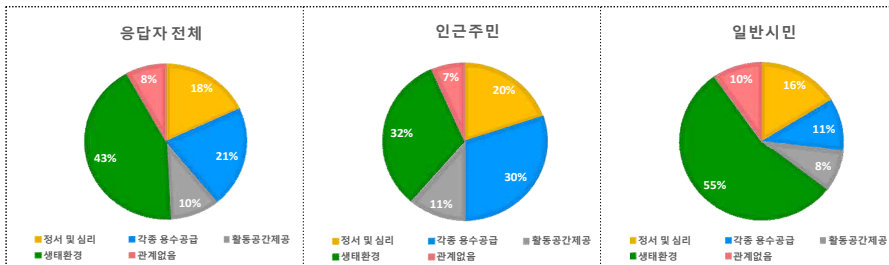
- (인근주민) “정서 및 심리적 측면” 19.8%, “각종 용수공급 측면” 30.2%, “활동공간 제공 측면” 11.3%, “생태·환경적 측면” 32.1%, “주민생활과 관련없음” 6.6%

- (일반시민) “정서 및 심리적 측면” 16.1%, “각종 용수공급 측면” 10.8%, “활동공간 제공 측면” 8.6%, “생태·환경적 측면” 54.8%, “주민생활과 관련없음” 9.7%

[표 3-8] ‘지역주민생활 관련성’ 설문응답 결과

구분	전체		인근주민		일반시민	
	응답(명)	비중(%)	응답(명)	비중(%)	응답(명)	비중(%)
정서 및 심리적 측면	36	18.1	21	19.8	15	16.1
각종 용수공급 측면	42	21.1	32	30.2	10	10.8
활동공간제공 측면	20	10.1	12	11.3	8	8.6
생태·환경적 측면	85	42.7	34	32.1	51	54.8
주민생활과 관련없음	16	8.0	7	6.6	9	9.7
합계	199	100.0	106	100.0	93	100.0

[그림 3-8] ‘지역주민생활 관련성’ 설문응답 결과



(5) 5개 시군 주민들 간 만경강을 매개로한 동질감 또는 유대감

○ 전체 응답 분석

- 만경강을 매개로한 동질감이나 유대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18.0%, “그렇다” 32.0%, “보통이다” 29.5%, “그렇지않다” 17.0%, “매우 그렇지않다” 3.5%로 긍정적인 반응이 약 50%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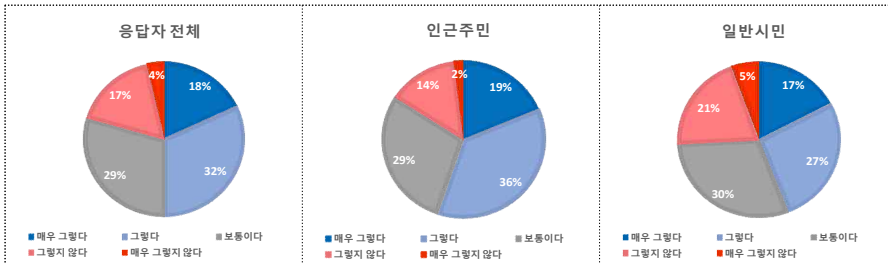
○ 그룹별 응답

- (인근주민) “매우 그렇다” 18.7%, “그렇다” 36.4%, “보통이다” 29.0%, “그렇지 않다” 14.0%, “매우 그렇지 않다” 1.9%
- (일반시민) “매우 그렇다” 17.2%, “그렇다” 26.9%, “보통이다” 30.1%, “그렇지 않다” 20.4%, “매우 그렇지 않다” 5.4%

[표 3-9] '만경강 유역의 동질감 또는 유대감' 설문응답 결과

구분	전체		인근주민		일반시민	
	응답(명)	비중(%)	응답(명)	비중(%)	응답(명)	비중(%)
매우그렇다	36	18.0	20	18.7	16	17.2
그렇다	64	32.0	39	36.4	25	26.9
보통이다	59	29.5	31	29.0	28	30.1
그렇지 않다	34	17.0	15	14.0	19	20.4
매우 그렇지 않다	7	3.5	2	1.9	5	5.4
합계	200	100.0	107	100.0	93	100.0

[그림 3-9] '만경강 유역의 동질감 또는 유대감' 설문응답 결과



(6) 하드웨어 측면 필요 사업

○ 전체 응답 분석

- 만경강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드웨어 측면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1순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사업” 55.5%, “자전거 또는 산책길 정비사업” 16.5%, “하천수량 확보사업” 12.0%, “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 10.5%, “교량가설 및 천변도로 정비사업” 4.5%, “기타” 1.0% 순으로 나타남
- 2순위로는 “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전거 또는 산책길 정비사업” 28.5%, “하천수량 확보사업”, “교량가설 및 천변도로 정비사업” 각각 14.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사업” 11.4%, “기타” 0.5%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에는 “갯벌 복원”, “하천 준설”, “친수공간 및 체육시설 확충” 등이 있음

○ 그룹별 응답

- (인근주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사업” 55.1%, “하천수량 확보사업”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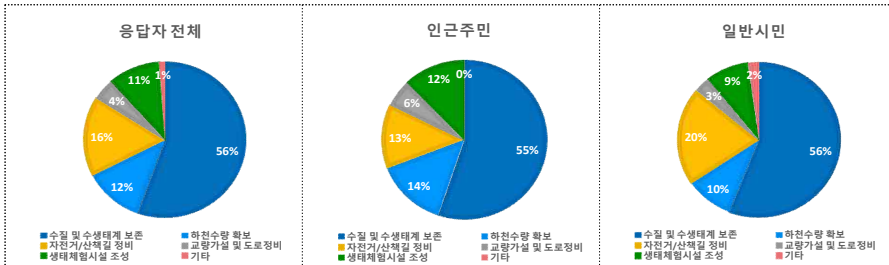
“자전거 또는 산책길 정비사업” 13.1%, “교량가설 및 천변도로 정비사업” 5.6%, “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 12.1%

- (일반시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사업” 55.9%, “하천수량 확보사업” 9.7%, “자전거 또는 산책길 정비사업” 20.4%, “교량가설 및 천변도로 정비사업” 3.2%, “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 8.6%, “기타” 2.2%

[표 3-10] ‘하드웨어 측면 필요 사업’ 설문응답 결과

구분	전체		인근주민		일반시민	
	응답(명)	비중(%)	응답(명)	비중(%)	응답(명)	비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111	55.5	59	55.1	52	55.9
하천수량 확보	24	12.0	15	12.0	9	9.7
자전거 및 산책길 정비	33	16.5	14	16.5	19	20.4
교량가설 및 도로 정비	9	4.5	6	4.5	3	3.2
생태체험시설 조성	21	10.5	13	10.5	8	8.6
기타	2	1.0	0	1.0	2	2.2
합계	200	100.0	107	100.0	93	100.0

[그림 3-10] ‘하드웨어 측면 필요 사업’ 설문응답 결과



(7) 소프트웨어 측면 필요 사업

○ 전체 응답 분석

- 만경강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측면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1순위로 “생태·역사 문화해설 양성 및 지원 사업” 37.0%, “천변 백리길 걷기 (마라톤)대회” 25.0%,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사업” 19.5%, “구간별 관광체험안내도 제작” 13.0%, 유소년 대상 ‘고향의 길’ 사업 4.5%, “기타” 2.0% 순으로 나타남
- 2순위로는 “구간별 관광체험안내도 제작” 33.3%,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사업” 21.7%, “생태·역사 문화해설 양성 및 지원 사업” 17.2%, “천변 백리길 걷기(마라

톤)대회” 16.2%, 유소년 대상 ‘고향의 길’ 사업 11.6%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에는 “만경강 자전거 라이딩 대회”가 있음

○ 그룹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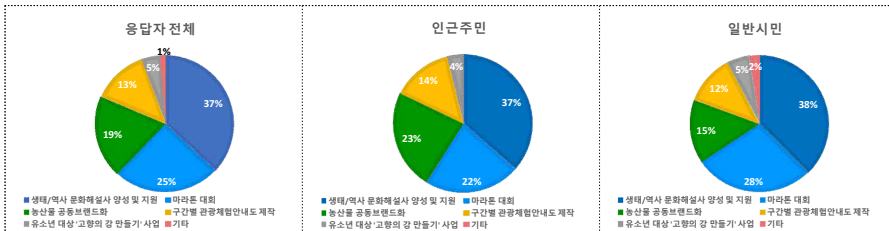
- (인근주민) “생태·역사 문화해설 양성 및 지원 사업 ” 36.4%, “천변 백리길 걷기(마라톤)대회” 22.4%,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사업” 23.4%, “구간별 관광체험안내도 제작” 14.0%, 유소년 대상 ‘고향의 길’ 사업 3.7%

- (일반시민) “생태·역사 문화해설 양성 및 지원 사업 ” 37.6%, “천변 백리길 걷기(마라톤)대회” 28.0%,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사업” 15.1%, “구간별 관광체험안내도 제작” 11.8%, 유소년 대상 ‘고향의 길’ 사업 5.4%, “기타” 2.2%

[표 3-11] ‘소프트웨어 측면 필요 사업’ 설문응답 결과

구분	전체		인근주민		일반시민	
	응답(명)	비중(%)	응답(명)	비중(%)	응답(명)	비중(%)
생태·역사 문화해설사 양성 및 지원 사업	74	37.0	39	36.4	35	37.6
천변 백리길 걷기(마라톤) 대회	50	25.0	24	22.4	26	28.0
농산물 공동 브랜드화	39	19.5	25	23.4	14	15.1
구간별 관광체험안내도 제작	26	13.0	15	14.0	11	11.8
유소년 대상 ‘고향의 길’ 사업	9	4.5	4	3.7	5	5.4
합계	200	100.0	107	100.0	93	100.0

[그림 3-11] ‘소프트웨어 측면 필요 사업’ 설문응답 결과



(8) 만경강 수변과 시설물 이용 시 불편 사항(2개 이내 중복응답)

○ 전체 응답 분석

- 만경강 수변 및 시설물 이용 불편사항에 대한 2개 중복응답 결과는 “휴게 및 편의시

설 부족”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이용안내 부족” 36.2%, “간선도로 등 주변시설물에 의한 연결로 차단” 32.7%, “시설물 유지관리 미흡” 22.6%, “방법 및 안전시설 부족” 19.6%, “기타” 2.5% 순으로 나타남

- “기타”에서는 “낙시꾼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 “접근성 부족”, “주차장 부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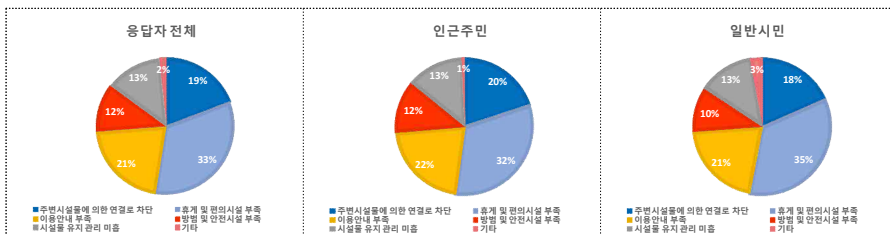
○ 그룹별 응답

- (인근주민) “간선도로 등 주변시설물에 의한 연결로 차단” 34.6%, “휴게 및 편의시설 부족” 56.1%, “이용안내 부족” 37.4%, “방법 및 안전시설 부족” 21.5%, “시설물 유지관리 미흡” 23.4%, “기타” 0.9%
- (일반시민) “간선도로 등 주변시설물에 의한 연결로 차단” 30.4%, “휴게 및 편의시설 부족” 57.6%, “이용안내 부족” 34.8%, “방법 및 안전시설 부족” 17.4%, “시설물 유지관리 미흡” 21.7%, “기타” 4.3%

[표 3-12] ‘수변 이용 시 불편사항’ 설문응답 결과

구분	전체		인근주민		일반시민	
	응답(명)	비중(%)	응답(명)	비중(%)	응답(명)	비중(%)
간선도로 등 주변시설물에 의한 연결로 차단	65	32.7	28	34.6	28	30.4
휴게 및 편의시설 부족	113	56.8	53	56.1	53	57.6
이용안내 부족	72	36.2	32	37.4	32	34.8
방법 및 안전시설 부족	39	19.6	16	21.5	16	17.4
시설물 유지관리 미흡	45	22.6	20	23.4	20	21.7
기타	5	2.5	4	0.9	4	4.3
합계	339	170.4	186	173.8	153	166.3

[그림 3-12] ‘수변 이용 시 불편사항’ 설문응답 결과



(9)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대상 지역범위 설정

○ 전체 응답 분석

- “만경강 유역권 전체” 48.0%, “국가하천 제방으로부터 2km 이내 지역” 25.0%, “국가하천 제방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 18.5%, “하천구역” 8.5%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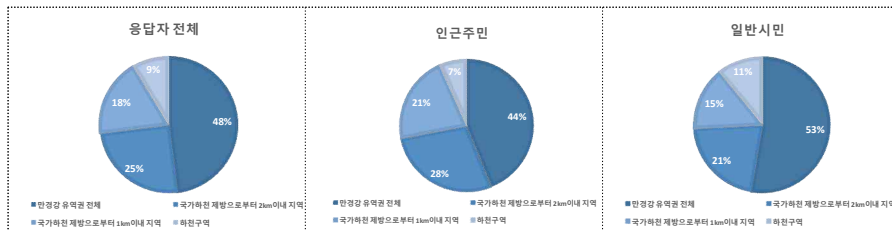
○ 그룹별 응답

- (인근주민) “만경강 유역권 전체” 43.9%, “국가하천 제방으로부터 2km 이내 지역” 28.0%, “국가하천 제방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 21.5%, “하천구역” 6.5%
- (일반시민) “만경강 유역권 전체” 52.7%, “국가하천 제방으로부터 2km 이내 지역” 21.5%, “국가하천 제방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 15.1%, “하천구역” 10.8%

[표 3-13] ‘사업대상 지역범위’ 설문응답 결과

구분	전체		인근주민		일반시민	
	응답(명)	비중(%)	응답(명)	비중(%)	응답(명)	비중(%)
만경강 유역권 전체	96	48.0	47	43.9	49	52.7
국가하천 제방으로부터 2km이내 지역	50	25.0	30	28.0	20	21.5
국가하천 제방으로부터 1km이내 지역	37	18.5	23	21.5	14	15.1
하천구역	17	8.5	7	6.5	10	10.8
합계	200	100.0	107	100.0	93	100.0

[그림 3-13] ‘사업대상 지역범위’ 설문응답 결과



3) 설문종합분석

- 유역 주민들은 만경강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체험탐방 활동을 통해 만경강을 접하고 있음. 하지만 만경강에 대한 직접적인 이용 및 탐방활동이 없는 주민도 상당수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경강에 대해서 직접 접할 수 있는 탐방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만경강에 대한 애착심을 유도하는 다양한 홍보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만경강 탐방활동 빈도가 ‘주 1~2회’와 ‘매일’로 응답한 이용객이 각각 22.5%, 8.5%이며 이를 합산하면 매주 만경강을 방문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매주 방문 빈도가 30%이상이라는 것은 유역주민들에게 만경강은 필수적인 생활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 따라서 만경강은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강이며 주민의 이용률이 높아 이용편익이 매우 큰 하천이며 예산투입을 통해 만경강의 하천시설과 공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하다 할 수 있음
- 만경강유역 주민으로서 동질감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50%이상으로 조사된 것은 만경강유역 주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에 대한 열망이 클 것으로 해석됨
 - 이는 향후 연계협력활동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추진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조사 결과 만경강유역 주민들은 만경강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사업’에 대한 수요(응답률 55.5%)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만경강의 하천수질이 중하류구간에서 2급수 이하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특히, 새만금호의 목표 수질 2급수 이상임에도 만경강 중하류구간의 수질이 2급수 이하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수질악화 및 이에 따른 수생태계의 파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이런 결과는 만경강유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보다 진전된 형태의 연계협력 사항으로 비점오염대책 등 만경강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업무 전체를 공동사무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음

3. 주요 추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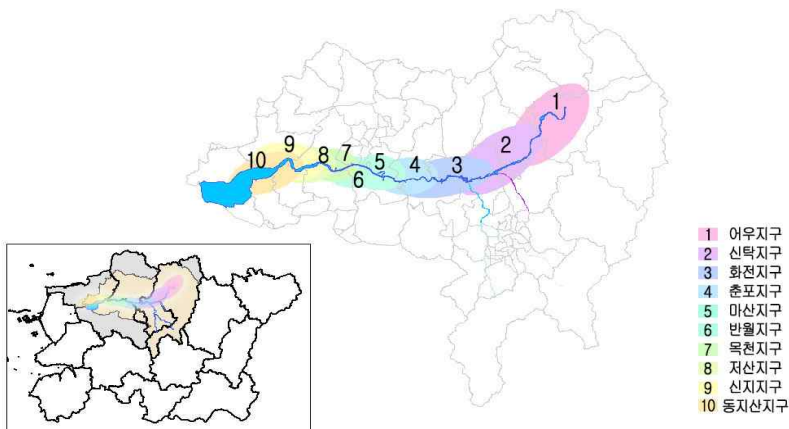
1)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

(1) 10개 지구 사업 현황

- 2015년 저산지구의 하천환경정비사업 종료를 시작으로, 2021년 마산지구 사업 종료를 끝으로 10개 지구의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이 모두 종료 됨
- 사업비 총액은 244,824백만원이며, 자전거길 65.28km, 산책로 13.99km 정비

지 구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물량(km)	
		총사업비	국비	자전거길	산책로
총계		244,824	244,824	65.28	13.99
어우지구	2015~2018	11,800	11,800	3.7	1.56
신타지구	2017~2019	11,296	11,296	11.4	
화전지구	2013~2018	37,815	37,815	13.8	
춘포지구	2012~2016	26,131	26,131	3.72	
마산지구	2016~2021	23,947	23,947	6.45	5.73
반월지구	2015~2020	30,249	30,249	3.84	6.7
목천지구	2013~2016	28,372	28,372	2.56	
저산지구	2012~2015	24,308	24,308	3.05	
신지지구	2013~2016	25,695	25,695	8.16	
동자산지구	2014~2019	25,211	25,211	8.6	

[그림 3-14]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 현황



(2) 지구별 하천환경정비사업

① 어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사업위치 : 완주군 고산면 삼거리 ~ 봉동읍 낙평리

○ 사업내용

- 제방보강 0.27km, 교량1개소, 배수문 1개소
- 하천환경 정비 1식 (자전거길 3.7km, 산책로 1.56km 등)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사업주체	관련실과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2015~2018	11,800	11,800	-	-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② 신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사업위치 : 완주군 봉동읍 장거리 ~ 삼례읍 하리

○ 사업내용

- 제방보강 2.5km
- 하천환경 정비 1식 (자전거길 11.4km, 습지조성 21개소 등)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사업주체	관련실과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2017~2019	11,296	11,296	-	-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③ 화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사업위치 :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 김제시 백구면 마산리

○ 사업내용

- 제방보강 10.44km, 교량1개소
- 하천환경 정비 1식 (자전거길 13.8km 등)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사업주체	관련실과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2013~2018	37,815	37,815	-	-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④ 춘포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사업위치 : 익산시 춘포면 용연리 ~ 석탄동

○ 사업내용

- 축제 3.72km, 하도정비 4.1km, 교량1개소
- 하천환경 정비 1식 (자전거길 3.72km 등)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사업주체	관련실과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2012~2016	26,131	26,131	-	-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⑤ 마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사업위치 : 김제시 백구면 마산리 ~ 백구면 백구리

○ 사업내용

- 축제 6.33km, 제방보강 5.77km
- 하천환경 정비 1식 (자전거길 6.45km. 산책로 5.73km 등)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사업주체	관련실과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2016~2021	23,947	23,947	-	-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⑥ 반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사업위치 :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 백구면 삼정리

○ 사업내용

- 제방보강 3.42km
- 하천환경 정비 1식 (자전거길 3.84km. 산책로 6.7km 등)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사업주체	관련실과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2015~2020	30,249	30,249	-	-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⑦ 목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사업위치 : 익산시 목천동 ~ 오산면 남전리

○ 사업내용

- 하도정비 5.06km
- 하천환경 정비 1식 (자전거길 2.56km 등)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사업주체	관련실과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2013~2016	28,372	28,372	-	-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⑧ 저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사업위치 : 김제시 공덕면 동계리 ~ 공덕면 저산리, 마산리

○ 사업내용

- 제방보강 2.85km, 하도정비 2.79km
- 하천환경 정비 1식 (자전거길 3.05km 등)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사업주체	관련실과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2012~2015	24,308	24,308	-	-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⑨ 신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사업위치 :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 군산시 대야면 북교리

○ 사업내용

- 축제 7.3km, 하도정비 2.79km
- 하천환경 정비 1식 (자전거길 8.16km 등)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사업주체	관련실과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2013~2016	25,695	25,695	-	-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⑩ 동자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사업위치 :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 공덕면 저산리

○ 사업내용

- 축제 0.52km, 제방보강 6.74km
- 하천환경 정비 1식 (자전거길 8.6km 등)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사업주체	관련실과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2014~2019	25,211	25,211	-	-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2) 시군 주요사업 추진현황

(1) 전주시

○ 만경강유역 협의회 실무위원회 건의사항 및 추진(예정) 사업

- 추진(예정)사업 1건, 건의사항 6건으로 '19년 3월 만경강유역 협의회 제2차 실무위원회와 관련, 만경강 하천공간 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제안함
- 친수공간으로 체육시설, 세월교 등 설치 건의

구 분	내 용
추진(예정)사업	삼례교 부근(화전지구) 파크골프장 9홀 추가 조성
건의사항 1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487-23번지(화전지구) - 근린친수지구는 체육시설(야구장) 설치가 어려우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친수거점지구로 변경 요망, 야구장 설치 건의
건의사항 2	전주천 합류구간(화전지구, 신탐지구) -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세월교 등 설치 건의
건의사항 3	하리고 부근(신탐지구) - 근린친수지구는 일부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등) 설치에 제한을 받게 되어 향후 체육공원조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친수거점지구로 변경 요망
건의사항 4	소양천 합류구간(신탐지구) -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세월교 등 설치 건의
건의사항 5	만경강 전 구간(상운지구, 화전지구, 신탐지구) - 자전거도로 등 각종 시설물 및 친수공간 등 유지관리 시설물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증액 건의
건의사항 6	구. 금학보 하류 전주천(국가하천) 구간 -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세월교 등 설치 건의

(2) 군산시

가) 기 추진된 사업

- 사업명 : 만경강 신지지구 유지보수 사업
- 사업위치 : 만경강 신지지구 일원
- 사업기간 : 2017~2018년
- 사업비 : 240백만원('17년: 100백만원, '18년: 140백만원)
- 사업내용 : 예·제초 및 시설물 보수 등

나) 현재 계획중인 사업 또는 향후 추진 가능 사업

- 사업명 : 만경강 신지지구 유지보수 사업
- 사업위치 : 만경강 신지지구 일원
- 사업기간 : 2019. 1~ 12
- 사업비 : 250백만원
- 사업내용 : 예·제초 및 시설물 보수 등

(3) 익산시

가) 기 추진된 사업

- ① 만경강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 사업위치 :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 1177-12일원
- 사업내용 : 재생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사업주체	관련실과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2019년부터 매년	42.5	-	42.5	-	익산시	도로과

② 자전거 라이딩 행사

○ 사업위치 : 익산시 관내

○ 사업내용 : 만경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라이딩행사 추진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사업주체	관련실과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2019년부터 매년	10	-	10	-	익산시	도로과

나) 현재 계획중인 사업 또는 향후 추진 가능 사업

①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 사업위치 : 익산시 관내 자전거도로 일원

○ 사업내용 :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이론 및 실습)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사업주체	관련실과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2019년부터 매년	10	-	10	-	익산시	도로과

②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 추가사업(반영 건의)

○ 사업위치 : 반월·목천지구

○ 사업내용 : 체육시설 4건 (BMX연습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파크골프장 등)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많은바 친환경 휴식공간과 다양한 레저 및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익산시에서 구상한 세부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 반영 건의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사업주체	관련실과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2019년부터	1,949	1,949	-	-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4) 김제시

가) 기 추진된 사업

① 만경강 동지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동지산지구 체육시설(축구장 및 족구장) 및 주차장 조성

위치도



현황사진



위치도



현황사진



위치도



현황사진



나) 주민 민원사항 (만경강 하천 환경사업지구)

구분	민원사항	위치	익산청 의견
만경강 동지산 지구 사업 (10건)			
1	• 동지산지구 하천부지에 파크 골프장(18홀) 요청	청하 동지산	협의중
2	• 동지산리 체육시설 조성(축구장 및 족구장)	청하 동지산	공사완료
3	• 동지산리 체육시설 주차장 조성	청하 동지산	공사완료
4	• 청하면~만경강 제방 포장 보수공사 요청	청하 동지산	협의중
5	• 청하면 축구장 진입 제방 가로등 설치 요청	청하 동지산	협의중
6	• 청하면 새창이 다리 아래 선착장 설치	청하 동지산	불가
7	• 청하면 새창이 다리 주변 정자 설치	청하 동지산	공사완료
8	• 청하면~만경강 구간 제방에 갈대숲 및 벚꽃길 조성	청하 동지산	공사완료
9	• 전망대(만경강 1경) 농로 및 제방 포장(2개소)	만경 화포리	협의중
10	• 전망대(만경강 1경) 화장실 설치	만경 화포리	협의중
만경강 마산 지구 사업 (4건)			
1	• 백구정 마을 하천제방 포장 요청	청하 동지산	협의중
2	• 백구정 마을 진입도로 포장 요청	청하 동지산	불가
3	• 체육시설 및 게이트볼 설치 요청	청하 동지산	협의중
4	• 백구리 마을 하천 제방 모정 증설 요청	청하 동지산	협의중

(5) 완주군

가) 기 추진된 사업 및 포럼

○ 만경강 포럼(1~4회) 개최 :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생태NGO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참여

- 1회 포럼 : 만경강 생태정책 비전 선포식 및 생태포럼
- 2회 포럼 : 만경강 아이디어 파티
- 3회 포럼 : 만경강 역사자원 조명과 가치발견
- 4회 포럼 : 만경강과 생태거버넌스

○ 만경강 주변 완주군 주요사업 추진 현황

구분	사업명	위치	사업개요
문화 관광	삼례 삼색마을 조성 (삼례문화예술촌 3단계)	삼례읍 후정리 247-1 일원	• 2017~2023 / 199억 • 예술인마을, 풍경길(자전거길), 삼색정원 등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용진읍 운곡리 916-4	• 2018~2027 / 554억 *1단계 테니스장 완료 • 테니스장,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어린이공원,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등
	축구메카 완주 + 완주군 야구장 조성	봉동읍 울소리 616번지 야구장 687-1	• 축구메카 완주 : 2016~2019/ 69억 / 축구장 2면 *전북현대 FC+완주군 연계 축구메카 조성 • 완주군 야구장 : 2017~2020 / 42억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고산면 소항리 256	• 2016~2019 / 95억 *놀토피아 인근 •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야외전통무예체험장
도시 재생	봉동 도시재생 뉴딜	봉동읍 장기리 1118-4일원	• 2018~2021 / 166억 • 청년창업임대주택, 만경강로 스포츠지원센터, 만경강 생태습지체험관, 다문화커뮤니티센터 등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삼례읍 삼례리 1408-8	• 2016~2019 / 80억 • 삼례다락방, 청춘공작소, 찻방공원, 생태통로 등
	소양 농촌중심지 활성화	소양면 황운리 839-5	• 2018~2021 / 58억 • 생활문화+커뮤니티활성화센터, 작은역사박물관 등
	고산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고산면 읍내리 957-2	• 2014~2019 / 63억 • 문화광장, 청소년센터, 장터문화거리 등
생태 하천	석탑천 생태하천 복원	삼례읍 후정리 820-3	• 2016~2019 / L=1.1km / 66억원 *비비정샛강복원
	구룡천 생태하천 복원	경천면 경천리 680-86	• 2017~2021 / L=2.5km / 65억원

자료 : 완주군 협조, 만경강(완주군) 주요 현황 및 정책 방향

나) 현재 계획중인 사업 또는 향후 추진 가능 사업

① 만경강유역 완주군 구간 하천공간 관리계획 변경 및 사업추진

○ 고산면 독축골교(우안) ~ 남봉교(우안)

- 지구변경 : 일반보전 → 근린치수

○ 봉동읍 마근보(우안) ~ 봉동교(우안)

- 지구변경 : 완충보전 → 근린치수

○ 삼례읍 하리(우안) 상류

- 지구변경 : 일반보전 → 근린치수

② 만경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

- (Bottom-up 방식 생태정책 수립) 만경강 포럼 주도 만경강 마스터 플랜 수립
- (찾아오는 만경강) 매력적인 만경강 역사관광자원 + 랜드마크 육성
- (같이가는 만경강) 친수공간 개선 및 연계 프로그램, 주민(공동체)교류 + 축제

③ 만경강 마스터플랜 대응 완주군 타깃사업

- 만경강포럼 제안사업, 15만 자족도시+장기종합발전계획, 국가예산 사업, 미래발전 위원회, 기타 연구요역 및 제안 자료 등

연번	검토대상 사업명	
1	만경강 발원샘 정비	
2	삼봉지구 ~ 군청사 연결도로 : 생태형 교량설치 - 봉동 둔산리 + 삼봉지구 + 복합행정타운 생태연결 도로	15만 원주시
3	만경강 다크투어리즘 관광 테마 개발(쌀수탈 등 근대역사) - 삼례문화예술촌, 대간선수로, 대아댐, 동학혁명 등 연계	미래발전위
4	삼례 상생공원 연계 '비비정(비비낙안) 전망타워 조성'	공약
5	만경강 수난구조 훈련센터 : 대아댐 주변 청소년 수상복합레저시설 - 놀토피아, 청소년전통체험관 등 연계	국가예산
6	만경강 자전거트레킹 문화탐방네트워크 구축 - 자전거 트레킹 스테이션 + 테마역(삼례역), 복합문화레포츠시설 도입 등	만경강 용역
7	농경문화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터지내 일원) - 습지 정원 + 관찰원, 농경문화 체험마을(원구만) + 테마파크	만경강 용역
8	만경강 ~ 새만금 ~ 백제문화권연계 역사하천 뱃길 조성 - 우리군 : 화포나루터 ~ 구하도 복원	만경강 용역
9	삼례역차 및 말문화관련 공간조성(역차모델+로컬푸드 6차산업) - 마문화체험센터(마사회 연계), 비비정일원 승마코스 조성	미래발전위
10	신천습지 생태경관지구 지정	만경강 포럼
11	한국 농업사 박물관 건립(농촌진흥청 연계)	만경강 포럼
12	꼬리명주나비 만경강을 상징하는 생태 브랜드 육성	만경강 포럼
13	만경강 주변 경관과 문화역사이야기를 스토리텔링 + 관광자원화	만경강 포럼
14	대아댐 완공 100주년(2024년) 맞이 근대문화유산 지정 추진	만경강 포럼
15	철새탐방로 설치	만경강 포럼
16	금와습지 활성화 방안 마련	만경강 포럼
17	폐교 활용한 만경강 자연사 박물관 조성	만경강 포럼

연번	검토대상 사업명	
18	만경강 커뮤니티 맵 제작 : 만경강 유역 생태역사문화 등	만경강 포럼
19	만경강 생태 자원 전수 조사 : 생태 NGO 공동 조사	만경강 포럼
20	만경강 시인, 화가 등을 활용한 만경강 스토리텔링 및 홍보	만경강 포럼
21	만경강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캐릭터 상품 개발	만경강 포럼
22	만경강 물수제비 대회	만경강 포럼
23	만경강 들꽃 공예 공동체 육성	만경강 포럼
24	만경꽃 백리길 프로젝트 : 자전거길 활용 꽃길 조성	만경강 포럼
25	만경강 생태숲, 생태마을 + 생태학교(아카데미) 운영	만경강 포럼
26	만경강길 따라 300리 : 만경강의 삶 + 역사 구술자원화	만경강 포럼

자료 : 완주군 협조자료, 만경강 마스터플랜 대응 우리군 타깃사업 검토 대상

[그림 3-15] 만경강 주변 주요사업 추진 현황



4. 정책적 시사점

○ 상하류와 좌우안 간의 탐방연계성 확보

-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탐방시설인 산책로와 자전거길이 단절되어 탐방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파편적 탐방환경은 만경강 탐방 매력도를 떨어뜨려 탐방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탐방객이 편리하게 하천생태체험 및 경관을 조망하면서 만경강을 완주할 수 있도록 만경강 시점과 종점까지의 전 구간을 상하류와 좌우안 구간을 연결하는 연계 환류형 탐방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주민의 만경강 접근성 확보

- 만경강을 따라 국도 및 지방도 등의 간선도로가 건설되어 있어 주거지로부터 하천 공간으로 접근이 차단되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한 하천공간으로 도보 및 자전거를 활용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로 개설 및 정비가 필요함. 특히 사람과 자전거가 주거지로부터 안전하게 하천공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하천전용 접근체계 정비가 필요함
- 하천 내 수변활동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고수부지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로 연결되는 접근로와 유수부까지 연결되어 탐방객이 하천수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접근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이에 수변접근체계 정비가 필요함

○ 안전한 하천탐방환경 조성

- 탐방객들이 안심하고 탐방 및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탐방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탐방로 상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점번호표지와 주요구간 CCTV 설치 등 안전 및 보안시설 설치가 필요함
- 또한, 인근 도로로부터 제방도로나 산책도로 연결되는 접속부에서 교통사고 위험 구간이 확인된 바 제방도로 접속부의 교통 안전시설 설치가 요구됨

○ 탐방편의시설 확충

- 주민설문조사에서 들어난 바와 같이 만경강을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불편한 사항이 '휴게 및 편의시설 부족'이며 현장조사에서도 고수부지와 제방 주변에 설치된 편의 시설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충해야할 시설로서 탐방객들의 휴식을 위한 화장실, 간이매점, 급수대, 쉼터(정자) 등 기본적인 휴게 공간을 시급히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하천구간별 위치특성에 따른 친수시설 확충 필요

- 상류구간은 수질이 좋고 하천의 자연생태환경이 우수하며 주변 산림경관과 어우러진 하천경관이 뛰어나서 탐방 매력도가 높은 장점이 있어 하천체험 및 탐방활동에 관련된 탐방로 및 휴식공간 설치가 적절함
- 하류구간은 고수부지가 넓어 친수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인구밀집지역에 인접하여 배후수요가 많은 측면이 있어 대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함
-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경강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 친수시설 설치사업인 환경정비사업은 하류구간에 집중되어 있고 상류지구는 빈약한 측면이 있음. 특히 봉동교(막으네다리) 지점에서 대아댐 부근까지 구간은 하천의 자연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구간으로 탐방 매력도가 매우 높은 구간이지만 계획된 환경정비사업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탐방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시설환경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봉동교를 기점으로 만경강 좌안의 탐방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이들 구간에 대해서 향후 하천관리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관할 행정기관인 완주군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부족한 탐방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만경강 하천수질 악화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협력방안 모색

- 유역현황에 제시된바와 같이 최근 들어 만경강 본류하천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새만금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새만금호의 목표수질 달성에 적신호를 주고 있음
- 또한, 주민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이 우선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만경강의 수질개선을 통해 수생태계보전을 선택한 것은 만경강의 수질악화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표출한 것을 볼 수 있음
- 따라서 만경강 하천수질 악화의 원인인 오염원 저감을 위한 사업의 성과는 상하류에 위치한 자치단체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만들어 낼 수 있기에 만경강유역협의회를 중심으로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며 이를 협의회의 협력사항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현시점에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더 확대해서 국가의 물관리정책이 수질과 수량을 통합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만경강 유역 내 물수요관리와 상하수도관리 업무를 현재의 행정협의회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될 특별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추진하는 방안도 같이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을 종합하면 만경강 하천 내 친수시설에 대한 재정비와 개선을 추진하는데

있어 여러 자치단체와 하천관리기관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의기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만경강유역협의회가 출범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음

- 향후 만경강유역협의회 차원에서 본 과제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만경강 하천 시설과 자원을 전수조사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시설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 상하류와 좌우안 간의 미연결 또는 단절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 하는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협의회를 통해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장

연계협력 제도 및 사례분석

Jeonbuk Institute

-
1. 관련 법제도 분석
 2. 만경강유역협의회 운영현황
 3. 지자체간 연계협력 운영사례 분석
 4. 지자체간 연계협력 해외사례
 5. 정책적 시사점

제 4 장 연계협력 제도 및 사례분석

1. 관련 법제도 분석

1) 지방자치법

(1) 개 요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치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음
- 하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령으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협력 관련 규정

-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제1장 총칙, 제2조)
- 다음과 같이 현행 「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제4항에서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 불비 상태임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147조)
- 법 제1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 요청이나 사무 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제147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사무의 위탁(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151조)
- 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또는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타 지방자치단체(또는 장)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으며 이를 상급 행정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 또한, 제2항~제5항은 사무위탁 규약의 작성 및 고시, 규약의 내용, 사무위탁 변경 및 보고체계,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와 규칙의 적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151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중 략 -

- 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④ 행정협의회(제8장 제2절, 제152조~제158조)
- 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2조(행정협회의의 구성)부터 제158조(협회의의 규약변경 및 폐지)까지 7개 조항에 걸쳐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련 조항에 따르면 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시도(행정안전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시군구(시도지사)에 따라 보고체계를 달리하고 있음
- 그 밖에 협회의 조직과 규약 사항, 협회사항의 조정, 사무처리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제152조(행정협회의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회의(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중 략 -

제158조(협회의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회의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조합(제8장 제3절, 제159조~제164조)

-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9조(조합의 설립)부터 제164조(규약변경 및 해산)까지 6개 조항에 걸쳐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련 조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시도), 시도지사(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할 수 있음
 - 그 밖에 조합의 조직, 조합회의와 조합장의 권한, 규약 사항, 조합의 지도감독, 규약 변경 및 해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중 략 -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1) 개 요

-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조문은 행정협의회 구성 기준(제95조), 협의회 사무소의 위치(제96조), 협의회 구성 보고(제97조), 회장(제98조), 회의(제99조), 자문위원(제100조), 운영규정(제101조) 등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됨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의 협의회 관련 주요 내용

- (구성기준)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을 위해 필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

- (사무소의 위치) 공동처리 사무비중이 큰 지방자치단체(일명 : 중심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중심지자체장이 협의회 구성 10일 이내 보고(명칭, 가입 지자체명, 목적, 일자, 규약사본)토록 하고 있음
- (회장 및 회의개최) 1인 선임하고, 정기회의(상·하반기) 2회, 필요에 따라 임시회(회장요구) 소집할 수 있음
- (자문위원)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가능
- (이외의 사항) 협의회 운영을 위해 추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수 있음

3) 행정협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 개 요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협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조문은 목적(제1조), 구성(제2조), 회의참석(제3조), 회의(제4조), 협의사항(제5조), 협의사항의 조정(제6조), 실무협의회(제7조), 규약(제8조) 등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됨

(2)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규칙의 주요 내용

- (협의회구성) 수도권협의회(서울, 인천, 경기 필요시 강원 및 충북 포함), 대도시권협의회(광역, 특별자치, 도 및 특별자치), 그 밖의 협의회(시장, 군수, 자치구)에 따라 달리함
- (협의회 회의) 2~3월, 8월~9월 사이 각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 수시회의는 구성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
- (협의사항) 다음 총 9개 사항으로 구성
 -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 도로의 신설 및 개수·보수, 버스노선의 신설·변경 및 폐지
 -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외에 협의회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실무협의회) 지자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함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1) 개 요

-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전부 개정 추진
- 정부 제안입법으로 2019년 3월 29일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임

(2)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운영 관련 주요 신설 내용²⁴⁾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설치구역, 규약,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안 제2조 제3항 후단, 안 제195조부터 제207조까지 총13개 조항 신설
- ① 지방자치단체종류(제2조 제3항의 후단 신설 및 제4항 삭제)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1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후단 신설>
-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9. 6

② 신설안 조문

신설 조항
제11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1절 설치 제195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중 략 -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 생 략 - 제196조(설치 권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 생 략 - 제197조(구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에만 관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2절 규약과 기관 구성 제198조(규약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④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⑤ 3. 구성 지방자치단체
- ⑥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 ⑦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
- ⑧ 6.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⑨ 7.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⑩ 8.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
- ⑪ 9.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 ⑫ 10.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 ⑬ 1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
- ⑭ 12.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 생략 -, ③ - 생략 -

제199조(기본계획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 생략 -

제200조(의회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지방의회의원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01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

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3절 운영

제202조(경비의 부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시·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3조(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 - 생략 -

제204조(가입 및 탈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입 또는 탈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 생략 -, ③ -생략 -

제205조(해산) ①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여야 한다.

② - 생략 -

제206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시·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에 관한 규정을,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군 및 자치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 생략 -

제20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98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 생략 -, ③ - 생략 -

5) 기타 법률

- 지방교부세법은 지방교부세의 교부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제2조제1호).”고 규정하고 있음

6) 종합분석

(1)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광역행정 관련 연계협력 제도

-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광역행정을 위한 연계협력 제도의 형식과 개요, 관련 규정을 정리하면 [표 4-1]과 같음
- 협력제도 형식상 법인설립이 불필요한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147조에 따른 협력사업, 제151조의 사무위탁, 제152조 내지 제158조의 행정협의회, 마지막으로 제165조의 지방자치단체장 등 협의체 등 4가지 유형의 협력제도가 있음
- 법인설립이 필요한 경우는 법 159조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법 제2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2가지 유형이 있음

[표 4-1] 현행 지방자치법상 광역행정 관련 협력제도(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구분	협력제도	제도의 개요	관련규정
법인 설립 불필요	협력사업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 사무처리의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력	지방자치법 제147조
	사무위탁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처리	지방자치법 151조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	지방자치법 제152조 내지 제158조
	지방자치단체장 등 협의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은 상호간 교류와 협력 증진,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전국적 협의체 설립	지방자치법 제165조
별도 법인 설립 필요	지방자치 단체조합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 처리	지방자치법 제159조 내지 제164조
	특별지방 자치단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무를 효율·광역적으로 제공·운영하기 위해 기존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설치하여 관련 사무 처리	지방자치법 제2조

(2) 법인설립을 통한 연계협력 제도 비교

- 정부의 입법으로 전부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법인설립 형태의 연계협력제도를 비교하면 [표 4-2]와 같음

[표 4-2] 법인설립이 필요한 연계협력 제도 비교(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구 분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적 성격	법인(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
구성 단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설치 목적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
처리 사무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무	광역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
국가의 사무위임 등	-	국가 또는 시도사무의 위임이 필요한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 요청 가능
설치 절차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 또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상호협약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
의결기관	조합회의	의회
위원 선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
조례 제정권	x	o
집행기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서 선출
장의 임용권	x	o
직원 구성	파견직원	소속직원 + 파견직원
주민 참여	-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감사청구 등 관련규정 준용

2. 만경강유역협의회 운영현황

1) 만경강유역협의회 구성현황

(1) 구성목적

- 만경강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고, 지역주민 및 이용객을 고려한 유역 개발을 위함
- 만경강유역을 환경과 이용적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

(2) 구성현황 및 역할

① 협의회

- 지방자치단체 5개 시군(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 만경강유역 친수시설의 공동 유지관리 실시 및 역사문화관광 분야의 발전방안 마련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 분야를 총괄하고, 만경강유역의 전반적인 관리와 전북 지역 발전을 위해 각 기관에 적극 협력

② 실무위원회

-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며, 만경강 유역과 연계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발굴
- 유관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연구원
- 민간전문가 : 도시계획문화관광분야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3) 협의사항

- 만경강 유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 하천기본계획 등을 고려한 전반적 유역관리 방안
- 친수공간의 합리적 조성과 체계적인 공동관리·운영 방안
- 각 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 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2) 만경강유역 협의회 주요추진 사항

(1) 만경강유역 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① 협약체결

- 일시 : 2018.12.17.(월)
- 장소 : 만경강 비비낙안
- 참석 : 50여명 (5개 지자체 장, 실무위원, 유관기관 및 시군 관계자 등)

② 협약내용

- 전라북도의 중심에 있는 만경강유역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상호 업무협약 체결
- 업무협약에 따라 각 지자체와 익산국토관리청은 만경강의 시설과 공간을 공동관리 및 운영뿐만 아닌 시설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협의하여 시행
- '19년부터 실무협의회를 통해 만경강관련 각 지자체의 사업에 대한 현황 공유 및 논의



자료: 익산시 홈페이지, 만경강유역 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2) 만경강유역 협의회 1차 실무위원회

① 회의개요

- 일시 : 2019. 1. 29(화)
- 장소 :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 열차카페 세미나실
- 참석 : 만경강유역 협의회 실무위원

② 회의내용

- 만경강유역 협의회 현황설명
- 공동부담금 운영사례
 -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 실무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 만경강유역 협의회 공동부담금 확보에 대한 각 시군 입장 논의
- 만경강협의회 추진전략 논의
 - 만경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단계별 추진
 - 1단계(2019~2020년), 2단계(2021~2022년), 3단계(2023~2025년), 4단계(2025~)

(3) 만경강유역 협의회 2차 실무위원회

① 회의개요

- 일시 : 2019. 3월
- 참석 : 만경강유역 협의회 실무위원

② 회의내용

- 만경강 문화관 전시 및 프로그램 계획(안) 논의
 - 만경강의 역사, 문화에 대한 소개와 문화예술 체험 등 문화관 전시 및 프로그램 계획(안)에 대한 기본 방향 검토
- 만경강 국가하천 지구지정(안) 논의
 -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만경강 국가하천 지구지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만경강유역 실무위원회에서 논의
 - 만경강 국가하천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지자체 의견 수렴

3. 지자체간 연계협력 운영사례 분석

1)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1) 구성 목적

- 서해안 시대 도래에 따른 영산강 유역권의 개발과 보존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이에 따른 각종 현안문제의 공동추진과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산강 유역권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여기관

- 8개 지자체
- 목포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3) 협약내용

- 영산강 보존을 주목적으로 목포·나주시, 담양·화순·영암·무안·함평·장성군 등 8개 시·군이 참여하는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영산강 살리기 등 현안사항을 협의(안 제1조내지제3조)
- 협의회사무소는 의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조직은 의장 1인 위원 7인으로 하며,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가항에 열거한 시·군의 단체장이 차례로 의장을 맡되 최초 의장은 나주시장이 되며, 간사는 의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광역행정 업무 담당 실·과장이 담당(안 제4, 6, 7조)
- 정기회는 년2회, 임시회는 수시 개최토록 하고, 협의안건은 관련단체의 광역행정 업무 실·과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도 지사에게 조정요청토록 함.(안 제10,12,13조)

(4) 협의사항

- 영산강 살리기 등 영산강의 보존 및 개발추진
- 영산강 연안에 대한 환경친화적 종합개발 및 자연생태계 보존
- 자원의 개발·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 기타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1) 구성목적

- 섬진강의 생태계 보전 및 수질오염 예방 등을 위한 공동 대응과 활동을 통한 '섬진강 생태보전'을 추진하기 위함

(2) 참여기관

- 11개 지자체 및 6개 특별기관
 - 기초 자치단체 :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남원시, 남해군, 순창군, 순천시,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하동군
 - 특별기관 : 새만금지방환경청, 서부지방산림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관리단,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

(3) 협약내용

- 지방자치법 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환경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 함(제1조)
-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 10인으로 하고, 특별위원 6인으로 하며, 자문위원은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함(제3조)
 - 협의회 특별위원은 수질보전관련 정보제공 및 협조를 위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전주지방환경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장, 한국수자원공사섬진강댐관리단장, 서부지방산림청장, 익산국토관리청장으로 함
-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함(제7조)

(4) 협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간의 수질로 인한 이해관계 조정
- 섬진강수질보전을 위한 관계 기관 역할 부담에 관한 사항
- 섬진강 수계 및 연안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수습 대처방안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질보전 및 개선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협의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관련사업²⁵⁾

○ 시군별 제안사업과 관련계획, 주요 사례조사를 통하여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마스터 플랜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함

[표 4-3] 시군별 주요 제안사업

시 군	사 업 명	사 업 비
진안군	에코빌리지 조성 외 23건	2,500억원
임실군	사선대 관광지 관촌 Water Park 조성 외 6건	5,880억원
순창군	섬진강생태 녹색체험 관광자원 개발 외 10건	1조 1,382억원
장수군	섬진강 수계 요천 수변공간 조성 외 8건	2,670억원
남원시	요천 생태하천 복원 및 정비 외 28건	9,632억원
곡성군	섬진강 오지리 생태습지 조성 및 어도설치 외 27건	5,644억원
구례군	섬진강 수달생태공원 조성 외 12건	1조 1,311억원
순천시	향전천 수변공원 조성 외 6건	1,640억원
광양시	망덕포구 및 배알도 지역명소화 테마랜드 조성 외 13건	7,451억원
하동군	섬진강 수변 테마파크 조성 외 15건	1조 462억원
남해군	자전거 일주도로 조성 외 6건	2,977억원
총 계	11개 시군 165건	7조 1,559억원

(6) 연혁

- 1996.07.15 광역환경행정협의회 구성 제의(광양시)
- 1996.09.11 제1차 실무협의회 회의 (규약 안 심의)
- 1997.12.26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 1998.08.27 제2차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 2001.12.27 제8차 정기총회 개최(순창군이 회장기관으로 선정)
- 2002.08.28 수질개선공로로 감사원장 표창수상(순창군수)
- 2003.04.03 제1차 정책협의회개최(서울 여의도-국회, 차관, 회원)
- 2003.10.17 증액교부금 확보를 위한 조찬간담회(여의도)
- 2005.01.01 회장기관 이관 (순창군 ⇒ 남원시)
- 2005.05.12 섬진강수질보전 연찬회(1박 2일)
- 2005.12.15 제16차 하반기 정기총회
- 2006.05.18 섬진강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워크숍(1박 2일)

25) 섬진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관련하여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회원기관인 11개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제안 사업 시군별 수집자료

- 2007.06.05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대통령 기관표창
- 2008.05.22 실무자 선지시설 견학(1박 2일)
- 2009.04.22 국토해양부방문(섬진강살리기 마스터플랜 반영 요구)
- 2012.08.06실무단 해외연수 (25명)
- 2013.04.12섬진강 환경보전 및 내서댐 건설관련 공동건의문 채택
- 2013.09.10섬진강 선언 선포 (국회 정론관)
- 2015.10.21~28환경보전 해외연수 (북유럽, 26명)

3)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1) 구성목적

-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금강을 21세기 관광트렌드에 맞는 수상관광 프로젝트 등을 공동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함

(2) 참여기관

- 4개 지자체
 - 금강에 인접한 논산시, 서천군, 익산시, 부여군
 - 필요시 회원 만장일치로 금강 수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음

(3) 협약내용

- 회장은 임기 1년으로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둠(제5조, 제6조)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함(제7조)
 - 정기회는 반기 1회 윤번제로 개최하며 회망 또는 협의로 차기 순번을 결정함
 - 임시회는 회원들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4) 협의사항

- 금강 유람선 노선 확대를 위한 해당 시군별 연계운항 공동 노력
- 거점별 나루터에 관광객 이용 가능한 농특산물 전시·판매
- 금강변 하천부지에 4계절 이용 가능한 생태 관광지 공동 조성

- 4대강 살리기 사업 후 이관된 친수 공간 관리대책 공동 대응
- 수상관광사업 공동개발 및 중앙부처 국비확보 등 공동 대처
- 상생을 위한 공동개발 전략 연구용역 결과 협의회 승인사항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관심사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제반 교류 사항 등

(5) 추진현황²⁶⁾

- 공동 정책워크숍
 - 낙동강 수상관광(에코투어 크루즈), 전문가 특강 등
- 금강벚길 워크숍
 - 금강벚길 및 나루터 견학 체험, 각 지점별 나루터 현황분석 등
- 국외정책연수 :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 수변공간 관광자원화 선진우수시설, 수변도시와 배후도시의 관광개발, 지역 활성화 정책 등 사례조사
- 금강 EH투어 사업 심층평가
 - 지자체 연계협력사업과 생활권 선도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
- 국가하천 친수공간 활용예산 지원 대정부 건의
 -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재정적 지원(하천관리 예산)
 - 관광자원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준설, 벚길 복원)

(6) 연혁

- 2013년: 정기총회(2회), 실무위원회(3회), 정책워크숍(2회/제주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금강 EH(Eco History) 투어 사업 추진(지역발전위원회)
- 2014년: 정기총회(2회), 실무위원회(5회), 정책워크숍·선진지견학(3회/충주시, 부안 대명리조트, 북한강·한강), 금강 EH(Eco History) 투어 사업 추진(지역발전위원회)
- 2015년: 정기총회(2회), 실무위원회(4회), 정책워크숍(1회/제천 리솜포레스트), 국외 정책연수 워크숍(실무진 11명/이탈리아 등), 금강 EH(Eco History) 투어 사업 추진(지역발전위원회)
- 2016년: 정기총회(2회), 실무위원회(6회), 공모사업 전문가회의(1회), 정책워크숍(1회/영산강 - 나주시), 국외 정책연수 워크숍(실무진 및 부단체장 20명 / 호주) 해안권 관광거점형 지역개발 시범사업 응모(국토교통부)

26)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2017년 사업결산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협의회 4개 시·군 해남이, 해맞이 축제 취소)

- 2017년: 정기총회(2회), 실무위원회(6회), 정책워크숍(2회/낙동강 - 부산, 금강벚길 조사 및 선상회의), 국외 정책연수 워크숍(실무진 12명/영국·프랑스), AI 확산 대응 협력체계 구축(협의회 4개 시·군 해남이, 해맞이 축제 등 공동대응), 지역수요맞춤형 연계사업(S-Factory 백제) 공모신청, 국가하천 친수공간 활용 예산지원 공동건의(대전국토관리청)
- 2018년: 정기총회(2회), 실무위원회(5회), 정책워크숍(1회 / 섬진강 일원 : 임실, 진안), 팸투어(1회 / 4개 시군 주요 관광지), 국외 정책연수(실무진 12명/태국)

4) 금강권 관광협의회

(1) 구성목적

- 금강을 연계하는 자치단체간의 관광 교류와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업무 협의와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을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

(2) 참여기관

- 6개 지자체 : 금강을 연계하는 공주시, 군산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익산시

(3) 협약내용

- 협의회 회원은 금강을 연계하는 6개 자치단체장으로 함(제3조)
 - 회원의 추가 구성은 회원 전원이 협의하여 만장일치로 결정
- 임원은 회장 1명, 사무국장 1명으로 각각 구성함(제6조)
- 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각종사무를 총괄(제7조)
 -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재정집행을 총괄함
-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 임시회, 실무협의회로 구분(제9조)

(4) 협의사항

- 관광지 등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및 시·군간 업무 조정
-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현안 정책입안 및 개선방향 건의
- 기타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5) 관련사업²⁷⁾

[표 4-4] 금강권 관광협의회 2018년 사업추진 성과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비(천원)
금강권 관광홍보관 운영	2018.3월 ~ 12월	17,000(3,000x5개시군/서천군 2,000)
금강권관광협의회 팸투어 운영	2018.3월 ~ 12월	19,000(3,000x5개시군/서천군 4,000)
금강권 국외워크숍	2018.11.5. ~ 11. 10	43,340
금강권관광협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2018.1월 ~ 12월	2,800
금강권 관광활성화를 위한 금강천리 연구용역	2018.12월 ~ 2019.11월	210,000

자료 : 금강권 관광협의회(2018), 사업추진성과

5) 장수벨트행정협의회

(1) 구성목적

- 장수벨트지역의 장수관련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함

(2) 참여기관

- 전라북도 : 순창군
- 전라남도 :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3) 협약내용

- (구성) 회원은 회장 1인, 위원 3인으로 구성(제3조)
 - 자문위원 8인이상 ~ 16인 이하, 자문위원은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 의회회장을 당연직으로,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각 자치단체장의 추천
- (회장)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제4조)
 -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노인인구비율에 따라 윤번제 순으로 선임
- (회의) 협의회는 정기회(년2회), 임시회, 실무협의회로 구분(제7,9조)

(4) 협의사항

- 장수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장수벨트에 관련된 사업으로 협의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27) 금강권 관광협의회(2018), 사업추진성과

(5) 공동사업 예산회계

- (예산확보) 의결된 공동사업에 대한 부담액은 협의회에서 결정, 예산은 자치단체 별로 계상(제13조)
- 사업계획수립은 실무협의회를 거쳐 협의회에서 결정하고(제14조)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제15조), 지출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출하고 그 결과를 각 자치단체에 통보(제16조)
- 100세 잔치 사업비는 협의회 공동부담금 중 2억원 범위내서 우선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추가 소요 사업비는 회장군에서 자체부담

(6) 관련사업²⁸⁾

가) 구곡순담 백세인 건강상태와 생활환경 조사 연구

○ 연구내용 및 목적

- 장수노인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식습관과 생활태도 등을 조사하여 장수요인을 분석하고 그 가족, 친구, 이웃 등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공적인 사회적 관계 변수들을 파악연구하여 건강 및 장수에 있어서 개인의 특성과 생활환경 인자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 지 규명
- 2001년 2003년, 2005년 초기 백세인 연구조사와 20여년이 지난 현재의 백세인의 건강상태와 식습관, 생활환경 등을 조사비교 분석하여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노화 정책수립 및 항노화산업 육성전략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연구사업 개요

- 공간적 범위 : 구례, 곡성, 순창, 담양
- 연구기간 : 2018년 8월 3일 ~ 2019년 1월 31일
- 연구예산 : 50백만원

나) 구곡순담 장수식품 담양 고서로컬푸드 공동판매장 운영

○ 매장현황

- 운영개시일 : 2013. 4. 15
- 매장면적 : 660㎡
- 매장위치 : 담양군 고서면 가사문화로 342-3

28) 금강권 관광협의회(2018), 사업추진성과

○ 운영현황

- 운영주체 : 고서농협 로컬푸드(구곡순담 4개군 및 고서농협 공동운영)
- 일평균방문객 : 709명(회원고객 : 9,408명)
- 2018년 매출액 : 91억원(농산 37, 가공 26, 축산 23, 기타 5억)
- 세부운영방법 : 농가가 포장, 가격결정, 매장진열

○ 매장 확대발전 계획

- 2019년 상반기 : 1개소(고서 로컬푸드 시범운영)
- 2019년 하반기 : 2개소(수북 로컬푸드 추가운영)
- 2020년 ~ : 3개소(봉산 로컬푸드 추가운영)

6)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1) 구성목적

- 지리산권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통합적인 관광개발 미래를 만들고 공동연계사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지속적인 전담 추진조직인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설립

(2) 참여기관

- 지리산권 3개도 7개 시군
 - 조합구성 : 전라북도(남원시, 장수군),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경상남도(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 조합회의 : 8명(문화체육관광부 추천 1명, 지자체 추천 7명)
- 기구 구성 및 인력(2019. 3)
 - 기구구성 : 1본부, 2과 4개팀(관리과: 행정지원팀, 기획정보팀, 기반사업과: 자원개발팀, 기반조성팀)
 - 인력구성 : 총원 22명(시군파견인력 각 3명, 자체 채용인력 1명)
 - 직급구성 : 4급-1명/5급-2명/6급-4명/7급-6명/8급-7명/계약직-1명

(3) 협약내용

- 조합에는 조합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합회의를 둬(제6조)

- 조합회의는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음
- 조합회의는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함(제7조)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하반기 중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장 또는 조합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함(제9조)
- 조합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제11조)
- 조합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함(제12조)
 - 조합장은 조합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임명함

(4) 협의사항

- 지리산권 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 지리산권 관광개발 협의·조정제에 관한 사무
-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계획 공동연계사업에 관한 사무
-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
- 기타 조합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5) 관련사업²⁹⁾

- 2006년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시·군에서 추진하는 최종 26개 사업은 관광자원 개발사업 유형의 16개 사업, 관광기반 조성사업 유형의 10개 사업임
- 거점사업은 지리산권을 대표하여 권역인지도가 높고 상징적인 사업이며, 연계사업은 기능적으로 시·군의 테마를 활용한 주요 핵심사업이고, 특화사업은 거점·연계사업과 기능적으로 연계 및 보완이 가능하며 파급효과가 시·군 단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업임

29) 문화관광부(2006).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_관광개발 기본 구상

[표 4-5] 시군별 주요 제안사업

유 형	지 역	추 진 사 업	사 업 위 계	계
관광자원개발	남원시	-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 남원 사랑정원 조성 - 남원 관광지 전통예술 관광지화	거점사업 특화사업 특화사업	3
	장수군	- 대곡제 관광개발 - 방화동 레포츠관광지화	연계사업 특화사업	2
	곡성군	-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 -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조성	연계사업 특화사업	2
	구례군	- 지리산 역사문화체험단지 조성 - 산수유 테마파크 조성	거점사업 특화사업	2
	함양군	-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 - 상림 주변 관광개발	거점사업 특화사업	2
	산청군	- 죽림 관광지 조성 -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 - 중산 관광지 산악관광센터화	연계사업 특화사업 특화사업	3
	하동군	-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 - 하동 야생녹차 공원 조성	연계사업 특화사업	2
공동연계사업	공통	-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 - 지리산권 통합 축제 개최 - 지리산권 방문의 해 추진 - 지리산권 7품 7미 육성 - 농촌문화관광마을 시범 조성 - 타운 투어리즘 존 시범 조성 - 지리산권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육성 - 지리산권 관광 순화로 조성 - 지리산권 관광정보화 시범지역 구축 -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	공동사업	10
계		-	-	26

자료 : 문화관광부(2006),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_관광개발 기본 구상

(6) 연혁 및 운영 근거

- 1998년 ‘지리산권자치단체장협의회’로 출발하여 2008년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름
-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 감독),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에 근거를 두고 있음

(7) 운영 예산

- 재원조달 방식
 - 2009년~2013년 : 경제발전계정(광역발전특별회계)

- 2014년~2017년 : 생활기반계정(지역발전특별회계)
- 10년간 재원 구성(246,503백만원)
 - 국비(112,327 : 45.6%), 지방비(117,228 : 47.6%), 민자(16,948 : 6.9%)

7) <참고> 만경강 포럼

(1) 추진배경

- 2016년 제15회 한국 강의 날 완주 대회 통해 만경강 포럼 비전 선포
- 완주미래발전위원회 생태문화분과 “만경강 포럼” 추진 및 운영결정
 - 현재까지 만경강 접근 방법은 사업적 방향으로만 접근함(하천정비 등)
 - 만경강 접근 방법 플랫폼 전환 필요(역사, 생태, 인문학적으로 접근)

(2) 추진방향

- 1단계 : 만경강 포럼 추진
 - 연중 이어가는 릴레이 포럼으로 전문성과 차별성 시도
 - 미래발전위 주관 포럼 개최 정례화로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 2단계 : 만경강 네트워크 구축(미래발전위원회 생태문화분과 중심)
 - 도내 및 국내외 생태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 각각의 생태자원 전문가 그룹 구성하여 생태정책의 확산효과 기대

(3)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16년 ~ 지속 (현재 4회 개최)
- 운영방법 : 미래발전위(생태문화분과) 주관 및 국내 전문가 섭외
 - 전문가, 생태NGO단체, 지역주민, 공무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완주군 생태정책 총괄 플랫폼 구축
- 참여대상 : 미래발전위, 국내 생태자원 전문가, 완주군 공무원, 군민 등
- 주제선정 : 만경강 생태자원 분류에 따른 차수별 주제 선정
 - 조례근거 : ‘완주군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 제2조(기능) 및 제7조(회의)

(4) 운영조직 구성

-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생태문화분과

- 위원장 1인, 위원7인(분과장 포함)

○ 만경강 포럼 기획위원

- 정책분과 3인, 생태분과 3인, 역사문화분과 6인, 마을과 삶분과 2인, 거버넌스분과 2인, 언론 1인

(5) 만경강 포럼 추진 실적

가) 제1회 만경강 포럼 (한국 강의 날 전북 완주대회 연계)

○ 일시/장소 : 2016. 8. 11/삼례문화예술촌 세미나실

○ 참여인원 : 100여명(전국활동가, 생태NGO, 주민, 공무원 등)

○ 주제 : 만경강 생태정책 비전 선포 및 생태포럼

◆ 발제 1 : 만경강의 생태·문화·역사자원

- 만경강의 자연환경 및 수서생물, 주요식물, 조류, 어류, 곤충 등
- 만경강의 보호대상(천연기념물, 보호대상종, 멸종위기종 등)과 외래종에 대한 대책
- 만경강의 역사문화자원과 활용방안

◆ 발제 2 : 만경강 포럼 활성화 방안

- 만경강 비전 수립 및 추진 전략 구성
- 신천습지 경관보전 지구 선정 운동
- 향후 만경강 유역 5개 시군 거버넌스 발전 전망 모색

○ 주요 제안내용

- 만경강 자연사 박물관 조성
- 만경강 커뮤니티 맵 제작
- 한국 농업사 박물관 건립
- 하천 주변 활용한 영업 제한 조례 제정

나) 제2회 만경강 포럼

○ 일시/장소 : 2016. 12. 28/완주군청 문화강좌실

○ 참여인원 : 100여명(아이디어제안자, 생태NGO, 주민 공무원 등)

○ 주제 : 만경강 아이디어 파티

○ 아이디어 제안 목록 27건

[표 4-6] 제2회 만경강포럼 아이디어 제안 목록 27건

연번	제안사업명	주요내용	분야	비고
1	만경강 GO	• 만경강 생태관광 활성화 플랫폼 구축 • 자전거 하이킹, 내일로 연계, 체험농장, 걷기대회, 영상 공모전 및 전시회 등	생태관광	
2	만경강 내일로	• 내일로를 타겟층으로 한 생태관광 활성화 • 삼례문화예술촌-비비정-비비낙안 카페등의 여행코스 개발	생태관광	
3	만경, 인간과 함께한 역사	• 역사 접목 관광상품, 역사 콘텐츠 개발 • 제주도 다크투어리즘, 군산 근대역사지구	역사관광	
4	만경꽃 백리길 프로젝트	• 봉동천-삼례천 자전거길 활용 꽃길 조성 • 걷기대회, 야생화체험, 꽃길 음악회 추진	생태	
5	한일 고교생이 함께하는 만경강 생태학습 축제	• 한일 고교생간의 만경강 주제 문화교류	행사	
6	만경강 영상지도 제작	• 정기적인 드론 촬영으로 계절에 따른 만경강의 생태변화 모니터링	생태	
7	만경강 숲생태 아카데미 운영	• 만경강 생태 해설과 청소년 대상 해설 교육	생태교육	군정 반영
8	만경강 물수제비 대회	• 전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물수제비 대회	행사	
9	특산물 맞추기 새총대회	• 새총으로 특산물을 맞춰 겨루는 경기 개최	행사	
10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관리	• 신천습지 일대 - 한내보(L=5km, B=500~900m)	생태	
11	제방 생태숲, 생태마을 및 생태학교 운영	• 제방 생태 숲 조성 및 관리, 생태관광지로 활용	생태	
12	역사·문화 유적 자원 보전 및 활용	• 백제산성(17개소), 역참 등의 탐험과 하천 생태 탐방 프로그램 개발	역사관광	
13	만경강 기념품 개발	• 동·식물을 활용한 만경강 대표 생태 심벌 제작	생태관광	
14	와일드 포차	• 만경강변에서 와일드푸드 축제 먹거리 행사 진행	행사	
15	만경강 물길 따라 여름밤 음악여행	• 만경강 스토리텔링 및 여름밤 음악 연주회	문화	
16	만경강 연주단 공연 프로젝트	• 생태, 역사, 문학을 아우르는 주제로 연주단 공연 기획	문화	
17	만경강 생태 탐방	• 학생과 일반인 대상 생태탐방 프로그램	생태교육	
18	만경강 들꽃 공예 공동체 육성	•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들꽃 공예 사업 추진	마을과 삶	
19	만마관 역사와 호남 제2정맥 트래킹 숲길코스 개발	• 만마관 복원 사업과 사계절 트래킹 치유 숲길 구성	역사	
20	만경강 생태포럼	• 걷기대회, 사진전 등 프로그램 개발과 하천 숲 도입	포럼 방향 제안	군정 반영
21	만경강 물놀이 페스티벌	• 물초대회, 물싸움대회, 물 댄스 경연대회, 물속 수박먹기 대회, 물고기잡기체험 등	행사	

연번	제안사업명	주요내용	분야	비고
22	만경강 하나 되는 우리	• 베트남 문화를 접목한 만경강 주변 행사 기획 • 수상가옥 체험, 매곡강의 작은 배 타기, 동남아 전통 놀이 및 축제 체험, 완주군 특산물 퓨전 음식 체험 등	행사	
23	고리명주나비 생태 복원	• 고리명주나비 복원과 생태학습장 조성	생태	
24	만경강변 씨름대회	• 민속전치의 계승 및 모래사장 복원	행사	
25	만경강 길 따라 300리	• 만경강의 삶 구술 자원화	마을과 삶	군정 반영
26	강따라 길따라 만경강의 사계	• 만경강의 구간별 사계절을 글과 삽화로 담아냄	문화	
27	문화작품 속에 나타난 만경강 이야기	• 만경강 주제 문화작품 수록 및 현장 취재 인터뷰 • 만경강을 주제로 한 동화, 시, 수필, 소설집 발간 지원	문화	
자료 : 완주군 협조자료, 만경강(완주군) 주요 현황 및 정책 방향, 만경강 포럼 운영현황				

다) 제3회 만경강 포럼

- 일시/장소 : 2017. 9. 27/완주군청 문화강좌실
- 참여인원 : 100여명(전국활동가, 생태NGO, 주민 공무원 등)
- 주제 : 만경강 역사자원 조명과 가치발견
 - ◆ 발제 1 : 전·근대 만경강 역사자원
 - 만경강의 역사 및 유적
 - 조선시대 명칭 사수강, 일제강점기 명칭 만경강
 - 만경강의 교통요지 삼례, 삼례역참과 선정비
 - 완주군 농경문화와 만경강
 - 만경강의 상·중류 백제산성과 농경문화 위용
 - 만경강의 농경관개역의 역사
 - 일제강점기 완주군 수리댐 건설
 - ◆ 발제 2 : 만경강의 선사문화 이야기
 - 만경강의 고인돌 특징
 - 봉동 생강의 역사와 고인돌
- 주요 제안내용
 - 만경강 역사 스토리텔링
 - 만경강 명칭 변경

- 대아댐 근대문화유산 지정 추진
- 역삼박물관 조성
- 만경강 주변 행사 및 곳즈 개발
- 만경강 예술가 발굴 홍보

라) 제4회 만경강 포럼

- 일시/장소 : 2018. 12. 19/완주군청 문화강좌실
- 참여인원 : 100여명(전국활동가, 생태NGO, 주민 공무원 등)
- 주제 : 만경강 생태 거버넌스
- 성과발표 : 만경강 포럼 제안사업 추진성과 발표 (만경강 아카데미, 만경강 역사
구술자원화 등)
- 기조강연 및 발제
 - ◆ 현 정부의 물 하천 정책방향과 흐름
 - 물관리 일원화, 물관리기본법 이후 정책방향
 - 유역거버넌스 원칙과 성공조건
 - ◆ 만경강의 생태자원 이야기
 - 만경강 주요 습지와 자원
 - 우수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만경강 유역권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방안
 - ◆ 만경강 생태경관지구 지정을 통한 생태자산 보전과 이용방안
 - 보호구역 지정의 근거와 그에 따른 효과
- 주요 제안내용
 - 철새탐방로 설치 및 꼬리명주나비 축제 개최
 - 만경강 홍보 마케팅

4. 지자체간 연계협력 해외사례

1) 일본의 광역연합

(1) 광역연합의 개요

- 일본의 광역협력제도는 일부사무조합, 광역연합, 협의회, 지방개발사업단, 사무 위탁, 기관의 공동설치 등 6개 유형이 있음
- 이중에 광역연합은 2개 이상의 보통지방자치단체나 특별구가 행정서비스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 유형임
- 1995년 6월에 시행된 이 제도는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함이며 광역적인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동시에 권양이양의 수용태세를 정비하기 위해 운영됨

(2) 광역연합의 현황³⁰⁾

- 2010년을 기준으로 일본 전역에 115개의 광역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행정체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수직적 구조이지만 일본은 지방정부 간 수평적 연합 구조로 운영됨
- 지자체 간에 형성된 일본의 광역연합은 우리나라 행정협의회처럼 느슨한 친목 모임이 아닌 강력한 법적기구로서 작동하며 인접한 지자체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협력사항으로 상정하여 해결방안을 찾으며 인접지역 간 갈등해소, 상호협력 등을 통해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있음

(3) 사례_후쿠오카 광역연합체

① 개요

- 1959년 공업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쿠오카 경제블록회의’가 모태이며 1970년대 후쿠오카시를 중심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물, 교통, 쓰레기, 방재, 구급 의료 등 급증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행정체계 도입 필요성에 따라 구성된 광역행정협의체

30) 국제신문, 지방분권...시민 힘으로, 2018. 4. 10

② 구성도시

- ‘후쿠오카 도시권 광역행정 추진협의회’는 후쿠오카시를 중심으로 인근 17개 시정으로 구성하여 공생을 도모
 - (9개 시) 후쿠오카시, 치쿠시노시, 카스가시, 오노조시, 다자이후시, 코가시, 무나가타시, 후쿠츠시, 이토시마시
 - (8개 정) 우미정, 사사구리정, 시메정, 수에정, 신구정, 히사야마정, 카스야정, 나카가와정

③ 운영방향

- 추진협의회장은 후쿠오카 시장이며 협의회 아래 간사회와 사무국이 있으며 별도로 1991년 ‘후쿠오카 도시권 종합 물 대책 연구회’를 설치함. 사무실은 후쿠오카시청 내에 있으며 사무국장 등 5명의 상근직을 두고 있고 예산은 17개 시·정마다 인구 비례에 따라 내는 연 640만 엔의 회비로 운영

④ 주요사무

- 추진협의회가 다루는 사무는 시정이 공통으로 해당되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후쿠오카 도시권에는 큰 하천이 없어 가뭄이 닥치면 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첫 번째 사무가 물의 확보와 절수 관련 대책임. ‘후쿠오카지구 수도기업’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물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1991년에는 ‘후쿠오카 도시권 종합물대책연구회’를 결성하여 물에 관한 대책수립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두 번째 사무는 후쿠오카 광역권의 소방시스템의 일원화임. 2017년부터 통일된 소방통신지령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도시마다 소방업무가 다르게 처리되었으나 이제부터는 종합관리 차원의 단일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방 컨트롤타워로 활용할 예정임
 - 이에 17개 시정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설치된 7개 소방본부 중에 지금까지 5개 소방본부가 통일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2개 소방본부도 2018년까지 통합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프랑스의 자치단체 협력제도³¹⁾

(1) 협력체계 개요

- 프랑스의 기초자치단체인 코뮌(commune: 시읍면)은 수가 많고, 규모가 작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위한 제도가 19세기 말부터 마련되어 많이 활용되어 오고 있음
 - 코뮌은 2010년 1월 현재 총 36,682개에 달할 정도로 그 수가 과다하고, 2,000명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
- 프랑스 기초자치단체간의 협력에 대하여 세 가지 유형, 즉 조합형(coopération associative 혹은 coopération syndicale), 연합형(coopération fédérative), 계약형(coopération contractuelle)으로 구분됨
 - 첫째, 조합형은 코뮌간 협력에서 오랜 전통을 갖는 핵심 유형으로 단일사무조합(syndicats intercommunaux a vocation unique: SIVU), 복합사무조합(syndicats intercommunaux a vocation mutipule: SIVOM), 혼합조합(syndicats mixtes)이 이에 속함
 - 둘째, 연합형은 고유한 지방세원을 가지며 1990년대부터 크게 확대되고 있는 유형들이 많으며, 광역코뮌구(districts), 대도시공동체(communautés urbaines: CU), 도시공동체(communautés de villes: CV), 코뮌(농촌)공동체(communautés de communes: CC), 중도시공동체(communautés d'agglomération: CA), 신도시연합체(syndicats d'agglomeration nouvelle: SAN) 등이 이에 해당됨
 - 셋째, 계약형은 지역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코뮌광역계획(SDAU), 중도시개발계획(contrats de villes), 도농권개발계약(contrats de pays)⁷⁾, 코뮌기본계획(schema directeur: SD), 계획계약(contrat de plan), 도농권연합체개발계획(charter de pays), 도시권연합체개발계획(projet d'agglomeration), 코뮌간광역도시계획(schema de coherence territoriale: SCOT) 등이 이에 속함

(2) 연계협력 유형

가) 조합형

- 조합형은 1890년에 설치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만 5천여 개에 달할 정도로 가장 많이 구성됨

31) 왕정순, <https://blog.naver.com/joinus7942/180685008>

- 조합형은 코뮌의 자치권 존중과 기술적 배분의 우위가 인정되며, 부담금이 주된 재원이고, 의무적 권한이 없으며, 대상지역은 코뮌 전체임
- 이러한 조합형으로는 단일사무코뮌조합(SIVU), 복합사무코뮌조합(SIVOM), 혼합조합이 있음. 코뮌사무조합(syndicats de communes) 초창기에 특정한 하나의 사무처리를 위한 단일사무조합이 설치되었으나 1959년 이후에는 복수의 사무를 담당하는 복합사무조합도 설립할 수 있게 됨
- 1988년 1월 5일의 지방분권 개선에 관한 법률은 해당 코뮌이 복합사무조합의 사무 일부만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선택사무조합(syndicalisme à la carte)을 도입
- 코뮌사무조합은 상수도, 전기, 도로, 학교, 폐기물 수거 등을 주로 처리하고, 자체세원이 없으며, 분담기준(서비스, 인구, 도로, 재정등)을 토대로 내는 코뮌 부담금에 의하여 운영
- 혼합조합은 인접한 코뮌들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 민간단체(상공회의소 등)도 조합에 협력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음

나) 연합형

- 연합형은 법률에 의해 의무적 권한이 다양한 수준으로 정해져 있고, 고유한 지방세를 재원(4개 지방직접세: 주거세, 건축물토지세, 미건축물토지세, 사업세)으로 하며, 대상 지역은 협력체에 따라 다름
- 연합형은 광역코뮌구(districts: 디스트릭트), 대도시공동체(CU), 신도시연합체(SAN), 도시공동체(CV), 코뮌(농촌)공동체(CC) 등이 설치되었는데 1999년 7월 12일 ‘코뮌간 협력의 강화 및 단순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광역코뮌구와 도시공동체(CV)는 폐지됨
- 대도시공동체(CU)는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지역, 중도시공동체(CA)는 5만 이상의 중간 규모도시, 코뮌공동체(CC)는 농촌과 소도시 관리를 위해 설치
- 연합형은 종전의 조합(단일사무조합, 복합사무조합, 혼합조합)과는 달리 고유세원을 갖고 자체 재정을 통하여 보다 광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뮌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도시공동체(CA)나 대도시공동체(CU)는 국가로부터 상당히 많은 재정이 지원됨

5. 정책적 시사점

1) 관련 법제도 측면

-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자체간의 연계협력은 이 시대의 흐름이며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향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행정협의회와 같은 느슨한 형식의 조직보다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형식으로 연계협력조직의 위상이 강화되고 연계협력 내용과 지역적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금년에 통과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지역에서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결성될 것이며 현재까지 없던 새로운 방식의 연계협력이 현실화될 것임
- 이에 현재는 만경강유역협의회가 느슨한 형태의 조직으로 출범했으나 이후 운영 단계에서 실험적으로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다양한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보다 더 진전된 조직형태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현재의 행정협의회단계를 넘어서 보다 더 확대된 방향으로 연계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설정과 협력내용에 대한 포괄적 구상이 필요함

2) 운영사례 측면

(1) 행정협의회 운영사례

- 동일한 하천 유역에 포함된 지자체간의 연계협력을 위한 행정협의회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일반적인 광역적 사무를 협력사항으로 하는 경우와 환경 또는 관광이라는 특정한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됨
- 하지만 이 두 경우를 포괄해서 대부분의 행정협의회는 크게 다음 4가지 유형의 사업을 공동사무로 추진하고 있음
 - 첫째, 하천자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하천 살리기 관련 사업
 - 둘째, 하천의 자연 및 생태자원을 활용한 탐방 및 체험활동을 위한 시설조성 사업
 - 셋째, 하천 주변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관광기반조성사업

- 넷째, 하천 주변의 지역특화자원을 중심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
- 특히, 금강 주변의 지자체가 참여하는 두 개의 행정협의회에서는 강을 활용하여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하천 연계형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공동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 유람선 또는 뱃길 공동운항을 위한 기반확충, 관광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공동대응, 국토부가 조성한 친수시설의 공동운영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이들 행정협의회는 필수적으로 강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관련 선진사례에 대한 연수 목적으로 하천 연계형 연계협력사례조사를 위해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국외 벤치마킹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강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행정협의회의 운영성과는 협의회 운영방향과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행정협의회를 통해 하천유역을 대상으로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2) 지방자치단체조합 운영사례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가장 우수한 사례인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의 연계협력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첫째, 지리산이라는 국내 최초의 국립공원지역을 연계협력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자원을 확보한 점
- 둘째, 지리산과 주변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연계협력의 공동사무로 정하고 있어 지향하는 목적과 성과가 명확한 점
- 셋째,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핵심사업으로 선정됨으로서 10년간 추진예산을 국비로 확보한 점
-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성공적으로 구성·운영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공동자원, 분명한 목적과 사무, 국가정책과 국비예산의 뒷받침 등 3요소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음

(3) 해외 연계협력 제도 운영사례

- 일본의 광역연합 중에 '후쿠오카 광역연합체'가 추진하고 있는 물 수급 및 절수 관련 협력 사무는 만경강유역이 당면한 수량수질 확보문제와 일맥상통하는 사례로서 향후 통합물관리를 연계협력 사무로 추진하는데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음

5

장

만경강유역 연계협력 전략구상

Jeonbuk Institute

-
1. 연계협력 기본방향
 2. 만경강유역 연계협력 기본구상
 3. 연계협력 추진조직 구성 및 운영 방향
 4. 연계협력 선도사업

제 5 장 만경강유역 연계협력 전략구상

1. 연계협력 기본방향

- 지자체간의 연계협력 실행조건은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하나이상의 광역 행정 사무가 있어야 하며 이런 공동사무의 발생은 지자체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공동으로 보유한 자원의 활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함
 - 이런 공동사무의 발생 조건은 다시 정리하면 지리적 인접성, 공동자원보유, 공동이익창출 등 3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지자체간의 연계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확보되어야 함
- 더불어, 만경강 유역권의 5개 지자체가 연계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는 만경강유역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를 통해 각 자치단체 주민들이 만경강 유역을 동일 공동체로서 받아들여야 함
 - 만경강 유역권의 정체성은 자연환경, 역사문화, 지역생활권 등 3가지 부문에서 동질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함
- 상기와 같은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바탕으로 연계협력의 기본방향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함
 - 첫째, 만경강 하천수질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유역관리의 효율성 제고임.
 - 둘째, 지역의 불비한 여건을 상호 보완을 통해 극복함으로서 추진사업의 시너지효과 창출
 - 셋째, 분절적 행정의 한계를 극복한 제도적 역량 극대화

1) 만경강유역 정체성 정립

(1) 자연생태적 측면

- 발원지인 완주군 동상면 밤샘으로부터 새만금호와 만나는 만경대교까지 만경강은 상류부터 완주군-전주시-익산시-김제시-군산시 등 5개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전북에서 발원하여 전북에서 끝나는 전북의 강임
- 만경강에 흐르는 물은 유역내 위치한 산과 계곡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들판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소하천과 지천을 따라서 본류 하도에 이르러 하나의 물줄기가 되어 만경강을 형성하고 있음

- 이런 물줄기는 신체의 혈관처럼 유역 내 모든 지역까지 단절됨이 없이 뻗어 있어 유역권에 사는 모든 사람과 동식물이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줄임
- 따라서 동일한 강의 유역권에 산다는 것은 동일한 자연환경에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물줄기를 공유하는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

(2) 역사문화적 측면

- 강은 다양한 인류문명이 태동하는 문명의 발상지이며 인간의 역사는 반드시 강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문물의 교류를 위해 수로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충지이기도 함
- 강은 인간에게 물을 공급한 수원의 역할뿐만 아닌 강과 강주변에서 산출되는 다양한 먹거리는 풍요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음식과 지역 문화가 특색 있게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었음
- 만경강 유역은 호남지역의 곡창지대로서 삼국시대부터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며 인근 동진강과 함께 우리나라의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지역이며 근대농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지역임
 - 일제 강점기에 식량수탈을 위해 일본인 농장이 대규모로 간척되면서 저수지와 간선수로, 하천보 등 대형 수리시설들이 건설되어 근대농업이 최초로 시작된 지역임
-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경강 상류의 대아저수지, 경천저수지를 수원으로 하여 대간선수를 따라 만경강 중하류의 간척된 농지와 주거지에 농업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관개시설은 만경강 유역권을 하나의 농업공동체로 엮는 중요한 시설임
 - 20세기 초까지 전통적 수리제도로 완주군 봉동읍 등에서는 변수제(番水制)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논에 급수하였으며 두레 조직 같은 촌락 공동체가 있어 수리시설을 공동으로 유지관리 하였음
 - 이들 시설은 일제강점기에 축조된 시설이지만 우리나라의 근대농업을 대표하는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큰 만큼 유역권내 소재하고 있는 근대농업유산자원을 활용하여 만경강 농경문화권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3) 지역생활권 측면

- 만경강은 1870년대 제작된 대동여지도총도에 사수강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전형적인 곡류하천(曲流河川)으로 충적평야 위를 심하게 곡류하며, 하구에서 48km 떨어진 삼례 부근까지는 대조시(大潮時)에 하천 수위가 상승하는 감조하천(感潮河川)으로 지역주민들은 만경강을 농사를 위한 관개와 곡식을 실어 나르기 위한 주운에 많이 이용되었음³²⁾
- 김제의 신흥포, 익산의 목천포와 사천리 등의 선착장을 통해 곡식을 외부로 반출하였고 이런 뱃길은 현재 완주 삼례교까지 닿았음

[그림 5-1] 대동여지도총도의 사수강(출처:<http://blog.daum.net/leekb7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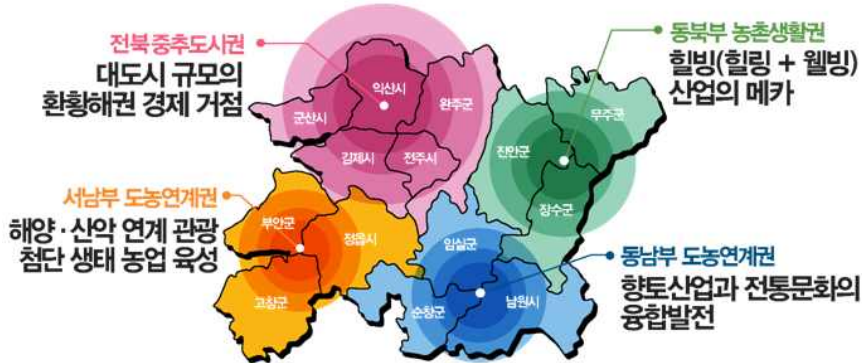


- 현재에도 만경강 유역은 한반도 내의 최대 곡창지대이며 근대이후 호남선, 전라선과 군산선으로 연결되는 철도와 호남과 서해안,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등 교통이 발달되면서 만경강유역권은 전라북도의 산업 및 물류의 중심권역으로 성장 발전해왔음
- 특히, 만경강 주변의 드넓은 농경지로부터 생산되는 쌀과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식품산업 및 농생명 R&D 기반의 신산업이 확충되는 계기가 됨
-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시군구의 경계를 넘어 인근지역으로 생활권이 확장되고 있는 현실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지역 행복생활권 정책에 따라 만경강 유역의 5개지자체는 전라북도의 중추도시생활권으로 포함되어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이 수립된 바가 있음
- 만경강 유역의 경계와 5개 지자체의 행정구역은 일치하지 않으나 유역의 대부분이

32) 다음카페(<http://cafe.daum.net/wjswor15>)

중추도시생활권에 포함되어 있어 유역권이 중추도시권의 핵심이며 산업과 교통, 교육, 행정 등 지역주민 생활과 연관된 모든 기능이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생활권으로 자리하고 있음

[그림 5-2] 전북의 행복생활권 권역 구분



자료출처 : 전주시, 전북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2015)

2) 연계협력 대응방향

- 만경강 유역권 지자체간의 실효적 연계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와 지역의 여건을 볼 때, 협력을 이끌어 가야하는 주체가 필요하고 협력할 내용을 다양한 사업으로 구체화해야 하며 사업을 실행에 필요한 실효적 수단이 필요함
- 상기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연계협력이 실현되기 위한 필수 구성요소는 '추진조직의 안정화, 연계협력의 구체화, 연계협력의 현실화' 등 3가지로 요약되며 각각의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제시

(1) 추진조직의 안정화

- 현재 구성·운영되고 있는 만경강 행정협의회는 초기 시작단계로 조직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만경강 유역의 공동발전을 이루기 위한 안정된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함
- 현재의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되고 운영규약을 작성하는 등의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어 출범하였으나 협의회에 참여한 지자체들이 협의회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소극적인 참여가 대부분임

- 예를 들면 협의회 구성과 회장 선임 등과 같은 일반사항은 법규정에 따라 시행하되
되지만 연계협력을 위한 공동 사무의 범위, 운영예산의 분담과 활용에 대해서는
참여 지자체 간의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고 운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만경강 유역권 연계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연계협력제도 중에서
가장 느슨한 형태인 행정협의회로 출범은 했으나 최상의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서
법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정밀한 고민이 필요함
- 또한, 향후 연계협력이 보다 긴밀하고 강하며 안정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경우 협의회 형태 보다 더 강력한 수단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특수지방자치단체
형태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2) 연계협력의 구체화

- 지금의 정부정책은 지역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지역발전계획에는 연계협력 사업을 중요한 계획과제로 요청하고
있음
- 인구감소저성장 등 여건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 교통인프라 확보 등을 위한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이
절실한 상황
- 만경강 행정협의회는 현재 연계협력의 초보적 단계에 있으나 향후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 실행계획이 필요한 시점으로서 만경강 유역권 내 지역 간의 연계협력 할
세부 내용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함
- 연계협력을 구체화하는 활동으로 정부가 권장하는 해안 또는 하천 연계형 지역발전
계획 수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사례로 전북 4개 시군(군산시, 김제시, 고
창군, 부안군)을 대상으로 '전북 해안권 연계협력 지역계획(2018)'이 있음
- 특히, 지자체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만경강 유역권 주민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역권에 소재한 특화자원이나 장소적 자산을 사업아이템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연계협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만경강 유역권

연계협력 기본계획'과 같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각 사업이 시행되는 대상지역이나 시설은 여러 지자체에 걸쳐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3) 연계협력의 현실화

- 실행계획으로 마련된 각종 연계협력 사업은 국가 또는 지역단위의 각종 법정계획에 반영시켜 사업예산을 국비로 확보함으로써 연계협력을 현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관련된 법정계획으로는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 전라북도종합계획, 전라북도지역발전계획 등이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유형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역 간의 연계협력과 관련된 정부정책 사업을 분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2018년 제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2019~2021)'은 좋은 사례이며 지역 간의 중장기적인 연계사업으로 해안 및 하천 연계 문화관광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추천하고 있음

2. 만경강유역 연계협력 기본구상

1) 기본 컨셉

(1) 만경강 생태환경보전 및 하천자원의 이용고도화

- 만경강 하천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한 하천생물보호 및 환경보전활동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유역권 주민이 함께 가꾸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
 - 유역내 지역주민의 공동 노력을 통해 유역권의 연대의식을 함양시켜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서 정체성 생성 유도
- 다양한 하천시설과 공간 그리고 경관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연계시켜 단절이나 막힘이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친수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만경강 유역의 탐방 및 휴양자원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의 하천자원 이용고도화
 - 만경강 하천 제방과 고수부지에 설치되는 친수시설과 도로 등은 하도를 따라 하천 상하류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시설이용 및 탐방활동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2) 만경강 유역 근현대 농경문화유산의 지역자원화

- 만경강을 중심으로 산재하고 있는 근현대를 대표하는 농경문화유산과 농업기반시설을 정비·복원하여 지역자원으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일제의 식민지수탈에 대한 역사현장을 탐방·학습하는 프로그램 개발
- 동진강 유역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벽골제 등 인근의 대표적인 농경문화유산과 연계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농경역사문화권으로 확대·조성 추진

(3) 만경강유역과 새만금지역의 연계개발

- 새만금 내부개발 시너지효과를 배후지역인 만경강 유역으로 확장시켜 지역발전을 촉진하도록 새만금호와 만경강 하천공간을 단일공간으로 통합하기 위해 다양한 연계시설 조성
- 새만금호의 수질과 만경강 유역의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통합물관리 차원의 만경강 유역 수질수량통합관리체계 구축 추진

2) 비전 및 목표

(1) 공동발전 비전

- 연계협력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비전으로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협력지대, 전북발전의 중심! 만경강”**을 설정
- 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국정기조에 부응하고 만경강 유역권의 공동발전뿐만 아닌 전라북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만경강 유역권 공동발전 염원을 담고 있음
- 특히, 만경강의 상징적인 이미지와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공동체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연계협력을 통한 특화발전을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발전상을 담고 있는 장기적 비전임
- 만경강 하천환경과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전라북도의 대표하천으로서 만경강의 위상을 제고하는 비전설정

(2)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목표

-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생명의 강 만들기”**
 - 만경강의 하천환경 및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자연과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이며 주민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재탄생한 생명의 강 만들기
- **“만경강 유역 공동체 형성”**
 - 유역권 주민 의식과 생활 속에서 공동체적 연대의식이 생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여 통합 홍보 및 운영함으로써 지역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만경강 유역 공동체 형성 유도
- **“만경강 유역권 연계 인프라 구축”**
 - 만경강 유역권의 5개 시군이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투자와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전체 유역권을 새로운 산업 및 문화관광의 단일 권역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연계 인프라 확충
- **“지역 대표 브랜드 확보”**
 - 만경강 유역의 5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발전을 추구하였으나 연계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만경강 유역을 대표하는 하드웨어(SOC 등 시설과 공간)와 소프트웨어(축제, 농식품 공동브랜드, 공동판매망) 개발 및 확충 필요

3) 공간발전구상

(1) 생태체험휴양권역 : 만경강 상류 유역(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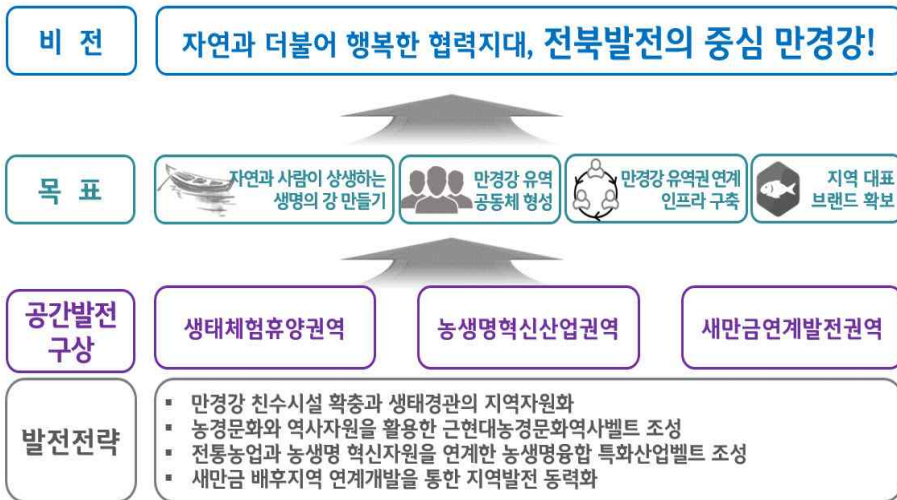
- 만경강의 상류지역의 산림생태자원과 만경강하천생태자원으로 활용한 휴양체험 활동을 통한 힐링과 치유의 공간 조성

(2) 농생명혁신산업권역 : 만경강 중류 유역(전주-익산-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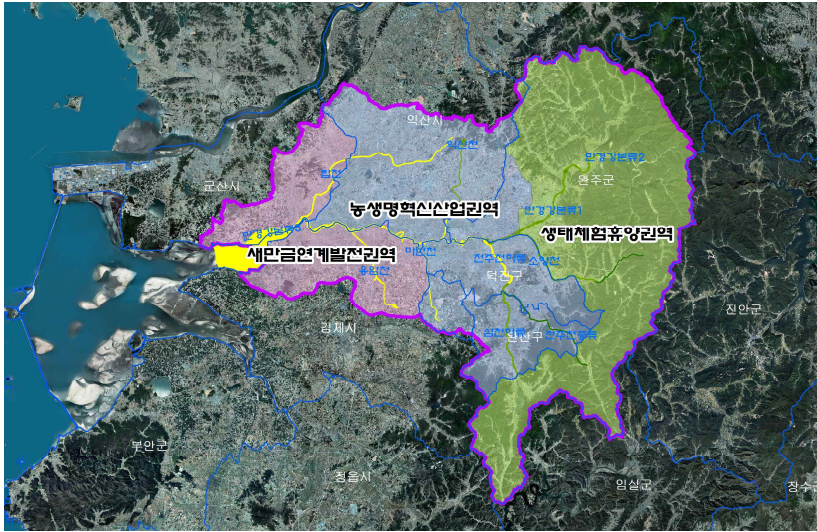
- 만경강과 만경평야를 기반으로 형성된 다양한 농업자원과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농생명 및 식품산업의 거점권역으로 지역을 넘어 미래 전북발전을 견인할 신산업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

(3) 새만금연계발전권역: 만경강 하류 유역(군산-김제)

- 만경강 하류지역의 새만금 지역과 접속지역으로 새만금개발과 직간접적인 연계를 통해 새만금의 개발지역에 조성되는 다양한 산업 및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로 새만금 배후 내륙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새만금 연계권역으로 조성



[그림 5-3] 비전목표-발전구상-발전전략 체계도



[그림 5-4] 공간발전 구상

4) 만경강 유역 연계협력 발전전략

(1) 만경강 친수시설 확충과 생태경관의 지역자원화

○ 하천생태경관자원의 탐방활성화를 위한 탐방인프라 구축

- 하도 내 기존 보에 대한 기능 재검토 및 기능상실 보의 철거를 통한 자연성 복원
- 만경강 주요 하천습지의 생태탐방활성화를 위한 소형탐방보트 운행사업 추진
- 기존 탐방로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만경강 전 구간을 순회하는 국가하천탐방로 조성
- 탐방로 안전사각지대 CCTV 및 국가지점번호표식³³⁾ 설치, 휴게시설 등 안전한 탐방 환경 조성을 위한 탐방로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 만경강 횡단 도로와 철도 교량의 시설개선 추진

- 호남선과 전라선 철도교량과 주요 국도 교량의 경관개선과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 만경강 좌·우안을 연결하는 도로 교량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인도확장 사업 추진

33) 국가지점번호는 국토 및 인접 해안을 일정 간격으로 나눠 지점마다 번호를 부여한 제도로서 격자형 좌표 형식의 위치표시체계로 경찰·소방·산림청 등 기관별로 서로 다른 위치표시체계를 통일해 사고나 재난 같은 긴급상황에서 공동 활용하기 위해 2013년 도입

- 안전하고 편리한 하천 및 수변 접근체계 정비, 제방도로와 인접도로 간의 연결체계 개선

(2) 농경문화와 역사자원을 활용한 근현대농경문화역사벨트 조성

- 만경강 통합축제를 통한 문물교류 확대 및 공동체의식 형성
 - 만경강 유역 축제 공동 운영 및 홍보, 만경강 대표 축제 개발
- 만경강 유역 주요 관광거점 연계형 통합관광체계 구축
 - 만경강유역 통합관광안내지도 제작, 만경강 하천생태지도 제작
 - 만경강 해설사 양성, 하천생태경관 및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스토리 앱 개발
- 만경강 유역의 역사적 장소의 연계를 통한 한국근현대농경문화권 조성사업
 - 익산 황등제 복원 등 만경강 유역에 산재한 고대 및 근현대농경문화유산 정비 및 농경문화체험 거점화 추진
 - 일제의 식민지농업수탈 역사교육장 및 한국 근현대농경문화역사관 건립 등 만경강의 농경문화유산을 활용한 농경역사체험벨트 조성
 - 영농쉼터 및 체험관광거점시설을 도입한 신개념 대간선수로 재건설을 통한 미래농경 문화를 창조하는 만경평야재창조프로젝트 추진

(3) 전통농업과 농생명 혁신자원을 연계한 농생명융합 특화산업벨트 조성

- 만경강 유역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농식품 관련 6차산업 거점 조성
 - 만경강 유역 농산물 공동판매 로컬푸드 판매장 조성, 지역농산물 공동마케팅을 위한 상표개발, 유역농산물 홍보사업 추진
-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전북혁신도시의 혁신자원을 중심으로 농생명융합 연구 개발 거점 조성
 - 만경강 유역 농산물 전용 농식품가공연구단지 조성, 만경강 유역의 토종종자 복원사업 및 유역환경에 맞는 신품종개발 연구단지 조성, 정밀농업과 스마트팜 실증단지조성

(4) 새만금 배후지역 연계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화

-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신산업육성과 해양관광거점 개발과 맞물려 배후지역인 만경강 유역권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연계사업 발굴
 - 새만금 호소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수변레저활동을 만경강 하도를 따라 상류로 연계 시켜 만경강과 새만금을 통합공간으로 확장,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연결사업
 - 새만금 호소 ~ 만경강 하류구간(삼례교 비비낙안) 연계 뱃길 및 포구 복원

- 만경강 유역의 통합적 물관리 국가시범지역 지정·운영
 - 만경강 유역권을 통합물관리 국가시범지역을 지정하고 관련 사무를 전담하는 만경강 유역권 연계협력협의체로서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
 - 만경강 하천 수질현황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최근 들어 갈수록 하천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새만금호 수질 확보와 만경강 유역권에 공급되는 각종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만경강유역 연계협력의 핵심사업으로 만경강 유역권 상하수도 및 농업용수 통합 관리체계구축, 도시 및 농업비점 오염원 통합관리사업을 적극 추진

5) 만경강유역 연계협력 단계별 발전 방향

(1) 태동기(초기단계 : 2019 ~ 2022)

- 대상범위 : 만경강 본류 하천공간(제외지)
- 대상사무 : 하천 생태환경 보전, 하천 친수시설 및 공간 관리, 체험 및 탐방활동
- 협의체형태 : 지방자치법 제15조 행정협의회

(2) 도약기(발전단계: 2023 ~ 2026)

- 대상범위 : 만경강 유역 전체
- 대상사무 : 유역권의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을 결합한 지역발전사업 전반
- 협의체형태 : 행정협의회 또는 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조합

(3) 안정기(성숙단계: 2027 ~)

- 대상범위 : 만경강 유역권 + 새만금 만경수역 유역
- 대상사무 :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지역발전사업 전반
- 협의체형태 :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제2조 특별지방자치단체

3. 연계협력 추진조직 구성 및 운영 방향

1) 기본방향

(1) 접근관점

-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와 협력은 특정한 사안과 이슈를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지자체 간 연계협력은 결국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의 관점’으로 수렴됨
- 이러한 관점에서 만경강 유역권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포착하여 ‘공동의 지역발전 전략으로 합의하고 조정’하는 세밀한 과정이 필요함
- 지역혁신은 공공영역(지자체)이 주도해 나가되, ‘지역사회의 다양한 혁신자원 (연구역량, 주민역량 등)의 참여와 결합’을 통한 활용방안의 결합이 중요함

(2) 기본방향

-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와 협력의 현실적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별 발전의 경로(사업내용과 추진기구)’를 지향해야 함
- 실효적인 연계와 협력의 ‘내용(컨텐츠)’을 마련하기 위해 ‘만경강 유역’의 공통 이슈를 반영한 ‘연계·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계·협력의 방안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기구(조직)’가 형식화되지 않기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근거마련과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연계·협력의 계획에 따른 정책이 예산으로 반영된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시군의 관련된 정책(세부사업 등)으로 반영되어야 함

2) 만경강유역협의회 성공적 운영방안

(1) 현행 행정협의회의 실효적 운영

- 만경강 유역 행정협의회가 최소한의 의안을 처리하는 방식의 느슨한 행정협의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목적과 업무에 입각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즉, 만경강유역 연계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동으로 확정하여 연계협력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만경강유역 연계협력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

를 공식화하여 전북도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 및 예산지원을 이끌어 내야 함

- 다음은 현행 만경강유역협의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주요 활동사항을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목적과 핵심사업을 정리하였음. 만약 행정 협의회 형태로 유역권의 연계협력이 실행된다면 제시된 영역별 접근이 협의회의 실효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① 1 영역

- 목 적 : 자치단체간의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하천기능 및 시설 관리 효율화
- 핵심업무 : 만경강 전 구간에 대해 치수능력 증대, 수질개선, 친수시설 조성 등 복합하천환경정비사업 추진, 만경강 유역 내 친수시설 공동 관리·운영 방안 마련, 만경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용역 추진계획 수립 등

② 2 영역

- 목 적 : 만경강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설확충 및 관광자원화
- 핵심업무 : 만경강 유역의 자전거길·친수시설 확충, 수질개선, 관광자원 연계 등 정책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 시행, 만경강 유역과 지역발전을 연계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등

③ 3 영역

- 목 적 : 만경강유역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 핵심업무 : 만경강의 생태·문화·역사·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유역의 농업 및 식품관련 6차산업화와 지역대표 농산품 공동개발, 로컬 푸드 공동마케팅 및 통합축제 개최 등

④ 4 영역

- 목 적 : 행정협의회를 넘어 더 강화된 협의체로서 위상강화
- 핵심업무 : 만경강의 친환경적 생태하천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체계 마련, 새만금 수질등급 유지를 위한 만경강의 통합물관리체계와 상하수도 및 비점오염 공동관리체계 구축

(2) 행정조직(추진기구) 현실적 준비

- 한편 지방자치법에서 허용하고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청의 업무와 사무 간의 면밀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지방 행정기구의 구성요소(기구, 인력, 예산, 사무 등)에 대하여 현실상의 쟁점과 이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 단계에서 예상되는 한계는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① 규약상의 한계
 - 규약에 명시된 공동사무를 기반으로 유연한 형태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계협력과 관련된 포괄적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신설 검토
 - ② 조직운영의 한계
 - 규약에 명시된 정기회의의 개최를 위한 형식적인 회의진행의 방지와 파견인력의 짧은 교체주기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책임 있는 업무추진의 한계에 대한 보완책 마련
 - ③ 사무직원의 한계
 - 파견자로 구성된 사무직원의 소속감의 결여와 업무 책임의 약화 가능성이 상존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 필요
 - ④ 예산 및 회계의 한계
 - 정부 관련 부처, 광역 지자체, 해당 지자체의 공식적인 재정 지원 프로그램 없이는 업무의 지속성 확보와 실효적 사업 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재원확보를 위한 재정 분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 행정협의회회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기 위한 사무기구(간사 지자체)의 전담조직으로 최소 1개 팀을 구성·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무인력은 관련 자치단체의 인력파견 또는 간사기관에서 전문계약직 충원도 검토

(3) 만경강유역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핵심요인

-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선행연구³⁴⁾에서 제시된 내용을

34) 양현모·이준호(2003),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행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5권 제4호

종합하여 만경강유역협의회가 행정협의회로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향후 운영측면에 다음 사항이 강화되어야 함

① 명확한 목표와 공동의 인식

-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화자원을 바탕으로 행정협의회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이에 대해 모든 기관이 동일한 인식을 공유해야 함

②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

- 협의회의 회원은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1년 또는 2년 주기로 돌아가며 회장을 맡아 모든 사무를 회장기관에서 전담함. 따라서 회장을 맡은 기관에서 행정협의회를 운영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실무자들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함

③ 자치단체의 재정분담능력

- 협의회 운영예산과 공동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참여기관의 재정분담 능력은 실질적인 연계협력을 촉진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협력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절감하더라도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연계협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재정분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④ 관계 외부기간의 참여 확대

-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공동사무에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조정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도 많음. 즉, 상위행정기관인 중앙정부의 정책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거나 협의사항에 자치단체 간 큰 이견이 생겼을 때 외부기관의 중재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관계된 외부기관의 참여가 협의회 성공적 운영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만경강유역협의회의 경우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관계 외부기관은 행정체계상 전북도청과 만경강 하천관리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있음
- 따라서 현재 외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이외에 나머지 두 기관이 만경강유역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향후 대응이 필요함

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 마지막으로 여러 자치단체가 협력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함.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공동사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에 따라서 협의회의 운영 방향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반드시 필요함

(4)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진화와 발전 준비

- 행정협회의의 실효적 운영을 통해 진화·발전한 수준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해 나간다는 공감대와 합의가 행정협회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임
- 행정협회의의 발전경로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의 진화와 발전은 불가피한 것으로 상정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운영사례 등의 벤치마킹과 성과·한계 등을 분석하여 만경강 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목적, 기본계획, 사무기구, 주요사업, 예산·인력 등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 이를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통한 담당 사무의 명확화가 관건이며, 해당 사무를 담당 한 사무기구를 별도의 사무공간으로 전문 인력까지 갖춘 집행기구 구성이 필요함
- 초기 기본계획 상의 정책과 사업의 예산확보의 어려움은 정부-지자체간 계획계약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데, 유사사례의 경우에 비춰볼 때, 이러한 정책근거 마련이 핵심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음
- 해당 자치단체의 전담인력 파견과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일정기간의 근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추진조직 운영 및 발전 방향

(1) 추진방향

- 현행의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추진조직의 단계별 발전경로를 기본으로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고려하여 향후 발전경로를 상정할 수 있음

(2) 1단계 : 행정협의회

- 현행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는 협의회
-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추진조직의 초보적 형태로 현행 ‘만경강유역협의회’가 여기에 해당하며, 만경강유역협의회는 ‘협의회(6개 기관³⁵⁾의 장)와 실무위원회³⁶⁾’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 현재 운영중인 '만경강유역협의회'의 주요목적은 '만경강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고 친수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동 관리운영'으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
- 협의회의 사무조직은 자치단체의 공동부담금을 통해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사무국은 자치단체가 순번(2년간)으로 담당하고 있음(현재 완주군)
- 우리나라의 지자체간 연계·협력 협의회의 대부분이 '행정협의회'의 형태인데, 특정한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지자체간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어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협의회가 추진하는 공동 사업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자체간 적정한 수준에서 확대 조성하고, 사무국의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연계와 협력은 결국 추진조직의 사무국에서 담당할 인력으로 가시화되기 때문에 기존 공무원 인력의 업무배치를 넘어서 전담인력(계약직)을 확보하는 게 필요함
- 행정협의회 운영기간은 연계협력사업의 구체화와 사업·활동의 성과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겠으나, 단계적 발전경로를 고려할 때 현재의 행정협의회 형태는 특별한 사유(새로운 차원의 공동사무의 발생)가 발생할 때까지 지속될 것임

(3) 2단계 : 지방자치단체조합

- 현행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군의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설립하는 조합의 형태임
- 지방자치법(15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추진조직의 발전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별도의 사무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만경강유역협의회가 '(가칭)만경강유역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발전할 경우 목적은 행정협의회 수준의 연계협력보다 진화한 내용으로 구체화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 '만경강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35)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36) 유관기관,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만경강 유역과 연계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 (유관기관)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연구원 / (민간전문가)도시계획·문화·관광분야 전문가(교수), 시민·환경단체 등

경제적 방식의 공동사업을 추진' 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경제와 사회정책 영역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법인)으로 발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사무조직은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파견하는 '파견직원'과 별도의 '전문인력'(자체 고용)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사무조직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체적인 미션과 역할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부담하며, 별도의 사무공간 설치·운영 하되, 사무조직은 본부장, 과와 팀 단위의 조직을 두고 전담인력을 10~20명 이내의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한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정한 연계·협력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조직으로 별도 사단법인을 두어 원활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공동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중간지원조직(가칭, (사)만경강발전재단)을 설립·운영하는 것도 필요함

(4) 3단계 : 특별지방자치단체

- 현행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만 해당하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경우 특정의 제한된 기능(사무 또는 서비스) 또는 시설을 효율적·광역적으로 제공·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설치되는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公法人)의 설립이 가능함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공법인이면서 동시에 제한된 일부 사무를 관장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와 국가사무의 위임도 가능함
- 법률이 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를 일정 기간 운영하여 가시적인 지역공동의 연계협력 성과가 나타났고, 한 단계 격상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발전을 검토할 수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하게 될 경우 사업의 목적은 '만경강유역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의 연계·협력사업을 위임 받아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선행사례가 없기 때문에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발전을 준비하고 있는 사례지역(지리산관광개발조합) 추진과정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별도의 의회를 구성하고 단체장을 선출하여 독립된 회계를

통해 집행기관으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재원은 자치단체 분담금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징수를 통해 확보할 수 있음.

- 기타 기재발생 및 재산수입을 재원으로 할 수 있으며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따라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진화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사무의 업무분장, 행정체계의 세분화 등의 다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표 5-1] 만경강 유역 연계·협력 추진기구 단계별 구성(안)

(1단계) 행정협의회	(2단계) 지방자치단체조합	(3단계) 특별지방자치단체
(현행 운영)	(현행 가능)	(가능 예정)
지방자치법 152조	지방자치법 149조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11장
만경강 복원, 하천관리 친수공간 효율적 활용	만경강 하천관리 경제적·사회적 개발	만경강 하천관리 경제적·사회적 개발

4) <참고> 추진조직 근거 (요약)

(1) 행정협의회 (administrative consultative council, 行政協議會)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는 협의회
-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에 관한 규약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지방자치법 제152조)
- 규약에는 행정협의회회의의 명칭,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처리사무, 조직 및 선임방법, 경비부담 및 행정협의회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같은 법 제154조)
-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정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가 이를 조정

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2) 지방자치단체조합 (cooperative of local government agencies, 地方自治團體組合)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설립하는 조합(지방자치법 제159조)
- 조합의 규약에는 명칭,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위치, 사무, 집행기관·조합회의 조직 및 위원의 선임방법,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하도록 되어 있음(같은 법 제162조)
- 조합은 시·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공익상 필요한 때에 행정자치부장관은 조합의 설립·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같은 법 제 163조)

(3) 특별지방자치단체 (special local government, 特別地方自治團體)

- 보통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에 비하여 단체의 조직·권능 등에 있어서 특수한 성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현행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조합만 존재
- 지방자치법 개정안
 - 특정의 제한된 기능(사무 또는 서비스) 또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광역적으로 제공·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설치되는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公法人)
 -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공법인이면서 제한된 일부 사무를 관장
 - 설치절차 : 자치단체간 협의 → 지치단체간 규약 제정 → 지방의회 의결 → 규약의 승인 (행안부 장관) → 특별자치단체 설치
 - 사무 :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와 필요한 경우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
 - 자치사무와 단체위임 사무는 규약에 바로 위임 가능

- 기관위임사무는 위임사무가 포함된 규약에 대하여 행안부 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위임
- 국가 또는 시·도 사무 위임 필요시, 구성 자치단체장이 관계기관에 이를 요청하고 행안부 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규약을 승인
- 기본계획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광역적·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사무의 항목, 처리방법, 재정운영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의회구성 :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을 겸직
- 집행기관 : 집행기관의 장은 규약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주민 대표성을 간접적으로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 직원은 고유 직원과 파견 직원의 적절한 구성을 통하여 조직의 효과성 극대화 도모
- 경비부담 : 재원은 기본적으로 구성 자치단체의 분담금을 통해 조달하고, 조례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용료·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 기채발생 및 재산수입을 재원으로 함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재정적 안정성 확보)

4. 연계협력 선도사업

1) 하천 순환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하천인 만경강의 우수한 하천경관과 생태자원을 탐방할 수 있는 하천 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일부 조성되고 있음
- 그러나 지천 합류부와 산 비탈면 등 지형적 요인과 교량부의 차로 설치(언더패스 구간)로 인하여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의 단절구간이 많이 발생하여 연속성 있는 탐방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런 문제는 기존 탐방로의 이용률을 저감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을 들인 기존 탐방로의 이용회피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임
- 만경강 국가하천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연속된 탐방환경을 조성하고 탐방편의시설 등을 도입하게 되면 만경강의 우수한 하천 경관을 배경으로 다양한 수변체험활동이 활성화되어 주민뿐만 아닌 탐방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만경강 하도 시점 ~ 하도 종점
 - 군산시 대야 청하대교 ~ 완주군 고산 신당교
- 사업기간 : 2021~2024년
- 사 업 비 : 300억원(국비)
- 사업대상지역 : 만경강 좌우안 고수부지 및 제방법면
- 사업내용 : 만경강 탐방로 단절구간 연결사업(좌우안 연결 포함)
 - T-Type 교량형 인도교, 법면확장 인도교, 교량확장 인도교 설치
 - 탐방로(산책로와 자전거도로 혼용) 소프트 포장
 - 교량 언더패스 부분 탐방로 분리 설치
 - 일반도로 접속부 확장 사업
 - 만경강 탐방인증제 운영

2) 만경 5경 교량 만들기 사업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만경강의 교량 경관은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요 요소임
- 만경강 유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강한 지역브랜드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야간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음
- 만경강을 가로지르는 각종 도로와 철도에 설치된 교량은 유역내 각 지자체의 중요한 입부 중 하나로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지역의 상징성과 예술성을 가미시켜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매김 해야함
- 국토부(익산시국토관리청)의 만경강 환경정비사업에 수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 야구장, 축구장, 만경문화관 등이 개장할 경우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른 야간경관 볼거리 제공으로 국가사업 추진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만경강 유역 각 시군 대표 교량
 - 도로교량 : 청하대교(군산-김제), 만경교(익산-김제), 회포대교(완주-전주)
 - 철도교량 : 호남선 철도교(익산-김제), 전라선 철도교(완주-전주)
- 사업기간 : 2020~2021년
- 사업비 : 100억원(국비)
- 사업내용 : 경관개선 사업 1식(LED 조명시설 설치 등)
- 기대효과
 - 야간경관 형성을 통한 익산시만의 매력 있는 공간 창출
 - 도시 이미지 개선 및 익산시 새로운 랜드마크 기능 부여
 - 도심야경 활성화 및 관광객 유인 등 도시경쟁력 확보

○ 교량 경관개선 주요 사례

청주대교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	영광대교 야간경관 조명 설치
 - 청주대교 및 벚꽃길 일원에 야간경관조명, 포토존 등 설치(사업비 19억원) - 청주대교 등 교량 난간조명, 포인트조명, RGB변환조명, 바닥포장재 및 방호울타리 설치, 벚꽃길(2km)구간 수목 투광조명 설치	 - 국도 77호선의 해상교량(총연장 590m, 주탑 높이 108m, 폭 16.9m, 사장교)에 경관조명 설치 - 파스텔 톤의 자연스러움과 부드러운 컬러 연출 계획 및 내 측면에 24등, 교각 정면 4등, 상판 조명 8등 총 280W급 36등 설치
인천대교 야간경관 사업	통영대교 야간경관 조명 재정비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32억원 투입하여 3.3km (사장교 1.5km, 접속교 1.8km) 구간에 2011. 7월 야간경관 조명기기 설치	 - 2001년 시설된 기존 조명에 새로 222개의 고효율 LED조명 등으로 다양한 색상 연출 및 새로운 야경코스 개발
한남대교(강판형교)	방화대교(아치트러스교)
 - 한강에 건설된 4번째 교량(L=917m B=27m) - 은은한 조명으로 안정감 표현	 - 활주로와 비행기 이착륙을 형상화(L=2,559m B=21.4m) - 남쪽의 개화산과 북쪽의 행주산성 등 주변 경관과 조화

3) 만경강 로컬푸드·6차산업화 체험·판매 매장(가칭, 만경강 푸드파크)

(1) 취지 및 목적

- 만경강 유역은 풍부한 생태자원과 함께 친환경 농업의 청정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 단위의 로컬푸드 농산물과 다양한 형태의 농가공 식품이 생산되고 있음
- 지자체 소비지(도심) 입지 로컬푸드 직매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만경강 지자체의 로컬푸드 친환경 농산물과 6차산업화 농가공식품 등이 종합된 체험·판매 거점을 조성

(2) 주요내용

- 만경강 유역 지자체의 로컬푸드·6차산업화 통합 판매장 조성
- 로컬푸드·6차산업화 관련 복합 체험·홍보 공간 조성
- 만경강 생태·하천 자원과 연계한 생태·힐링·체험 공간 조성
- 사례 : 일본 홋카이도의 ‘쿠르르노모리’ : 로컬푸드·6차산업화 복합 체험·판매 공간 (삿포로 시내에서 30분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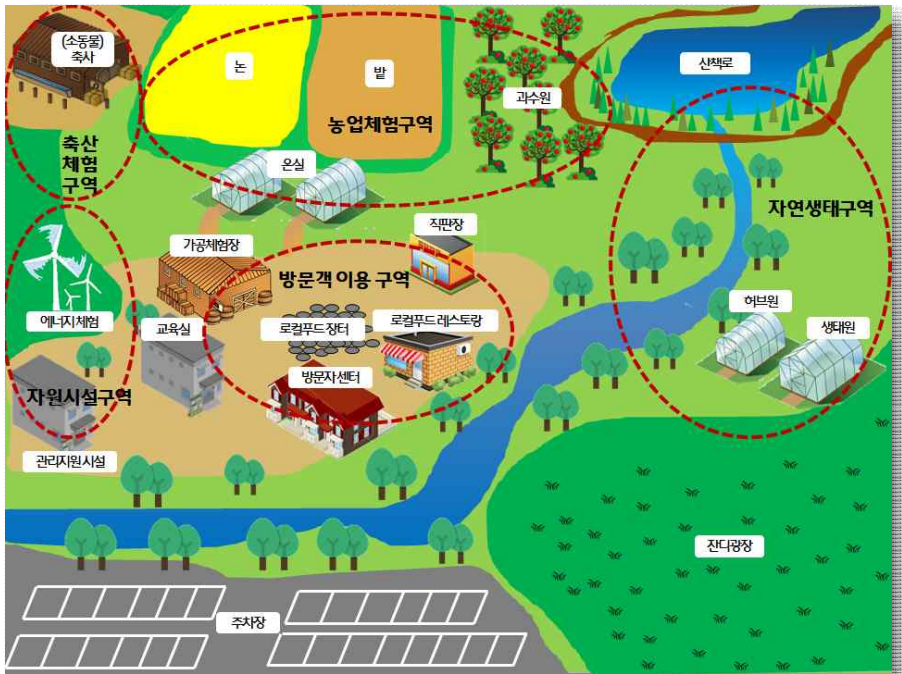
(3) 추진방안

- 위치 : 만경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의 접근성이 높으며 시민(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위치로 검토 (국도 1호선 *** 부근), 부지 면적 약 **ha
- 건축물 : 로컬푸드·6차산업화 통합 판매장, 농가레스토랑, 체험장, 가공센터, 도시농업 공원 등
- 운영주체 : 해당 자치단체의 로컬푸드·6차산업화 관련 사업조직이 참여하는 별도의 사업법인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산하조직으로 검토 가능)
- 자체사업 : 통합 판매장 운영, 체험시설 운영, 가공시설 운영, 도시농업 공원 운영 등
- 사업구조 : 해당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6차산업화 상품은 해당 지역의 사업조직이 출하하는 구조
- 프로그램 : 상설 통합 판매·체험·가공 사업장을 활용하여 ‘만경강 마르쉐, 만경강 생태 농산물 생산·가공 체험학교, 도시민 생활 교육, 도시농업 박람회’ 등

- 사업예산 : 약 200억원 규모 (개발면적 10ha 일 경우)
- 관련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향토산업 육성사업 활용 (지방이양 사업으로 확정되어
도가 관할 예정)

(4) 공간 구축방안

- 건축물은 방문객 이용 구역에 집중 배치
- 복합 건물을 건립하여 효과적 이용과 방문객 편의성을 제고 [예시 : 교육실과
가공체험장(키친), 직판장과 농촌레스토랑을 동일 건물내에 배치]
- 건축에 에너지 관점 도입 :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소규모 발전시설을 원내 건물에
적극 도입, 교육·체험은 물론 실질적 에너지 절감
운영이 가능하게 구상



[그림 5-5] (가칭)만경강 해피스테이션 구축 이미지

4) 만경강 유역권 연계협력 기본계획 수립

(1) 필요성 및 목적

- 인구감소와 고령화, 저성장 시대에 지역 경쟁력은 저하되고 활력을 잃어가는 지방도시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국정 기조로 삼고 지역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여러 지역들이 연계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공동의 지역특화자원을 기반으로 최적의 지역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상생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지역발전모델은 현 정부의 지역발전 패러다임과 일치함
- 전북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만경강은 하천의 생태경관자원이 뛰어나고 하천 유역에 드넓은 평야를 배경으로 고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농경문화와 역사를 지니고 있어 특화된 지역발전모델 창출 가능
 - 따라서 새로운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경강 하천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자원 발굴 및 기반 확충, 유역내 공동이용이 가능한 생활SOC 및 연계교통인프라 구축, 풍부한 농식품 특화자원을 활용한 연계사업 발굴 등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콘텐츠 발굴을 위한 만경강 유역내 기초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이 절실한 상황
- 본 과업은 만경강 유역권내 위치한 5개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연계협력형 지역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공동발전을 꾀함으로써 인구감소와 저성장시대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함

(2)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만경강 유역(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행정구역)
 - 공간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만경강 유역이지만 자원조사와 사업발굴에 있어 5개 시군 행정구역으로 확장 가능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8년, 계획기간 : 2021 ~ 2030년
 - 계획수립기간은 향후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실행력 확보차원에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

(3) 과업 주요내용

- 지역 현황, 여건 및 잠재력 분석
- 만경강 시설환경 기초조사(국가하천 구간으로 한정)

- 만경강 및 유역권 역사문화자원 기초조사(만경강 유역내로 한정)
- 만경강 유역권 주민의견조사
-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기본 구상(비전 및 목표 등)
- 만경강 공동발전 연계협력 사업계획 수립
-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방안 마련

(4) 사업비 : 250백만원

6

장

요약 및 결론

Jeonbuk Institute

-
1. 주요내용 요약
 2. 만경강유역 연계협력 기본구상
 3. 결 론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 주요내용 요약

■ 만경강 하천환경 및 시설조사

- 현지조사를 통해 만경강 하천환경과 시설을 살펴본 결과, 표와 같이 탐방로, 제방도로, 수변공원 및 체육시설로 구분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함

[표 6-1] 만경강 친수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탐방로 (산책로와 자전거길)	• 산책로와 자전거길 미 분리 • 전 구간에 걸쳐 대부분 단순 콘크리트 포장면으로 구성 • 하천 횡단 주요도로의 교량 구간에서 미연결구간과 단절구간 발생 • 지천 합류구간에서 대부분 산책로와 자전거길 단절 상태 • 좌안과 우안의 산책로와 자전거길 연결 상태 미흡	• 산책로와 혼용 가능한 2차선 자전거길 조성 • 소프트한 재질로 포장 재질 변경 • 횡단교량구간 좌우안 연결 교량 확장 인도교 설치 • 단절구간(산비탈면 및 고수부지협소구간)의 확장 인도교 설치 • 지천 합류부 징검다리 또는 교량형 인도교 설치
제방도로	• 산책로와 차도로 혼용구간 발생 • 교행 불가능 제방도로 • 비포장 제방도로 • 제방도로와 일반도로의 접속지점 교통사고 위험	• 차량교통구간 제방도로 확포장 • 일반도로 접속지점 진출입부 안전시설 설치 • 비포장 제방도로 포장사업 • 교량 언더패스 차로구간 보차분리 시공
수변공원 및 체육시설	• 수변공원에 대한 접근로 부족 • 수변공원 이용률 저조 • 강변 체육시설 부족	• 수변공원 접근로 추가 확보 • 강변체육시설 확충 • 수변공원 이용 홍보 및 편의시설 확충

- 탐방객을 위한 만경강 하천환경정비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첫째, 상하류와 좌우안 간의 탐방연계성 확보, 둘째, 주민의 만경강 접근성 확보
 - 셋째, 안전한 하천탐방환경 조성, 넷째, 탐방편의시설 확충
 - 마지막으로 하천구간별 위치특성에 따른 친수시설 확충 방안 마련

■ 만경강유역 주민설문조사

- 유역 주민들은 만경강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체험 탐방활동을 통해 만경강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만경강에 대한 직접적인 이용 및 탐방활동이 없는 주민도 상당수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탐방체험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홍보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임
- 만경강 탐방 활동빈도에 대한 주민 설문결과 만경강을 매주 방문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매주 방문 빈도가 30%이상이라는 것은 주민의 이용률이 높아 이용편익이 매우 큰 하천으로서 만경강의 하천시설과 공간에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한 예산투입타당성이 매우 높다 할 수 있음
- 주민들이 느끼는 공동체로서 동질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만경강유역의 정체성은 충분하며 향후 이런 정체성을 바탕으로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에 대한 주민의 공감과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추진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조사 결과 만경강유역 주민들은 만경강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사업'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현황에 제시된 것처럼 만경강 하천수질이 중하류구간에서 2급수 이하로 악화되고 있고 새만금호의 목표 수질 달성에 대한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연계협력 관련 법제도 분석

-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설치 가능한 연계협력제도는 크게 법인설립을 요하는 경우와 법인설립이 불필요한 경우로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됨
- 현재 운영 중인 만경강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이 아닌 단순협의체이며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협력제도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음
 - 법인 설립이 필요한 이들 두 가지 협력제도에 대한 요건에 대한 비교는 본문 [표 4-2]에 제시되었으며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으로 현재 국회에 법사위에서 심의 의결된 상태임
- 현재는 만경강행정협의회가 느슨한 형태의 조직으로 출범했으나 이후 운영단계에서 실험적으로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다양한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보다 더 진전된 조직형태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현재의 행정협의회단계를 넘어서 보다 더 확대된 방향으로 연계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설정과 협력내용에 대한 포괄적 구상을 담고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구분	협력제도	제도의 개요	관련규정
법인 불필요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	지방자치법 제152조 내지 제158조
법인 설립 필요	지방자치 단체조합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 처리	지방자치법 제159조 내지 제164조
	특별지방 자치단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무를 효율·광역적으로 제공·운영하기 위해 기존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설치하여 관련 사무 처리	지방자치법 제2조

■ 연계협력 지역협의체 운영사례 분석

- 동일한 하천 유역에 포함된 지자체간의 연계협력을 위한 행정협의회는 크게 다음 4가지 유형의 사업을 공동사무로 추진하고 있음
 - 첫째, 하천자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하천 살리기 관련 사업
 - 둘째, 하천의 자연 및 생태자원을 활용한 탐방 및 체험활동을 위한 시설조성 사업
 - 셋째, 하천 주변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관광기반조성사업
 - 넷째, 하천 주변의 지역특화자원을 중심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
- 일부 행정협의회에서는 강을 활용하여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주요 사무는 다음과 같음
 - 유람선 또는 뱃길 공동운항을 위한 기반확충, 관광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공동대응, 국토부가 조성한 친수시설의 공동운영관리, 국외선진사례벤치마킹
- 지역의 공동 자원인 하천 연계형 연계협력을 위해 행정협의회의 운영성으로 제시된 우수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대부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그치고 있어 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역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 이와 비교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가장 우수 사례인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지니고 있는 성공요인으로 다음 3가지를 주목해 볼만 함
 - 첫째, 지리산이라는 국내 최초의 국립공원지역을 연계협력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자원을 확보한 점
 - 둘째, 지리산과 주변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연계협력의 공동사무로 정하고 있어 지향하는 목적과 성과가 명확한 점
 - 셋째,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핵심사업으로 선정됨으로서 10년간 추진예산을 국비로 확보한 점

2. 만경강유역 연계협력 기본구상

■ 연계협력 기본방향

- 만경강유역의 정체성 정립
 - 만경강유역의 정체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크게 자연환경적 측면, 역사문화적 측면, 지역생활권 측면 등 3가지 부문에서 동질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함
 - (자연생태적 측면) 완주군 동상면 밤샘에서 발원하여 만경대교에서 새만금호와 만나는 만경강은 상류부터 완주군-전주시-익산시-김제시-군산시 등 5개 행정구역을 관류하고 있음. 동일한 강의 유역에 산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줄기를 공유하는 측면에서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갖추고 있음
 - (역사문화적 측면) 만경강유역은 호남지역의 곡창지대로서 삼국시대부터 농업이 발달하였고 우리나라의 근대농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지역으로 만경강 상류의 대야저수지, 정천저수지를 수원으로 하여 대간선수로를 따라 만경강 중하류의 간척된 농지와 주거지에 농업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관개시설은 만경강유역을 하나의 농업공동체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역생활권 측면)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시군구의 경계를 넘어 인근지역으로 생활권이 확장되고 있는 현실여건을 반영한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따라 만경강유역의 5개지자체는 전라북도의 중추 도시생활권역에 포함됨
- 연계협력 대응방향
 - 연계협력이 실현되기 위한 필수 구성요소는 '추진조직의 안정화, 연계협력의 구체화,

연계협력의 현실화' 등 3가지로 요약되며 각각의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제시

- (추진조직의 안정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연계협력제도 중에서 가장 느슨한 형태인 행정협의회로 출범은 했으나 최상의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서 법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운영 방향과 방식을 마련하여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연계협력의 구체화) 만경강유역협의회는 현재 연계협력의 초보적 단계에 있으나 향후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 실행계획이 필요한 시점으로서 만경강 유역권 내 지역 간의 연계협력의 세부내용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함
 - * 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연계협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만경강 유역권 연계협력 기본계획’**과 같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연계협력의 현실화) 실행계획으로 마련된 각종 연계협력 사업은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각종 법정계획에 반영시켜 사업예산을 국비로 확보함으로써 연계협력을 현실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만경강유역 연계협력 기본구상

(1) 기본 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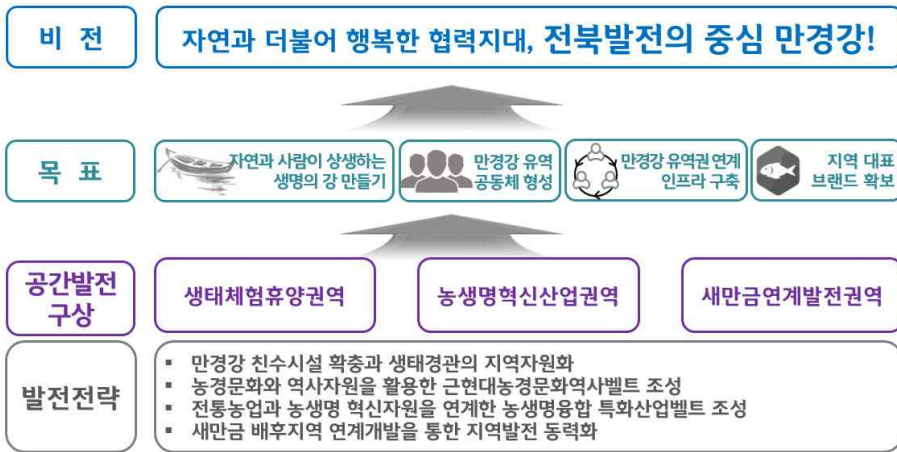
- ① 만경강 생태환경보전 및 하천자원의 이용고도화
 - 만경강 하천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한 하천생물보호 및 환경보전활동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유역권 주민이 함께 가꾸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
 - 다양한 하천시설과 공간 그리고 경관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연계시켜 단절이나 막힘이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친수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만경강 유역의 탐방 및 휴양자원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의 하천자원 이용고도화
- ② 만경강 유역 근현대 농경문화유산의 지역자원화
 - 만경강을 중심으로 산재하고 있는 근현대를 대표하는 농경문화유산과 농업기반 시설을 정비·복원하여 지역자원으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일제의 식민지수탈에 대한 역사현장을 탐방·학습하는 프로그램 개발
 - 향후 동진강 유역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벽골제 등 인근의 대표적인 농경문화유산

과 연계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농경역사문화권으로 확대·조성 추진

③ 만경강유역과 새만금지역의 연계개발

- 새만금 내부개발 시너지효과를 배후지역인 만경강 유역으로 확장시켜 지역발전을 촉진하도록 새만금호와 만경강 하천공간을 단일공간으로 통합하기 위해 다양한 연계시설 조성
 - 새만금호의 수질과 만경강 유역의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통합물관리 차원의 만경강 유역 수질수량통합관리체계 구축 추진

(2) 비전 및 목표



[그림 6-1] 비전목표-발전구상-발전전략 체계도

(3) 공간발전구상 및 발전방향

- (생태체험휴양권역) 산림생태자원과 만경강하천생태자원으로 활용한 휴양체험 활동을 통한 힐링과 치유의 공간 조성
- (농생명혁신산업권역) 다양한 농업자원과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농생명 및 식품산업의 거점권역으로 지역을 넘어 미래 전북발전을 견인할 신산업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
- (새만금연계발전권역) 새만금지역에 조성되는 다양한 산업 및 관광자원과 시너지 효과를 통해 내륙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새만금연계권역으로 조성

(4) 만경강유역 연계협력 발전전략

- (전략 1) 만경강 친수시설 확충과 생태경관의 지역자원화
- (전략 2) 농경문화와 역사자원을 활용한 근현대농경문화역사벨트 조성
- (전략 3) 전통농업과 농생명 혁신자원을 연계한 농생명융합 특화산업벨트 조성
- (전략 4) 새만금 배후지역 연계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화

(5) 만경강유역 연계협력 단계별 발전방향

- (태동기) 초기단계(2019~2022년)
 - 대상범위/협의체 : 만경강 본류 하천공간/지방자치법 제15조 행정협의회
- (도약기) 발전단계(2023~2026년)
 - 대상범위/협의체 : 만경강유역 전체/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조합
- (안정기) 성숙단계(2027~ 미래)
 - 대상범위/협의체 : 만경강유역+새만금 만경수역/법 제2조 특별지방자치단체

3. 결 론

- 본 과제는 현재 운영 초기단계에 있는 만경강행정협의회의 성공적 운영과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검토하여 정리하였음
 - 제2장은 만경강유역의 현황분석으로 만경강유역의 자연생태, 사회경제, 역사문화관광 현황을 정리하였음
 - 제3장은 하천시설 및 환경에 대한 조사, 주민의식과 수요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주요추진사업 현황분석, 정책적 시사점 등을 다루었음
 - 제4장은 연계협력관련 법제도분석, 연계협력 협의체 운영사례분석, 정책적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음
 - 제5장은 연계협력의 기본방향, 만경강유역 연계협력 구상, 연계협력 조직 구성 및 운영방향, 연계협력 선도사업 등을 제시하였음
- 이상의 내용은 만경강유역의 지자체간의 연계협력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다양한 근거와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현재뿐만 아닌 미래까지 지속가능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만경강유역협의회 운영을 통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연계협력의 세부 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한 연계협력 기본계획 수립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불러온 저성장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자 지역의 공동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발전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만경강유역의 공동자원을 활용하여 유역에 위치한 5개 지자체가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을 마련하고자하는 시도는 시기적절하고 국가의 지역발전 정책에도 매우 부합된다 할 수 있음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김영재. (2000).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14(2), 71-98.
- 엄영숙, 김치영, 유태혁, & 김춘식. (2001). 만경강 생태하천 방문의도와 지불의사 추정. 환경정책, 9(1), 81-100.
- 배준구. (2001).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 사회과학연구, 17(1), 45-55.
- 윤순감, 이종식, 정구복, 김민경, 김선중, 고문환, & 엄기철. (2002). 만경강 유역내 하천의 특성별 영향 평가. 한국환경농학회지, 21(4), 237-242.
- 양현모, & 이준호. (2003).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행정협의회 활성화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4), 175-194.
- 문화관광부. (2006).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
- 조성욱. (2007). 만경강의 역할과 의미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2), 187-200.
- 익산지방국토관리청(2008), 만경강유역종합치수계획보고서, 국토해양부
- 섬진강행정환경행정협의회. (2009). 섬진강 살리기 Master Plan 보고서
- 박노석. (2011). 익산 황등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건지인문학, 6, 145-170.
- 문화체육관광부. (2012).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 연구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2013). 금강 수상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 지역발전위원회. (2013).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해설집
- 지역발전위원회. (2013).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
- 김갑성, 이원섭, 남기찬, & 윤영모. (2014).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방향과 과제. 도시정보, (383), 3-21.
-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2014).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 발전계획 최종보고서
- 국립환경과학원,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 환경부(2013), 4대강 수계현황지도
- 국토교통부(2014), 한국하천일람

이상진. (2015).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하동원, & 최승담. (2015). 광역관광개발에서 관광개발 자원의존특성이 지방정부간 협력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29(5), 75-90.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2016). '물의 실크로드' 금강 명소화 연구용역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퍼포먼스웨이컨설팅. (2016). 지리산권 통합연계관광 S/W 추진 전략 실행방안 연구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2016), 한탄강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행정자치부(2016), 지방자치단체 기본현황

윤춘호. (2017). 봉인된 역사 : 대장촌의 일본인 지주와 조선 농민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2018),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효율화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국제신문(2018), 지방분권...시민 힘으로, 2018. 4. 10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2019).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연구 최종보고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2019).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효율화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규약

부 록

○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구성 현황(2018.5월 기준)

연번	협의회명	구성일자	참여 지자체명	중심 지자체명
1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89.03.27.	광주광역시 등 2곳	광주광역시
2	충청권행정협의회	'95.03.03.	대전광역시 등 4곳	세종특별시
3	호남권정책협의회	'04.12.15.	광주광역시등 3곳	광주광역시
4	G9대전충청광역권 공동발전협의회	'07.05.03.	대전광역시 등 9곳	대전광역시
5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	'15.10.01.	광주광역시 등 11곳	(전남)담양군
6	중부권정책협의회	'16.6.21.	경북 등 7곳	경상북도
7	동해남부권해오름 동맹상생협의회	'17.7.27.	울산, 포항, 경주	울산광역시
8	경기중부권 행정협의회	'81.08.28.	안양시 등 7곳	(경기)광명시
9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86.05.01.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전남)여수시
10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93.09.25.	서울 강서구 등 11곳	(서울)양천구
11	경상북도 동해권행정협의회	'95.04.07	포항시 등 6곳	(경북)포항시
12	경기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95.10.18.	용인시 등 10곳	(경기)용인시
13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96.06.28.	경기도 31개 시군	(경기)시흥시
14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96.12.24.	목포시 등 9곳	(전남)목포시
15	군산서천 행정협의회	'97.08.01.	군산시, 서천군	(전북)군산시
16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	'98. 12. 1.	목포시 등 22곳	(전남)목포시
17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99.03.11.	목포시 등 8곳	(전남)담양군
18	경북시장군수협의회	'99.07.20.	경북 23개 시군	(경북)포항시
19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	'01.01.01.	광주 5개 자치구	(광주)동구
20	치악권행정협의회	'01.12.27.	원주시, 횡성군	(강원)횡성군
21	장수벨트행정협의회	'03.02.06.	순창군, 곡성군, 담양군, 구례군	(전남)곡성군
22	중부내륙행정중심권 행정협의회	'04.12.09.	영월군 등 6곳	(강원)평창군
23	백두대간행정협력	'08.06.16.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강원)영월군
24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09.10.26.	안산시 등 5곳	(경기)안산시
25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12.12.11.	원주시 등 7곳	(경기)여주시
26	무진장행복생활권협의회	'14.01.17.	장수군, 무주군, 진안군	(전북)장수군

연번	협의회명	구성일자	참여 지자체명	중심 지자체명
27	경원축지역 행복생활권협의회	'14.01.28.	의정부시 등 5곳	(경기)동두천시
28	전남동부생활권협의회	'14.05.09.	여수시 등 5곳	(전남)여수시
29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14.02.11.	이천시 등 5곳	(경기)이천시
30	삼도봉생활권협의회	'14.03.04.	영동군, 무주군, 김천시	(충북)영동군
31	전남중부 행복생활권협의회	'14.03.24.	나주시, 화순군	(전남)나주시
32	소백산생활권협의회	'14.04.03.	영월군, 단양군, 영주시	(강원)영월군
33	상생협력정책협의회	'14.07.18.	강진군, 장흥군, 영암군	(전남)강진군
34	서북지역행복 생활권협의회	'14.08.05.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전남)장성군
35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	'14.09.23.	천안시, 아산시	(충남)천안시
36	구곡순담지역행복 생활권협의회	'14.12.02.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전남)구례군
37	포항-경주 행정협의회	'15.02.12	포항시, 경주시	(경북)포항시
38	포항경주영덕울릉도지역 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15.03.09.	포항시 등 5곳	(경북)포항시
39	전라북도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15.04.17.	남원시 등 6곳	(전북)남원시
40	서산당진태안 생활권행정협의회	'15.05.01.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충남)서산시
41	임순남행복 생활권행정협의회	'15.05.01.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전북)남원시
42	환황해권행정협의회	'15.06.16.	서산시 등 6곳	(충남)서천군
43	보령서천지역행복 생활권협의회	'15.09.22.	보령시, 서천군	(충남)보령시
44	동북4구행정협의회	'16.04.19.	서울 성북구 등 4곳	서울 성북구
45	한탄강 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16.04.15.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경기)포천시
46	강원도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16.09.07.	강릉시 등 6곳	(강원)강릉시
47	득량만권 장보고행정협의회	'16.09.08.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전남)장흥군
48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17.03.27	김천시 등 8곳	(경북)김천시
49	남해안시도광역 관광협의회	'94.08.	경남, 부산, 제주, 전남	경상남도
50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99.01.27.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강원도
51	동남권관광협의회	'01.07.	경남, 부산, 울산	경상남도
52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03.06.24.	제주시 등 15곳	(충남)공주시
53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04.01.30.	부산, 울산, 강원, 경북	부산광역시

연번	협의회명	구성일자	참여 지자체명	중심 지자체명
54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04.03.30.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충청남도
5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06.09.14.	서울특별시 등 87곳	서울특별시
56	충청소방학교운영행정협의회	'12.12.27.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충청남도
57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15.09.10.	서울특별시 등 57곳	(경기)수원시
58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15.09.14.	서울특별시 등 48곳	(서울)성북구
59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16.11.01	서울특별시 등 14곳	서울특별시
60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행정협의회	'17.7.27	세종시 등 15곳	(충남)부여군
61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	'97.09.30.	수원시 등 9곳	(충북)청주시
62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98.12.26.	남원시 등 11곳	(전북)진안군
63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99.04.29.	서울 양천구 등 13곳	(서울)구로구
64	환경행정협의회	'00.04.21.	서울 종로구 등 4곳	(서울)종로구
65	백제문화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02.05.17.	대전 유성구 등 5곳	(충남)금산군
66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03.04.13.	수원시 등 15곳	(경기)고양시
67	금강권관광협의회	'03.05.01.	공주시 등 6곳	(충남)논산시
68	전북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	'03.10.20.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전북)부안군
69	남부권관광협의회	'04.01.24.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충북)보은군
70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04.03.04.	부산 기장군 등 5곳	(전남)영광군
71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04.07.06.	영월군 등 16곳	(경북)봉화군
72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04. 9.10.	관악구 등 145곳	(충북)제천시
73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05.06.03.	대구 달성군 등 22곳	(경북)고령군
74	사과주산지시장군수협의회	'05.06.28.	포항시 등 15곳	(경북)포항시
75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05.09.08.	진주시, 등 11곳	(경남)하동군
76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06.12.15.	대구 동구 등 11곳	(경남)진주시
77	호수중문화관광권역 관광권협의회	'07.11.27.	춘천시 등 5곳	(강원)춘천시
78	3도3군관광협의회	'07.12.12.	영동군, 금산군, 무주군	(강원)영동군
79	접경지역시군수협의회	'08.04.28.	인천 강화군 등 10곳	(경기)파주시
80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10.11.29.	서울 종로구 등 13곳	(전남)화순군

연번	협의회명	구성일자	참여 지자체명	중심 지자체명
81	폐광지역시장군수협의회	'10.12.20.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강원)영월군
82	춘천권역서울출천고속도로 통행료지원행정협의회	'11.01.03.	가평군 등 5곳	(경기)가평군
83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11.05.03.	여수시 등 9곳	(경남)진주시
84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11.06.23.	서울 성동구 등 8곳	(서울)중랑구
85	전국덬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1.11.10.	대전 대덕구 등 18곳	(충북)충주시
86	대한민국아름다운섬 발전협의회	'12.03.15.	인천 옹진군 등 10곳	(전남)여주시
87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12.11.02.	인천 강화군 등 74곳	(충남)태안군
88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12.11.07.	서울 종로구 등 25곳	(서울)구로구
89	경부선(서울역~당정) 지하화추진협의회	'12.12.27.	서울 용산구 등 7곳	(서울)용산구
90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13.01.10.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익산시	(충남)부여군
91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13.03.20.	서울 성동구 등 33곳	(서울)성동구
92	평택~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15.01.21.	평택시 등 12곳	(충북)제천시
93	고온최치원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15.07.23.	보령시 등 9곳	(충남)보령시
94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15. 9. 2.	서울시 성북구 등 35곳	(서울)성북구
95	동서통합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15.10.26.	순천시 등 8곳	(전남)광양시
96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16.01.22.	서울 성북구 등 27곳	(경기)시흥시
97	만해한웅운지방정부 행정협의회	'16.03.22.	서울 성북구 6곳	(충남)홍성군
98	고려인삼시군협의회	'16.06.01.	인천시 강화군 등 16곳	(경북)영주시
99	동계올림픽 생활권행정협의회	'16.06.01.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강원)평창군
100	젠트리피케이션방지 지방정부협의회	'16.05.27.	서울 종로구 등 45곳	(서울)성동구
101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 지방정부협의회	'16.12.15.	서울 광진구 등 24곳	(서울)광진구
102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16.12.26.	김천시 등 9곳	(경북)김천시
103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07.11.06	원주시 등 5곳	(강원)평창군

정책연구 2019-17

**만경강유역 공동발전을 위한
연계협력 전략 기본구상**

발 행 인 | 김 선 기

발 행 일 | 2019년 7월 31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267-7 935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